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政策學博士 學位論文

동아시아의 해양안보 위협에 따른 한국 해군의
대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public of Korea Navy's Strategy for Dealing with
the Maritime Security Threats against the East Asia Region



2016年 6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海洋軍事學科 海洋安保政策 專攻

申 康 席



本 論文을 申康席의 政策學博士 學位論文으로 認准함.

委員長 (印)

委員 (印)

委員 (印)

委員 (印)

委員 (印)



2016年 6月 18日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목 차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및 문제의 제기	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5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방법	10
제2장 해양안보 및 분쟁, 해군력에 관한 이론적 고찰	14
제1절 해양안보의 의의	14
1. 안보의 개념	14
2. 국가안보의 개념	14
3. 해양안보의 개념	17
4. 해양안보의 중요성	20
제2절 해양분쟁의 의의	24
1. 해양분쟁의 개념	24
2. 해양분쟁의 위협 유형	26
2. 분쟁의 진행 및 해결방법	28
제3절 해군력의 역할	31
1. 탈 냉전기 이전 해군력의 역할	31
2. 세계화 시대 해군력의 역할	32
3. 국제분쟁 시 해군력의 역할	34

제3장	동아시아의 해양분쟁 및 비군사적 해양안보 위협	35
제1절	남·동 중국해 해양분쟁에 따른 해양안보 위협	35
1.	남중국해 분쟁	35
2.	동중국해 분쟁	45
제2절	한반도 주변의 해양안보 위협	51
1.	독도 영유권	51
2.	이어도 관할권	59
3.	한국과 주변국간 대륙붕 및 EEZ 경계획정	64
제3절	초국가적 해양안보 위협	65
1.	한국의 해상교통로 안보환경	65
2.	해적·해상테러 위협	69
3.	재해재난, 해양오염 및 불법어로 위협	72
제4절	소결론	76
제4장	동아시아의 군사적 해양안보 위협	78
제1절	주요국의 해양전략 및 해군력	78
1.	중 국	78
2.	일 본	84
3.	미 국	90
제2절	북한의 군사적 해양안보 위협	95
1.	북한의 해양전략	95
2.	북한의 해군력	96
3.	북한의 해양도발 양상	99
제3절	소결론	105

제5장 한국 해군의 대비방안.....	107
제1절 동아시아 해양안보 위협의 영향과 한국 해군의 대비분야.....	107
제2절 해양안보 전략 발전방안.....	110
1. 해양안보 보장을 위한 종합적 국가안보 전략 수립.....	110
2. 균형적 해양 방위전략 개념의 도입.....	113
제3절 한국 해군의 전력 발전방안.....	120
1. 전력 발전개념.....	120
2. 북한의 군사적 해양안보 위협에 독자적 대응 가능한 전력 구축.....	123
3. 한국적 기동함대 건설.....	127
4. 적정 수준의 해군병력 확보.....	131
제4절 해군의 역할 확대 및 운용영역 확장 방안.....	132
1. 해군의 역할 확대.....	132
2. 해군의 운용영역 확장.....	136
제5절 해양안보 협력 강화방안.....	139
1. 해군·해경 간 협력체계 강화.....	139
2. 역내 국가간 국제적 해양협력 증진.....	141
3. 국제적 해군 협력 및 외교활동 강화.....	145
제6절 소결론.....	148
제6장 결 론.....	150
참 고 문 헌.....	155

그림 목 차

〈그림 1-1〉 해양의 네가지 속성에 대한 대응.....	11
〈그림 1-2〉 연구의 틀.....	11
〈그림 2-1〉 분쟁의 단계별 진행현황.....	29
〈그림 2-2〉 해군력 사용에 대한 삼각이론.....	31
〈그림 3-1〉 남중국해 군도의 각국 점령현황.....	37
〈그림 3-2〉 서사군도의 미사일 발사대.....	40
〈그림 3-3〉 미군이 주둔할 필리핀 기지.....	43
〈그림 3-4〉 센카쿠 열도(조어도).....	45
〈그림 3-5〉 중·일 간 동중국해 가스전 및 EEZ 분쟁구역.....	49
〈그림 3-6〉 독도의 지리적 위치.....	52
〈그림 3-7〉 한·중 주장 EEZ 및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59
〈그림 3-8〉 한·중·일 방공식별구역.....	61
〈그림 3-9〉 우리나라 대륙붕 수역.....	64
〈그림 3-10〉 한국의 해상교통로 현황.....	67
〈그림 3-11〉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중.....	68
〈그림 4-1〉 중국 해양전략의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	79
〈그림 4-2〉 일본의 1,000해리 해상방어구역.....	85
〈그림 4-3〉 일본의 ‘안보 다이아몬드’ 전략.....	86
〈그림 4-4〉 NLL과 북 주장 해상 경계선.....	99
〈그림 4-5〉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일지.....	104
〈그림 5-1〉 해군력 운용영역.....	136

표 목 차

〈표 2-1〉 안보 및 위협구분.....	16
〈표 2-2〉 국가안보와 해양안보의 구분.....	20
〈표 2-3〉 비군사적 위협 유형과 성격.....	27
〈표 2-4〉 해군의 역할.....	32
〈표 3-1〉 남중국해 분쟁일지.....	44
〈표 3-2〉 센카쿠 열도(조어도) 영유권에 관한 중·일 주장.....	46
〈표 3-3〉 중·일 간 센카쿠 열도(조어도) 관련 주요 분쟁일지.....	48
〈표 3-4〉 독도 영유권 관련 한·일간 주요 쟁점사항.....	58
〈표 3-5〉 동아시아 지역 해적 피해현황(2010~2015년 전반기).....	70
〈표 3-6〉 해상테러의 유형과 사례.....	71
〈표 4-1〉 일본 해상자위대 조직 및 배치현황.....	88
〈표 4-2〉 국가안보를 지원하는 해양력.....	92
〈표 4-3〉 전력구상 및 미래전력 구축.....	92
〈표 4-4〉 미국, 지역 통합전투사령부의 책임지역 및 임무.....	94
〈표 4-5〉 미 해군 주요 전력의 서태평양 배치 현황 및 계획.....	95
〈표 4-6〉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해군력 증강현황.....	97
〈표 4-7〉 1990년대 이후 북한의 NLL 침범 현황.....	103
〈표 5-1〉 동아시아 해양안보 위협의 영향과 대비분야.....	109
〈표 5-2〉 한국 해군의 해양전략 개념 제시.....	120
〈표 5-3〉 한·중·일 해상전력(1,000톤 이상) 비교.....	122
〈표 5-4〉 한국과 주변국의 잠수함 전력비교.....	124
〈표 5-5〉 일반적인 기동함대 구성 예시.....	131
〈표 5-6〉 한국 해군의 역할 및 운용영역.....	138
〈표 5-7〉 아시아 지역 다국적 안보 협의체.....	144

A Study on the Republic of Korea Navy' s Strategy for Dealing with the Maritime Security Threats against the East Asia Region

by Shin, Kang Seok

Major in Maritime Security and Policy

Department of Naval Study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bstract

With the ocean being mankind' s last store of resources, it is also becoming the site of sharp conflict and competition, and the seas of East Asia are no exception. Disputes over islands, namely the Spratly and Paracel Islands, are intensifying in the South China Sea between China and Southeast Asian nations. In the East China Sea there are severe disputes between Japan and China over the Senkaku Islands and resource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there are disputes over the sovereignty of Dokdo and jurisdiction of the waters off Jeodo. Moreover, there are rampant piracy, terrorism at sea that is highly likely to happen, natural disasters, sea pollution, and illegal fishing in parts of the region, demonstrating the vulnerability of East Asian waters to transnational threats.

In addition, competition for maritime hegemony among states in the region is intense. In particular, the People' s Liberation Army Navy (and the "PLAN") and 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 (and the "JMSDF") are strengthening their maritime power projection capabilities which could apply political pressure on neighboring countries. China is accelerating naval power build-up in order to secure maritime hegemony in East Asia with its anti-access/area denial (A2/AD) formulated to oppose U.S. presence in the region. Currently, it is estimated that the PLAN can exert sea control out to the first island Chain, but its maritime operation capability will be expanded to the second island chain

by around 2020 with the acquisition of two to three carrier battle groups. Japan is discarding its former exclusively defense concept and developing a dynamic defense concept which advances the range and degree of its defense activities. Recently, Japan legislated new security laws expanding the operating area of the JMSDF abroad. The JMSDF, the second largest naval force in the Asia-Pacific region after the U.S. 7th Fleet, is demonstrating its cutting edge naval power by building the newest advanced ships including large, light carrier-class vessels.

The extra-regional hegemon the United States is deploying 60 percent of its naval capabilities to East Asia as it proceeding to its rebalancing strategy in accordance with its Asia-Pacific-focused policy. In addition, North Korea is engaging in maritime provocations, varying their degree from severe such as with the sinking of the ROKS Cheonan and the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to temporary crossings over the Northern Limit Line. In particular, it is developing asymmetric capabilities such as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s (SLBM) and undertaking far-reaching provocations such as missile launches and nuclear tests. Going forward, it is predicted that North Korea will commit provocations at sea at any time in order to achieve its political objectives.

In this way, while East Asia's maritime disputes and non-military threats are "soft" issues, they tend to be easily turned into "hard" issues due to historical problems, national sentiments, and political and military sensitivity; and these hard or soft issues are appearing with mixed qualities. That is, these are complex threats in which military and non-military factors are intertwined, and as these threats are likely to grow in mutual linkage with one another, it is inevitable that they exert tremendous influence on national security. Despite this security situation, because South Korea is focused on responding to the present threat of North Korea's military, it has payed poor attention to the more fundamental task of protecting the national strategic interests. This is due to poor recognition of the fact that maritime security threats in East Asia have a profound influence on the nation's existence and interests because South Korea is de-facto maritime nation with practically no means to move out via land though it is geographically classified as a peninsula.

In recognition of this problem, this paper was written to explore the overall plan that South Korea must follow, including the national-level strategy for responding to East Asian maritime security threats, the maritime strategy and force development that the Republic of Korea (ROK) Navy must pursue, development of the Navy's role, and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For this research, the following problems are raised. First, what is the nature of East Asia's maritime disputes and non-military maritime security threats? Second, how is the maritime strategy of each regional power changing and developing? Third, how is North Korea's naval power developing and what is its level of provocation?

This research reveal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our national security and maritime strategies require a paradigm shift because maritime security is not subordinate to national security but is almost equal. For this,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should be developed by reassessing security threats and challenges in order to put emphasis on maritime security threat and develop our understanding of threats to maritime territoriality and sea lines of communication as threats to our vital interests. According to this perspective, I have proposed a "balanced maritime defensive strategy" as the ROK Navy's maritime strategy. This is tailored through choices and focus and employs maritime containment, maritime cooperation strategies to respond to the diverse maritime threats in East Asia.

Second, to deal with the various maritime threats at the same time, the required ROK Navy forces must be urgently acquired. The appropriate level of naval power must as a priority be gained in order to have the forces be able to respond to crises related to Dokdo and Ieodo and to the maritime strategies of neighboring great powers while at the same time respond effectively against the North Korean threat.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s naval capabilities, there is a need to build social consensus based on the lessons of history on naval power, the theory of defense sufficiency, and decisions made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it is also necessary, to the extent that our economy allows, to build wholly self-reliant deterrent capabilities

against North Korea as well as at least a level equal to 70% of the JMSDF to respond to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Third, the role and operating area of the ROK Navy must be expanded. The ROK Navy must play a key role in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t must be able to play an active role in maintaining the security order of the international oceans. While expanding the ROK Navy's activities to the five oceans is difficult, the operation area must be redefined to cover protection around Dokdo and Ieodo, guaranteeing safe economic activity, and supporting the nation's prosperity.

Fourth, the ROK Navy's personnel structure must be improved. Currently, as the Navy employs just 70% of its personnel needs, Navy personnel work without a proper break. Cutting edge equipment and weapon systems require high expertise and the development of a systematic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Because developing only the hardware capabilities without an established software structure makes the Navy unable to properly carry out its role, the Navy must quickly fill its personnel requirements.

Fifth,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MPSS) (and the Korea Coast Guard, or KCG),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other related agencies and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must be strengthened. For this, we must establish an integrated agency for government-level maritime operations and the utilization of information, and the Navy and the MPSS (and the KCG) must develop a close coordination system like the U.S. concept of the "national fleet." Moreover, in order to reduce the risk of maritime disputes, a consensus for the need for a joint response to maritime security crisis situations must be formed, multilateral maritime cooperation must be strengthened, and the ROK Navy's diplomatic efforts must also be actively pursued.

Key words : maritime security, maritime disputes, naval power, neighboring countries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문제제기

한국이 위치한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은 오호츠크해, 동해,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리고 그 외곽을 에워싸고 있는 서태평양 등의 해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아시아는 해양적 특성이 강한 지역으로 세계의 다른 지역보다 국가들의 해양 의존성이 높은 편이어서 이 지역 안보는 해양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¹⁾ 동아시아 국가들은 긴 해안을 가지고 있으며 역내 국가를 연결해주는 공통적인 소통로는 해양이다. 지역 국가들은 지속적이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해 오고 있으며 이는 해양을 통한 대외무역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하지만 이 지역 해양은 대부분 반폐쇄해(半閉鎖海)²⁾이며 지역의 연안국들 간에는 도서영유권과 해양관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남중국해에서는 남사군도와 서사군도를 둘러싼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간의 도서영유권 분쟁, 동중국해에서는 센카쿠 열도 및 자원개발 문제로 일본과 중국 간의 심각한 분쟁 등이 있다. 특히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문제는 외교문제를 넘어 양국 국민들의 감정싸움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중 간에는 이어도 주변해역의 관할권에 관하여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 있는 이어도를 자국의 EEZ 관할해역에 속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³⁾ 또한 말라카 해협 등 동아시아를 통과하는 해

1) Robyn Lim, *The Geopolitics of East Asia* (Abingdon : Routledge, 2005), p.1.

2) 유엔해양법협약 제122조는 폐쇄해 또는 반폐쇄해를 ‘2개국 이상에 의하여 둘러싸이고 좁은 출구에 의하여 다른 바다나 대양에 연결되거나, 또는 전체나 그 대부분이 2개국 이상 연안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이루어진 만(灣), 내만 또는 바다’로 정의하고 있다.

3) 2014년 현재 중국이 관련되어 있는 해양분쟁은 총 61건으로 가장 많으며 필리핀 24건, 일본 19건, 베트남 17건, 대만 4건, 한국 2건으로 동아시아에서의 해양분쟁 발생 대부분은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Peter Dutton, Robert Ross and Oystein Tunsjo (eds), *Twenty-First Century Seapower, Cooperation and Conflict at Sea* (London : Routledge, 2015), pp.21~23.

로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해적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상테러의 가능성이 높게 예견되고 있다. 이밖에도 동아시아의 해양은 쓰나미 등 대규모 자연재해와 불법어로, 해양오염 등도 발생하고 있어 비군사적 위협에도 취약한 상태에 있다.

아울러 군사적 측면에서도 동아시아 해양에서 주요 국가들의 해양패권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反접근(Anti-access)/지역거부(Area denial)의 해양전략으로 동아시아 해양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실전 배치하는 등 세계 2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항하여 동아시아의 해양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첨단 해군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양을 통해 국력을 키워온 일본은 과거 1,000해리 전수방위라는 수세적 개념에서 벗어나 그 범위와 강도를 역동적으로 전진시키는 동적 방위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자체 첨단 군사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최신 함정을 건조하고 있으며 輕 항공모함으로 볼 수 있는 휴가급 대형함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안보법을 제정하여 해상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해외로까지 확대시키고 있다.⁴⁾ 미국은 2012년 1월 ‘新 국방전략 지침’ (New Defense Strategic Guidance)⁵⁾을 통해 아·태 중심의 안보전략을 추구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고 재 균형(Rebalance) 전략에 따라 미 해군력 60%의 아·태 지역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4) 일본의 신안보법은 2015년 5월 14일 아베총리 주재로 임시 각의에서 의결됐고 2016년 3월 29일 0시를 기하여 발효되었다. 신안보법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법제화한 것으로 ‘전수방위’ (일본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일본의 안보정책)의 원칙을 폐기하고 주변 상황에 따라 전쟁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을 말한다. 네이버 뉴스, “국회 입법조사처, 일본 신안보법쟁점정리”, 2015년 10월 16일.

5) 新 국방전략의 핵심은 ‘2개 주요 전쟁 동시 수행’ 을 포기하고 지상군을 감축하며, 해·공군 위주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탈냉전 후 미국은 두 곳의 주요 전구(戰區)에서 지역 전쟁을 수행한다는 2MRC(2 Major Regional Conflict) 전략을 갖고 있었다. 이른바 윈-윈(win-win) 전략이다. 하지만 신전략지침은 ‘윈-윈(win-win)’ 또는 ‘원 플러스(one plus)’ 로 표현할 수 있는데,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면 한 곳에서 승리하되 그때까지 다른 전쟁은 억지 상태를 유지하면서 유희전력을 이전하여 승리를 추구한다는 전략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 지침을 발표하면서 2MRC 전략을 포기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신 국방전략 지침 첫머리에 한반도 안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Department of Defenc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January, 2012)를 참조할 것.

무엇보다도 현존하는 위협인 북한은 기습공격과 속전속결 능력 향상을 위해 비대칭 전력⁶⁾ 위주로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시적인 북방한계선 침범에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같은 고강도 수준의 도발에 이르기까지 위협의 수위를 조절하며 끊임없이 해상도발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사일 발사와 같은 과감한 도발을 기습적으로 감행하고 있고, 한반도 정세에 따라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해상에서 국지전을 감행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비군사적·군사적 해양안보 위협 상황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도서영유권 및 해양관할권 확보를 국가의 사활적 이익, 핵심적 이익⁷⁾으로 간주하고 있다. 제프리 킬(Geoffrey Till) 교수는 “21세기 현재, 아·태지역 해양의 갈등 양상은 20세기 초 유럽에서 벌어진 경쟁의 양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⁸⁾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급변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안보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보다 근원적인 국가 전략적 이익보호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⁹⁾ 즉 동아시아의 해양분쟁과 비군사적 해양안보 위협, 그리고 주변국 및 북한의 군사적 해양안보 위협이 별개의 위협이 아닌 상호 연계되어 있는 복합적 위협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지형적으로 반도국가(半島國家)이지만 지정학적으로는 육로로의 대륙 진출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양국가와 다름이 없음으로, 한국 해군

6) 비대칭 전력이란 적의 강점을 회피하면서 취약점을 최대한 공격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력 또는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상대방보다 월등하게 많이 보유한 능력을 말한다.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서울 : 국방기술품질원, 2008), p.203.

7) 핵심적 이익이란 사활적 이익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지만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성격의 국가이익이다. 이는 아직 잠재적인 가능성 정도에 머물러 있지만 그냥 내버려 둘 경우 장래에 사활적 이익을 위태롭게 할 만큼 악화될 수 있는, 그리고 현시점에서도 해당 국가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할 정도의 축쇄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은 사활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비군사적인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김종하·김재엽, 『국가안보전략 어떻게 수립해야 하나?』, (대전 : 한남대학교, 2012), pp.19~21.

8) 최중호·임경한 역, Geoffrey Till 저, 『아시아의 해군력 팽창 군비경쟁의 서막인가?』,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p.12.

9) 김기주·손경호, “다차원적 해양안보 위협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국제문제연구』, 통권49호, (서울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 2013), p.143.

이 북한의 위협에 중점을 두는 전략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의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에도 동시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동아시아의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으로부터 국가안전 및 이익을 보장하고,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과 한국 해군의 해양전략을 제안하고 해군력¹⁰⁾ 발전, 해양안보 협력 등 한국 해군이 중심이 되어 대비해야 할 방안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는데 있다. 이런 관점에서 연구목적은 달성하고자 크게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동아시아의 해양분쟁 및 비군사적 해양안보 위협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것이 한국의 해양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중국과 동남아·일본 간의 해양분쟁, 독도 및 이어도 문제 그리고 해적, 불법어로 등의 해양안보 위협은 ‘연성적(軟性的)’ 성격의 이슈이다. 하지만, 국가 간 역사문제와 국민적 감성, 정치·군사·경제적 민감성 때문에 쉽게 ‘경성적(硬性的)’ 이슈로 변질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해양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국가이익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므로 국가차원의 해양안보 전략과 한국 해군의 해양전략 및 운용 개념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역내 주요국들의 해양전략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해군력은 어떠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가? 한국과 도서영유권 및 해양관할권 문제의 당사국이자 해양강국인 중국과 일본, 그리고 세계질서의 중심국이자 한국의 강력한 동맹인 미국 해군의 실태를 살펴보고 함의를 도출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안보 전략과 한국 해군의 해양전략, 그리고 해군력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0) 해군력(Naval Power)의 개념은 광범위한 해양력의 하부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하며 해양력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명확하게 구분하면, 해양력은 국가이익을 증진하고 국가목표를 달성하며,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을 통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국가의 제반역량을 의미한다고 보며, 해군력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력을 의미한다. 허성필, “공존기/통일기 주변국 해군력 발전전망 및 평가(정책연구보고서 03- 1975)”,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3), p.53. ; 해군력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국가목표의 달성과 국가정책을 지원함에 있어 전·평시 해군 작전 수행을 위하여 직·간접으로 필요한 전력으로서 해군에 소속 및 통제되는 인적, 물적 자원의 총체. 이는 함정, 항공기와 해병대를 포함한 병력, 기지 및 이들의 지원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국방기술품질원, 앞의 책, p.517.

셋째,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북한의 해군력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으며 해양도발의 수위는 어떠한가? 북한은 정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약 2,660여 회의 도발을 하였는데, 그 중 1,430회(55%)가 해상을 통한 도발¹¹⁾이었고 1990년대 이후는 해상도발이 급증하였다. 북한 경비(단속)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은 211건, 북한 상선 및 어선의 NLL 침범 115건이 이를 잘 뒷받침해준다.¹²⁾ 또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한국의 안보에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해양안보 위협의 실체를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해군의 대비방안을 제시 할 수 있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한국과 한국 해군의 시각에서 동아시아의 해양안보 문제를 거론한 선행연구들은 연구자 수도 많고 연구의 내용과 범위도 매우 다양하다.

이를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한국 해군의 해양전략과 관련한 연구로 김정현은 “한국 해군이 지향할 해양전략” (2009)이라는 논문에서 미국 및 일본, 중국의 해양전략과 전력건설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 해군이 지향할 전략으로 ‘지역해 방어 및 평화유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박남태 등 박사급 현역 해군장교 5명은 『21세기 동북아 해양전략』 (2015)이라는 공동저서에서 21세기 한국은 북한은 물론 주변국 및 초국가적 해양위협이라는 다차원 해양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유연한 전략의 수립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력의 건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였다. 또한, 한반도 주변 4개 국가의 해양전략을 분석하고 한국 해군의 특화된 해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창희는 “강대국 및 약소국 해양전략사상과 한국의 해군전략” (2012)이라는 논문에서 연안통제와 제한적 근해우세, 협력적 원해작전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근해우세전략을 제시하였다.

11) 신인균, “국가의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 해군의 전력건설 방향”, 『STRATEGY 21』, 통권 제30호,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2), p.103.

12) 국방부, 『국방백서 2014』, (서울 : 국방부, 2014), P.255.

해군의 역할 및 임무와 관련한 연구로 박창권은 “해양안보 위협 확산에 따른 한국해군의 역할 확대 방안”(2013)이라는 논문을 통해 국방차원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해군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이에 대한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기동함대 전력 발전 등 해군력 강화가 필수적인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승렬과 배진석은 “양분화된 동아시아의 해양안보 질서와 해군력의 역할”(2012)이라는 논문에서 동아시아의 국가중심적, 다중심적 해양안보 사례를 통해 해군력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이에 따라 미래 한국 해군력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해군력 건설과 관련한 연구를 보면 강희각은 “한·중·일 해양분쟁 심화요인과 그 함의에 관한 연구”(2013)라는 학위논문에서 세력전이 이론을 적용하여 동북아에서의 해양분쟁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한국 해군력 수준으로는 독도 및 이어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유지하고,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해군력 증강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김정현은 ‘대륙국가의 해군력 건설 요인에 관한 연구’(2004)라는 학위논문에서 위협환경, 경제력, 지도자의 전략적 선택 등 3가지 변수를 도출하여 각각의 변수가 대륙국가의 해군력 건설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박성용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적극적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2013)이라는 논문을 통해 동북아 주요국별 해군 전력증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해군력을 증강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윤석준은 “세계 주요국의 기동함대 건설 추세와 한국 해군에 주는 함의”(2010)라는 논문을 통해 세계 주요국의 기동함대 건설 추세를 설명하고 한국 해군의 기동함대 건설 방향을 제시하였다.

해양전략과 해군력을 동시에 다룬 연구로 김기주는 “다차원적 해양안보 위협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2013)이라는 논문에서 한국 해군의 전략 발전방향으로는 3축 균형전략을, 전력 발전을 위해서는 균형적 첨단 입체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북한이 해양에서 군사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해양통제를 해야 하고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는 해양에서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제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해양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기동함대를 확보하자는 개념이다. 반길주는 『국제 현실

정치의 바다전략 : 해양접근 전략과 균형적 해양투사』(2012)의 저서를 통해 균형적 해양투사(Sea Strike) 전략구현을 위하여 위협을 탄력적으로 흡수하고 중견국인 한국의 입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국제안보 임무를 소화하기 위한 해양접근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구현하기 위해 기동함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계단식(Step-based) 전력 증강방안을 제시하였다. 안병준은 “공세적 현실주의의 군사적 재해석을 통한 한국형 기동함대 적기 전력화에 관한 연구”(2015)라는 학위논문에서 세력전이 이론을 적용하면서 적극적 해양억제 전략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한국형 기동함대의 요구능력과 적기 전력화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전창빈은 “대한민국 해양전략과 해군력 선진화 방향”(2012)이라는 학위논문에서 한국이 처한 해양에서의 복합적인 3중 해양 안보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서의 기동함대 필요성과 기동함대의 편성을 비교 분석하고 기동함대 추진저해요인 및 극복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양패권과 관련한 연구로 구민교는 “미·중간 신해양 경쟁과 우리나라의 해양안보정책”(2013)이라는 논문에서 동아시아 해양은 신 냉전체제가 구축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중국과 미국의 미온적인 태도가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규범적 중재자로서 유엔해양법협약의 한계점이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임경한은 “공격적 현실주의 시각에서 바라본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해양안보 경쟁 전망과 함의”(2011)라는 논문에서 동아시아 해양안보 환경이 당분간 불안한 상태로 유지될 것인 바, 이는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 해양을 중심으로 안보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나아가 해군 지배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차도회는 “동아시아 미·중 해양패권 분석”(2012)이라는 학위논문을 통해 세력전이 이론을 이용하여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력·해양력이 미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급성장하였고, 해양력의 격차가 좁혀짐으로써 해양분쟁이 일어났다고 분석하였다. 이로 인해 미·중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국지전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해양안보 협력과 관련한 연구로 김교덕은 “동아시아 해양분쟁과 안보협력에 관한 연구”(2006)라는 학위논문에서 동아시아의 해양분쟁 원인을 분석하고 양

자 또는 다자간의 협력을 통해 해양안보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외 동아시아 해양안보 관련 연구보고서 및 책자로는 김강녕의 “해양안보 환경변화와 한국 해군의 발전과제”, 김종두의 『동아시아 해양분쟁』, 이서항의 “동아시아 해로안보와 해군의 역할” 등 다수가 있다. 이밖에도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을 통해 매년 동아시아 해양안보의 현안과 시사점이나 이슈들을 제시하고 주변 강대국들의 해양전략 변화와 해군력 발전 추세 등을 심층 분석하면서 한국에 주는 함의와 해양안보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들은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시아 해양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한국 해군의 전략과 역할 발전, 해군력 건설, 강대국의 해양패권 추구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해양안보 협력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선행 연구결과와 정책적 가치는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현실적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해양안보 위협요인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다음, 한국 해군이 대비해야 할 분야를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국제체제에서 강대국 역학관계의 틀을 중시하면서 동아시아 해양분쟁 사례를 제시하고 앞으로 해양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한국이 강력한 해군력을 건설해야 되는 당위성을 논하였다. 또한 로즈노우(James N. Rosenau), 미어샤이머(J. Mearsheimer), 오간스키(A.F.K. Organski) 등 저명한 국제정치학자들의 특정이론을 재해석하여 해군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즉 동아시아의 해양안보에 따른 종합적인 대비방안이 아닌 연구 관점별로 대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가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제프리 킬(Geoffrey Till) 교수의 ‘해양의 네가지 속성에 대한 대응’을 응용하여 연구의 틀을 세우고 이에 따라 동아시아의 해양안보 위협요인을 조망하면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전략에서부터, 해양전략, 해군의 역할 및 전력발전, 해군협력 등에 이르기까지 한국 해군이 대비하고 추진해야 할 방안을 종합하여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연구의 범위와 관련하여 첫째, 지리적 범위는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 중에서 동중국해, 남중국해, 말라카 해협,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 협력과 상호의존의 자유주의적 질서보다 대립과 갈등의 현실주의적 질서가 우위에 자리하고 있어 이 지역에 ‘신냉전’이 도래할 것이라는 어두운 평가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¹³⁾ 아울러 해양자원에 대한 각국의 접근이 관할권 내측에서는 ‘해양영토’, 관할권 외측에서는 ‘해양경제영토’의 개념을 적용하여 강한 갈등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⁴⁾ 또한 일반적으로 ‘지역’이란 이미 주어진 것이고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지역은 인식의 대상으로 창조된다.¹⁵⁾ 즉 한국인의 ‘인식의 지도’에서는 동아시아가 한국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아시아 국가(중국, 일본)를 포함하면서 경제적 측면과 정치·안보적 측면에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다. 이는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과 ASEAN이라는 동남아 경제협력체제의 등장과 경제발전이 배경이 되었다.

둘째, 국가적 범위는 동아시아의 해양안보 위협을 고려하여, 중국·일본·북한 및 ASEAN 일부 국가를 포함하였다. 아울러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자, 동아시아 해양안보를 위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포함하였다. 러시아는 현재 우리나라와 주목할 만한 해양분쟁의 이슈가 없어 제외하였고 대만도 동아시아의 해양분쟁과 관련하여 특이할 만한 동향이 없어 제외하였다. 이러한 국가적 범위는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단순히 특정국가나 민족 중심 또는 대륙적 관점에서 찾기보

13) 김기주·손경호, 앞의 글, p.143.

14) 양희철, “해양자원, 국가성장의 방향을 바꾸다”, (세종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p.25.

15)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의 담론은 주로 한국, 일본에 의해 주창되었고, 상대적으로 중국은 이에 대해 소홀하였다. 그 이유는 중국은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등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담론 형성에 취약했다. 이정훈·박정수, 『동아시아, 인식지평과 실천공간』, (서울 : 아연출판부, 2010) 참조.

다는 서로 다른 지역과 문화를 연결하는 해양중심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또 다른 동아시아의 역사적 정체성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내용적인 범위는 동아시아의 해양안보 위협과 한국 해군이 중심이 되어 위협에 대비해야 할 방안의 연구로 제한하였다. 해양안보 위협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쟁점화 되고 있는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분쟁과 한반도 주변의 도서영유권 및 해양관할권 문제, 그리고 국경을 초월하는 초국가적 해양안보 위협과 역내 주요국 및 북한의 군사적 해양안보 위협을 포함하였다. 해군이 중심이 되어 동아시아의 해양안보 위협에 대비해야 할 방안의 범위는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양안보 전략 및 해군력 운용, 해군력 발전, 해양안보 협력으로 한정하였다. 이 중에서 해군력 발전에 필요한 예산은 정확한 산출이 불가하여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지만 국회 결정 및 국가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군력을 발전시켜야 함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해군의 열악한 병력 문제도 증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수준에서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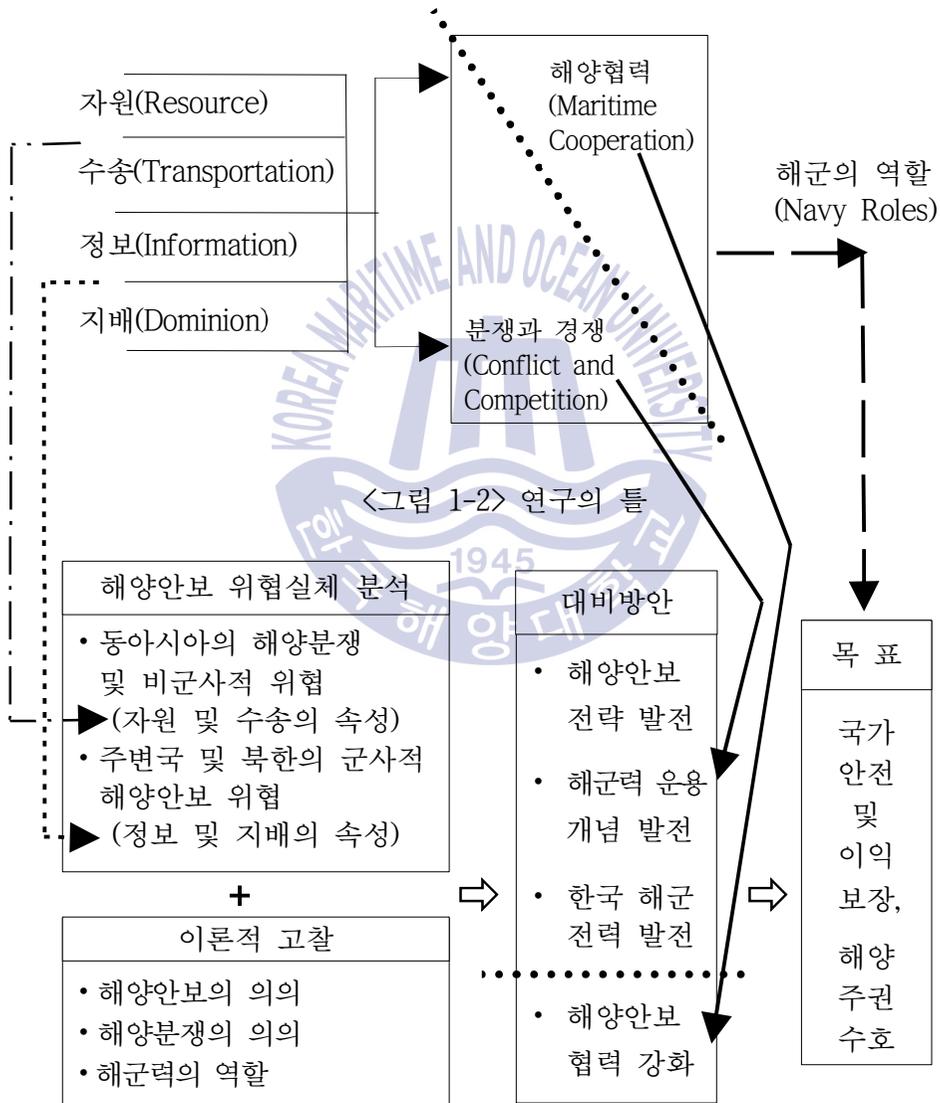
연구의 시기는 동아시아 해양에서 역내 국가들 간의 도서 영유권 및 해양관할권 문제로 갈등과 분쟁이 표면화된 시기, 즉 탈냉전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설정하였다. 왜냐하면 미·소를 중심으로 한 냉전 시기에는 역내 국가들 간의 영유권 및 관할권 문제로 갈등과 분쟁이 표면화 되지 않았고, 이 지역의 해양질서가 현재보다 오히려 더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다.

2.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국제관계 중심의 연구나 저명한 국제관계 학자들의 이론적 주장을 재해석하여 연구를 진행하기 보다는 해양안보 위협의 실체를 확인하고 한국 해군의 대비방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국제관계 중심의 연구로는 한국 해군이 추진하고 대비해야할 분야를 구체화하기가 어렵다는 것과 동아시아의 당면한 해양안보 위협에 실효성 있는 대응이라는 복잡다난한 문제를 학자들의 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하면 논리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정책적 대비사항들을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림 1-1>과 같이 제프리 킬 교수의

저서인 『21세기 해양력』에서 인류가 바다로 나가게 된 이유인 ‘해양의 네 가지 속성’¹⁶⁾을 본 논문의 해양안보 위협실체에 접목하여 한국 해군의 대비방안을 도출하였고 최종산물인 해군의 역할은 한국 해군이 지향할 목표로 대입하여 <그림 1-2>와 같이 연구의 틀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부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1> 해양의 네 가지 속성에 대한 대응



16) 배형수 역, Geoffrey Till 저, 『21세기 해양력』,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1), p.48.

첫째, 바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식량, 원유, 가스 등 자원(Resource)의 보고로서 해양의 속성은 본 논문의 동아시아 해양분쟁의 직접적인 원인과 밀접하다.

둘째, 세계 무역량의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바다를 통한 해양수송(Transportation)의 속성은 안전한 해양수송이 중요하므로 해상교통로 및 해적 위협 등 비군사적 위협과 밀접하게 연관 지을 수 있다.

셋째,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거나, 해양무역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필요한 정보(Information) 획득 등을 위한 매개체로서 해양의 속성과 넷째,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등 역사적으로 해양강국은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지배(Dominion)수단으로서의 해양의 속성은 해양에서 국가 안전 및 이익을 보장하고,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서는 주변국 및 북한의 군사적 해양안보 위협을 분석하고 대비해야 하므로 이를 연계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네 가지 속성들은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국제 관계의 협력적이고 분쟁 및 경쟁적인 경향의 특징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고 직·간접적으로 해군의 기능을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¹⁷⁾ 는 것을 응용하여, 해양안보 위협의 실체를 분석하고 이론적 고찰을 통해 한국 해군의 대비 방안을 도출하였다. 즉 협력적인 경향은 해양안보 협력의 방안으로, 분쟁과 경쟁 경향은 해양안보 전략 및 해군력 운용 개념 발전, 해군 전력발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연구를 위한 자료조사는 문헌조사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동아시아 해양분쟁에 관한 선행 연구논문, 주요 학술지 및 국내·외 기관의 연구보고서, 전문서적, 언론자료, 그리고 인터넷 등을 참고하였다.

하지만, 문헌조사는 동일한 현상에 대해 관념과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어 연구의 주관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국내·외 자료를 광범위하게 분석하여 원용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동아시아 해양안보 및 군사력 상황 등을 고려해

17) 배형수 역, 위의 책, p.49.

최신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또한 관련분야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한 의견도 참고하였다.

본 논문은 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은 본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연구 목적 및 문제의 제기와, 동아시아 해양안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연구범위와 방법을 기술하였다. 제2장은 동아시아의 해양안보 위협을 논의하기에 앞서 해양안보와 해양분쟁의 의의 및 해군력의 역할 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본 논문의 핵심인 한국 해군의 대비방안을 도출하고자, 제3장은 동아시아와 한반도 주변 해양에서의 분쟁과 초국가적 위협 등 비군사적 위주의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을 살펴본 다음, 한국의 해양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4장은 동아시아의 군사적 해양안보 위협으로 중국의 공세적 해양팽창 전략 및 강한해군 건설, 일본의 적극적 전수방위 전략과 첨단 해군력 건설을 살펴보고,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의 군사적 재 균형 전략에 따른 아·태 지역으로 해군력 증강도 짚어본다. 또한 현실적 위협인 북한의 해양 군사적 위협을 살펴보고, 이러한 해군력 동향이 한국의 해양안보에 미치는 함의와 대비방안을 논의한다.

제5장은 앞장에서 논의한 동아시아의 해양안보 위협에 따른 한국 해군의 대비방안으로서, 국가전략 차원에서 해양안보 전략과 한국 해군의 해양전략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을 고려하면서, 전력 소요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적정 수준의 해군력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해군의 역할과 운용영역을 재정립해야 함을 제시한다. 주변국과의 갈등과 충돌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국내적으로는 해양관리 국가조직의 통합적 운용과 국제적 해양 및 해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고자 한다.

결론인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연구논지를 재강조하고 연구의 한계성을 기술하고자 한다.

제 2 장 해양안보 및 분쟁, 해군력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해양안보의 의의

1. 안보의 개념

안보(Security)라는 뜻을 가진 Security의 어원은 라틴어 Securitas(Free from care)로부터 유래되었으며, 근심과 걱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규약 성안 시 Security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¹⁸⁾ 안보는 국제관계학의 주요 연구대상으로서,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이 존재하듯, 학자들에 따라 안보에 대한 개념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데이비드 바드윈(David Baldwin)은 안보라는 개념은 모호한 상징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¹⁹⁾ 반면, 아놀드 월퍼스(Arnold Wolfers)는 안보란 객관적 의미에서는 획득한 가치에 대한 위협의 부재를, 주관적 의미에서는 그러한 가치가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했다.²⁰⁾

이와 같이, 안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안보란 객관적 현황과 주관적 심리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보다 단순히 하여 안보를 정의하면 위협의 부재(absence of threats) 혹은 위협으로부터의 해방(freedom from threat)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²¹⁾

2. 국가안보의 개념

국가안보는 국가안전보장의 준말로 걱정, 근심, 불안이 없는 국가 상태라는

18) 이광보·남기봉 등, 『국가안보론』, (인천 : 진영사, 2010), p.18.

19) David Baldwin, "The Concept of Security",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3(1997), pp.5~26.

20) A. Wolfers, "National Security an Ambitious Symbol",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23, No.1(1952), p.67.

21) Ken Booth, *New Thinking about Strategy and International Security*(London : Harper Collins Academic, 1991), p.319.

의미를 갖는다. 국가안보는 현실주의 시각에서 정의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다.²²⁾ 즉 국가가 자국의 영토, 독립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외적에 의한 군사적 침략으로부터 군사력으로 지키는 것이 국가안보인 것이다. 이는 국가안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녕에 총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서 국가주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국가이익이다.²³⁾ 국가안보의 관념은 국제정세와 위협 요소의 변화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변모해 왔다.²⁴⁾ 21세기에 들어서 국가안보에 있어서 새로운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 안보위협이 다원화되었다는 점이다. 에너지 문제, 무역마찰 등 경제문제, 식량, 환경문제 등과 같은 비군사적인 다양한 형태의 위협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요소로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안보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었다. 세계화가 심화, 진전된 국제사회는 여러 가지의 네트워크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데 비록 국지적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연결망을 통해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어떤 개인이나 조직 혹은 국가도 이러한 위협 요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또한 위협의 대상 역시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 사회, 조직, 가정, 개인에 이르기까지 위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화, 정보화의 진전으로 다양한 위협 요인이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발생하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다.²⁵⁾

이와 같은 국가안보의 개념을 국방대학교에서는 ‘정치, 외교, 사회, 문화, 경제, 과학기술 등 국가의 제 정책분야를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국내외로부터 기인하는 군사, 비군사에 걸친 다양한 직·간접적 위협을 억제·방지·배제하고, 유사시 적절히 대응하여 국가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를 보전하고 향상시키는 것’²⁶⁾ 이

22) 이광보·남기봉 등, 앞의 책, 18.

23) 육군사관학교, 『국가안보론』, (서울 : 박영사, 2001), p.21.

24) 한국과 같이 분단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안보정책은 힘의 우위라는 현실주의적 국방안보와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국가목표인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상주의적 안보의 한 형태인 집단안보와 군비통제를 해야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근석,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국방정책의 발전방향”, (경기 : 인하대학교, 2004), p.15.

25) 정상만·이상진, “국제 해양안보 협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해양연구논총』, 42집, (진해 : 해군사관학교, 2011), p.82.

26) 국방대학교, 『안보관계용어집』, (서울 : 국방대학교, 2005), p.11.

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는 국가의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일부국가에서는 국내적 안보가 더욱 중요해지는 현실 등으로 인해 전쟁에 대비하거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통적 안보’ 개념에서 비군사적 위협²⁷⁾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라는 개념의 사용이 보편적인 추세에 있다. 즉, 냉전이후 국가 간의 전쟁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국경을 초월하는 비군사적인 위협이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표 2-1>과 같이 군사적 위협과 비군사적 위협의 범주를 설정하여 비교해보면 안보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위협 범주도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비군사적 위협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안보 및 위협 구분

안보 및 위협 구분			안보 대상	위협 내용
군사적 안보	군사적 위협	비군사적	국가 존립	• 주권 상실, 국토 침략 등
			체제 존속	• 이념·체제부정, 전복 등
			정권 유지	• 정통성 시비, 공권력 방해 등
포괄적 안보		위협	사회안정 발전	• 경제 성장 둔화, 사회 갈등 심화 및 대량 인명손실 등
			자연환경 보호	• 생태계 파괴, 생활 침해 등
			삶의 질 향상	• 범죄, 마약, 불법 이민 등

* 출처 : 임태암·문광건 등,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대응방향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02 -1829)”,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2), p.16 인용 및 재편집

27) 비군사적 위협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04년 국방백서에 비군사적 위협이란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의 군사력 이외의 수단 또는 자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위협’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방부, 『국방백서 2004』, p.19. ; 14년 국방백서에는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테러, 사이버 공격, 감염병, 대규모 재해재난 등을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방부, 앞의 책, pp.53~54 ;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에는 ‘군사 이외의 정치, 경제, 사회, 심리면 등으로 발생하는 위협’ 으로 정의하였다. 국방기술품질원, 앞의 책, p.425. ; 한국국방연구원의 정책연구보고서에는 비군사적 위협은 ‘군사적 위협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의 군사력 이외의 수단 또는 자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위협의 형태이며, 초국가적 위협과 국가전복 활동, 국가적 재난, 상선의 영해침범 등을 포괄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임태암·문광건 등, 앞의 글, p.45. ; 전경만·조기형은 비군사적 위협을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및 과학기술 분야 등 이용 가능한 안보위협 수단을 사용하여 발생시키고 있는 위협 및 국가적 재해 재난에 의한 총체적인 위협’ 이라고 하였다. 전경만·조기형, 『비군사적 위협과 한국군 변환』, (서울 : 한국 국방연구원, 2009), pp.36-37.

3. 해양안보의 개념

안보 및 국가안보의 개념에 이어 해양안보(Maritime Security)의 개념은 단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해양의 이용 및 활용에 있어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지 않는 정도를 의미하며, 영국이나 미국 등 해양국가 중심의 전략적 사고에서 출발하였다.²⁸⁾ 해양안보는 영토 중에서도 해양영토와 관련된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는 국가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영해는 밖으로 EEZ와 공해로 연결되어 있어서 육상영토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육상 영토상의 국경선은 그 바깥이 다른 국가의 지배지역으로 닫혀 있는 반면, 해양영토는 그 바깥으로 통항과 자원개발의 기회가 열려있는 공간이 펼쳐진다는 차이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²⁹⁾ 따라서 해양안보는 바다의 특성, 다양한 방식에 의한 바다의 이용, 그리고 바다의 이용과 관련된 위협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안보의 사전적 개념을 해양의 차원에서 적용한 해양안보란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포, 불안, 근심 또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³⁰⁾ 즉, 해양과 관련된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및 사회문화 등의 분야에 대한 포괄적 문제들을 포괄적인 기준과 규율로 제도화함으로써 해양에서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해양안보를 안보의 용어적 개념이 아닌 ‘어느 곳의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언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키는가’라고 하는 안보 논리의 5개요소³¹⁾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느 곳의 무엇으로부터 지키는 가’의 차원에서 보면 위협이 기인하는 근원이나 장소와 위협의 실체를 인식하는 것으로서 위협의 장소는 해양이며, 위협의 실체는 자유로운 해양활동을 저해하는 해적, 테러, 해양 분쟁, 재난, 해양오염 등을 들 수 있다.

28) 신강석, “동아시아의 해양안보 위협요인과 한국의 대비과제”, 『사회과학연구』, 18호, (서울 : 숭실대 사회과학연구소, 2015), p.97.

29) 강량·임수환, “중국의 해양세력화와 한국의 해양안보”, 『세계지역연구논총』, 26집 3호, (서울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8), p.170.

30) 정상만·이상진, 앞의 글, p.82.

31) 국방대학교, 앞의 책, p.12.

둘째, ‘무엇을 지키는 가’의 차원에서는 지켜야 할 가치, 이익을 정의하는 것으로서 ‘해양에서의 항해와 상업 활동의 자유 증진’이라는 인류 공통의 가치를 지켜야 할 가치로 들 수 있다.

셋째, ‘언제 지키는 가’의 차원은 해양에서의 위협은 잠재적인 것일 수도 있고, 현존하거나 혹은 불시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협의 시간 상태에 따라 대응상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넷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지키는 가’라고 하는 것은 해양안보를 위해 동원되는 수단으로 위협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효과적인 해양안보를 위해서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정신·심리적, 군사적 수단 등을 구별하여 사용해야 한다.

다섯째, ‘어떻게 지키는 가’라고 하는 것은, 해양안보에 대한 접근방법으로서 독자행동, 쌍무적 접근, 다자주의적 접근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안보 논리의 5요소 측면에서 정의하면 “해양안보란 해양과 관련된 정치, 외교, 사회, 문화, 경제,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를 운용하여 해양으로부터 기인하는 군사, 비군사에 걸친 다양한 직·간접적 위협을 억제·방지·배제하고, 유사시 적절히 대응하여 인류 공통의 가치인 해양에서의 자유로운 해양활동을 보전하고 증진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³²⁾

또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제임스 크라스카(James Kraska)는 해양안보에 대해 보편적이거나 하나의 형태로서 수용되었던 정의는 없었지만, 대체로 “법의 지배에 따른 해양에서의 안정적 질서(a stable order of the oceans subject to the rule of law at sea)”로 간주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국제 해양안보의 위협 요소로는 해적과 선박납치, 테러리스트, 불법화물, 밀수업자, 인신매매업자, 국제범죄 및 극단주의자 조직들, 저항도 혹은 규제되지 않은 해양무장집단(maritime militia)들의 해양이용을 언급하고 있다.³³⁾

크리스 라만(Chris Rahman)은 해양안보를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관점에서 정

32) 정상만·이상진, 앞의 글, pp.82~83.

33) James Kraska and Raul Pedrozo,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Law* (Leiden·Boston : Martinus NIJHOFF, 2013), p.1.

의하고 있다. 첫째로는 해양자체의 안보로서 해양환경의 보호와 관련한 정치와 안보목표를 반영한다. 둘째로는 해양질서의 유지와 관련하여 국제해양법에 기초하여 안정적인 해양레짐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표를 반영한다. 셋째로는 연안국들이 자신의 해양주권과 관할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고 해양영토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는 바다에서의 군사적 활동과 관련한 군비통제 활동 등을 포함하며 마지막으로 해상수송체계에 대한 안보차원의 규율화에 의해 대량살상 무기 관련 물질과 장비의 불법적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³⁴⁾ 라고 주장한다.

UN 군축연구소(Institute for Disarmament Research : UNIDIR)는 해양안보를 “현대의 가장 중요한 안보 도전과 관련된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주제” 라고 정의하면서 해상을 통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위험에 주목하고 있다.³⁵⁾ 결국, 해양안보는 국가 및 학자들의 관심에 따라 정의를 약간씩 달리할 수 있지만 대체로 바다를 정치, 경제, 군사, 사회적 목적을 위해 국제해양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³⁶⁾

지금까지 논의한 국가안보와 해양안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을 지키는가’ 에 관한 문제이다. 국가안보는 국가의 주요 구성요소들, 즉 국가의 존립과 정통성, 영역(영토, 영해, 영공), 정치적 독립, 그리고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등을 보전함과 동시에 증진 및 향상시켜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둔다.

반면, 해양안보는 해양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인류 공통의 가치로 보고 이를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더욱 자유롭게 하고 그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안보와 해양안보의 개념을 안보의 논리를 구성하는 5요소의 측면에서 <표 2-2>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34) Chris Rahman, *Concept of Maritime Security : A Strategic perspective on alternative visions for good order and security at sea, with policy implication for New Zealand*,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2009, pp.31~42.

35) Keerstin Vignard, “Editor’ s note,” UNDIR *disarmament forum : maritime security*, (two · 2010), p.1.

36) 박영준, “동아시아 해양안보의 현황과 다자간 해양협력방안”, 『JPI 정책포럼』, (제주 : 제주평화연구원, 2012), P.2.

〈표 2-2〉 국가안보와 해양안보의 구분

안보의 논리 5요소	국가안보	해양안보
‘어느 곳의 무엇으로 부터’	국내, 주변지역, 세계적 영역 으로부터 기인하는 위협	해양이라는 공간적 개념에서의 위협
‘무엇을’	국가의 주요 구성요소 (주권, 국토, 국민 등)	인류 공통의 가치 (해양활동의 자유와 증진)
‘언제’	잠재, 현존, 불시발생	
‘어떠한 것을 가지고’	정치, 외교, 경제, 군사적 수단 등	
‘어떻게’	독자행동, 쌍무적 접근, 다자주의적 접근 등	

* 출처 : 정상만 · 이상진, 앞의 글, p.83.

4. 해양안보의 중요성

가. 한국에서의 해양안보 중요성

한국은 지정학적 여건으로 해양안보의 중요성은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매우 중요하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지리적 환경에서 해양은 국가 안보적 생존을 위한 공간이다. 한반도는 북쪽의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을 제외하면 70% 이상이 바다에 접해 있으며, 더욱이 남북이 분단된 현재는 4면이 바다인 도서국가와 같은 입장이다.

둘째, 해양으로의 진출은 국가번영을 보장한다. 과거에는 중국의 영향으로 대륙 지향사상으로 인해 바다를 경시하였고, 농경시대가 주축이 되어 바다에 대한 영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으로 인한 국권 상실과 한국전쟁을 경험한 후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특히 경제 개발에 따라 우리나라는 바다를 통하지 않고서는 경제적 성장을 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

셋째, 해양은 국가발전과 번영의 해상교통로를 제공한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이 빈약하며, 지리적으로 도서국가에 가깝기에 바다를 통하

지 않고는 국가의 번영을 도모할 수가 없다. 국가 전체 해외 물동량의 99.7%가 바다를 통하여 운송되고 있다. 즉, 해상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성장시킬 수 없으며, 큰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³⁷⁾

나. 군사적 측면에서의 해양안보 중요성

지구의 3/4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비록 EEZ 등을 통해 연안국들의 해양 관할권이 확장되고 있지만, 바다의 대부분은 공해와 심해저로 남아 있다. 세계를 주도한 패권국은 항상 제해권을 장악한 해양강국이었음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16세기 근대 국가체제 성립 이후에는 포르투갈이, 17세기에는 네덜란드가 각각 유럽의 패권국이 되었다. 18세기에는 영국이 대영제국을 건설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으로 등장하여 오늘날 국제체제 질서를 주도하는 패권국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³⁸⁾ 전통적 개념에서 해양은 해전의 장으로서, 그리고 전략적 군사물자를 수송하는 해상교통로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었다. 그러나 오늘날 해양은 전·평시 전쟁을 억제하고 위기를 관리하며 국가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해군력의 주요활동 무대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해양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해양안보 중요성

지구촌의 글로벌 시대에서 세계 각국 간 교역의 주요 수단인 해양활동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제교역의 90% 이상이 해양을 통해 이루어지며, 세계 GDP의 10% 이상을 창출하는 생산원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양에서의 부가가치 생산이라는 경제적 이익 논리가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주요 연안국가의 세계 해양 물동량 허브 선점을 위한 항구 개발 및 선박 확보와 해양운송 및 조선 등의 해양산업으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육상자원 고갈에 따른 해양자원 관리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해양의 61% 이상이 공해로서 그 중 대부분이 미개척 분야

37) 조한길, “동북아 해양안보환경의 변화와 한국해군의 대응전략”, 『해군대학 연구논문』, (대전 : 합동군사대학, 2004), p.3.

38) 이춘근, “미국의 동아시아 해군력 변동현황 분석”, 『동아시아의 해양분쟁과 해군력 증강 현황』,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8), p.185.

로서 해양이 국가의 미래 전략적 생존공간으로 간주되고 있다.³⁹⁾ 자원의 보고인 해양은 어패류 같은 생물자원 뿐만 아니라 석유, 천연가스 등 광물자원이 해저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생물자원은 바다에 사는 동식물로 총 30여만 종으로 육지 생물보다 7배가 많으며 김,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와 어패류, 포유류 등이 포함된다. 바다에는 지구 전체 동식물의 약 80%가 서식하고 있다. 바다의 동식물은 예부터 인간에게 필요한 식량의 중요한 공급원이었으며, 앞으로도 보호하고 개발해야 할 중요한 자원이다. 생산성 또한 월등히 높다. 해양이 인류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량 공급능력은 육지에 비해 약 40배가 넘는다.⁴⁰⁾ 광물 자원 중 석유는 해저에 약 2조 배럴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육지매장량의 약 50% 수준으로 2020년경에는 전 세계 석유생산량의 총 68%정도를 해저 석유자원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⁴¹⁾ 이외에도 해양자원에는 염화나트륨, 마그네슘 같은 해수용종 자원, 조력 같은 에너지 자원, 그리고 해양리조트나 해상공원 같은 공간자원 등이 있다. 이 때문에 부족한 자원을 해양에서 확보하지 않고서는 국가 경제발전을 지속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특히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을수록 바다를 통한 대외 수출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향후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양자원 개발이 본격화되면 해양영토에 대한 경쟁은 보다 격렬해질 것이므로 해양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라.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해양안보 중요성

해양법은 “해양지배의 원칙과 해양자유의 원칙”을 반복하면서 발전하고 있다.⁴²⁾ 16세기 이전에는 해양강대국들이 해양을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해왔다. 해양강대국들은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해양을 항해하는 모든 외국선박들을 노획품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했고, 심지어 자국법으로 선원들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까지 행사하였다. 16~17세기에는 해양자유의 원칙이 근대 국제법으로

39) 전체 해양면적이 약 3.61억 km²인 반면, 공해 면적은 약 2.19억 km²이다.

40) 이경호·정승진, 『바다와 국가의 정책』, (서울 : 학현사, 2001), pp.6~7.

41) 박인태, 『해양자원과 활용』, (서울 : 학문사, 1997), p.94.

42)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서울 : 효성출판사, 1999), p.4.

정립되었다.⁴³⁾ 그러나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면서 해양의 분할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12해리 영해폭을 확정하고 영해내에서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였다. 또한 200해리 EEZ 개념을 채택하고 연안국 관할권밖의 심해저 및 광물자원에 대해 인류 공동의 유산개념을 적용하였다. 다시 말해서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이전에는 어느 국가든 해양자원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었으나, 동 협약으로 인해 그동안 해양강대국이 독점하고 있던 해양자원 개발을 규제하게 되었던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전략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그것은 연안국의 해양관할권 확대에 따른 인접국간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가져왔고, 또 관할해역에서의 통항제도 문제까지 불러일으켰다. 왜냐하면 해양자원의 관할권 및 개발 논쟁을 포함한 국가간의 해양분쟁은 대부분 경계획정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⁴⁴⁾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하고 있는 영해, EEZ, 그리고 공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영해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연안국의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수역을 말하며, 연안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수역이다.

영해의 경계획정은 관련 당사국간 합의가 되지 않는 한 마주보는 국가 (opposite state) 간의 양 해안 거리가 24마일이 되지 않는 경우와 영토가 인접한 국가(adjacent state) 간에는 중간선 원칙⁴⁵⁾ 또는 등거리 원칙⁴⁶⁾에 의해 영해를 설정한다. EEZ는 연안국의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미치는 범위를 말하며, 연안국은 이 수역내에서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주권적 권리와 인공섬, 해양과학조사 등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⁴⁷⁾ 그리고 공해는 어

43) 스페인은 1494년과 1529년에 서대서양, 멕시코만, 태평양 등에 배타적 항해권을 발표했고, 포르투갈은 동대서양과 인도양에 대한 권리를 선언했다. 임인수 역, 고르시코프 저, 『국가의 해양력』, (서울 : 책세상, 1999), p.102.

44) 이경호·정승진, 앞의 책, p.27.

45) 중간선 원칙은 마주보는 국가 간 서로 마주보는 각 연안의 가장 가까운 지점 간 거리의 중간점의 궤적이 두 국가 영해의 경계가 된다(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

46) 등거리 원칙은 관련 두 국가 간 합의에 의해 동일한 궤적이 두 국가의 영해의 경계가 된다.(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

47) 연안국은 EEZ내에서 상부수역과 해저, 하층토의 생물,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

는 특정한 국가의 배타적 권한 행사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국제법상 모든 국가에 개방 되어있는 해역이다.⁴⁸⁾ 이와 같이 유엔해양법 협약은 국가간 협의하여 해양관할권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들은 국가이익 확보를 위해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정치·외교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고, 더 나아가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국제법적 측면에서도 해양안보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제2절 해양분쟁의 의의

1. 해양분쟁의 개념

분쟁은 갈등과 전쟁의 중간단계를 의미한다. 분쟁이란 용어는 특정 사회집단간의 비폭력적 갈등에서 부터 대규모 군사분쟁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분쟁이란 개념은 “양립할 수 없는 이해관계에 대해 어느 한 집단(종족·인종적·종교적·정치적·사회경제적 등)과 다른 집단(들)간의 상호 대립상태”라고 정의된다.⁴⁹⁾ 이 개념 중 상대방의 기득권 상실을 초래하는 것들로서, 부족한 자원·현상·세력·가치 등을 둘러싼 주장 또는 대립을 ‘양립할 수 없는 이해관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유한한 가치를 둘러싼 분쟁의 대표적 유형이 영토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영토분쟁은 크게 ‘내륙영토 분쟁’과 ‘해양영토 분쟁’으로 대별되고 각각은 다시 ‘영유권 분쟁’(territorialdispute)과 ‘국경경계 분쟁’(boundary dispute)으로 구분될 수 있다. 영유권 분쟁은 영토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정치적 결정을 둘러싼 분쟁

개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주권적 권리와 해수, 해풍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과 같은 경제적 발전과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대한 주권적 권리, 인공섬,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유엔해양법협약 제 645호).

48) 유병화·박노형 등, 『국제법 II』, (서울 : 법문사, 2000), p.85.

49) James E. Dougherty and Robert L. Pfaltzgraff, *Contend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 Harper & Row, 1990), p.187.

을 말하며, 국경경계 분쟁은 이미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진 국경 지역의 경계선 획정을 둘러싼 분쟁을 의미하는데 해양영토 분쟁의 경우는 ‘도서영유권 분쟁’과 해양경계선획정 분쟁’이 이에 해당한다.⁵⁰⁾ 일반적으로 해양의 경계획정에는 영해, EEZ, 대륙붕 등의 경계선이 포함되지만, 영해의 경계선을 제외한 대륙붕과 EEZ 설정은 엄격하게 구분하면 관할권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⁵¹⁾

해양분쟁에 대해 박영준 교수는 ‘해양도서의 영유권을 둘러싼 국가간 갈등, 영해·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 등의 경계를 둘러싼 국가간 갈등, 또한 이 해역들에서의 자원개발을 둘러싼 국가간 갈등, 관련국들의 해군력 증강과 해군력 시위로 해상수송로의 안전과 자유항행이 위협받는 사태’라고 정의하였다.⁵²⁾ 즉, 해양분쟁은 해양에서의 영역과 그 영역에서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발생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주요 발생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도서영유권 분쟁이다. 도서영유권 분쟁은 영토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정치적 결정을 둘러싼 분쟁으로 역사적 권원과 국제법에 근거한 주장이 첨예하게 얽혀있다. 왜냐하면 도서는 기선(base line)이나 대륙붕, EEZ의 경계설정에도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안국들은 영해나 관할해역을 조금이라도 더 확장하기 위해 자국의 능력이 미치는 모든 도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해양분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연안국들 간의 해양경계선 획정과 관련된 분쟁이다. 이는 양국 해양간의 폭이 400해리가 되지 않을 경우, EEZ와 대륙붕 경계선 설정 시 중복되는 해양을 어떻게 해결 하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엔해양법협약 상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해 경계선을 설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들은 도서와 암초의 위치, 해안선의 굴곡, 그리고 해저지형 등을 고려하여 동 협약의 조항을 자국에게 유리하게 해석함으로써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논쟁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50) 유철중,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영토분쟁』, (서울 : 삼우사, 2007), p.60.

51) 배진수,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해양영토 분쟁의 배경 및 현황 : 동해, 서해 및 일·러 간 해양분쟁”, 『Strategy 21』, Vol. 6, No. 2,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2), pp.16~17.

52) 박영준, 앞의 글, P.2.

셋째는 해상교통로 분쟁이다. 해상교통로는 평시에는 경제발전을 위한 자원과 상품이 이동하는 고속도로 역할을 하며, 전시에는 보급품과 증원군이 이동하는 병참선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군사적 이동로이므로 국가들은 전·평시 자원의 원활한 공급과 해외시장과의 안전한 연결을 위해 해상교통로 확보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⁵³⁾

2. 해양분쟁의 위협 유형

한국군의 합동 군사기본교리에 비군사적 위협은 국내적 위협 요인으로는 테러, 사이버 공격, 해양 및 환경오염, 전염병, 재난, 대규모 불법 과업 및 폭동 등이 있으며, 초국가적 위협요인으로 국제테러, 국제범죄(무기와 마약밀매, 밀입국, 해적 등), 사이버 공격, 해양 및 환경오염, 전염병 등이 있다. 특히 테러와 사이버공격은 비군사적 위협이면서 동시에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으며, 해양 및 환경오염, 전염병 등은 국내적 위협요인이자 초국가적 위협요인이기도 하다.⁵⁴⁾ 라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표 2-3> 같이 국방백서 및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논문에서 비군사적 위협으로 분류한 해양범죄는 해적, 해상테러, 해상강도, 불법어로 등이기 때문에 해양분쟁과는 다른 성격이다.

한편, 전 세계 해양분쟁은 외교 및 국제법적으로 해결이 된 분쟁도 있지만 무력으로 해결된 분쟁도 있다.⁵⁵⁾ 이처럼 해양분쟁의 해결방법도 다양해서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으로 분류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현재 우리군 및 학계에서도 명확하게 분류가 되어있지 않고 위협의 성격도 정리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해양영토 관리는 국가영역 주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이므로 한시적 정책이나 외교적 문제로는 다만 분쟁의 진행을 지연시킬 뿐, 그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는 해당 국민들의 민족주의나 애국심과 직결되기 때문에 쉽게 정치적 가치문제로 그 성격이 급선회하기 쉽다. 결국 국경의 안정성과 영토주권의 일체성으로 귀

53) 강희각, “한·중·일 해양분쟁 심화요인과 그 함의에 관한 연구”, (대전 : 한남대학교, 2013), p.35.

54) 합동참모본부, 『합동군사기본교리』, (서울 : 합동참모본부, 2014), pp.1-7~8.

55) 외교 및 국제법적으로 해결된 사례로는 미국과 쿠바간의 후벤투드 섬 분쟁 등이 있고 군사적으로 해결된 사례로는 영국과 아르헨티나간의 포클랜드 군도 분쟁 등이 있다.

결되어 당사국들은 간혹 국가의 흥망을 담보로 무력충돌도 불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⁵⁶⁾

정리하면 해양자원과 해양주권을 둘러싼 해양영토 분쟁은 행위주체가 모두 국가이므로 당사국 간의 정치적·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 아울러 앞 절에서 기술한 해양안보 및 해양분쟁의 의의를 고려해 보더라도 해양분쟁을 비군사적 위협으로 단정 지어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우리와 직접 관련 있는 해양분쟁은 군사적 위협에 준하여 분류하고 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해양분쟁은 비군사적 위협으로 분류하여 대응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표 2-3> 비군사적 위협 유형과 성격

위협의 유형		행위 주체	위협 성격(형태·양상)
대량 살상무기 확산		국가/범죄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질서 위협 • 국제 테러조직과 연계(고강도 위협)
테러	물리적 테러	개인/범죄 조직 / 적성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테러리즘 • 사회 혼란 확산(고강도 위협)
	사이버 테러		
중국 가적 범죄	불법마약거래	범죄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사회 파멸 등(안보위협 가능)
	소형무기확산	개인/범죄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안정 저해 • 테러와 연계(안보위협 가능)
	해양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질서 교란 • 테러와 연계
	인터넷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질서 혼란 등
	불법 이민 및 밀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질서 교란 • 인권 유린 등 • 테러와 연계(안보위협 가능)
환경 위협	환경오염	개인/범죄조직/ 국가/자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여건 악화 등(안보위협 화 추세)
	전염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사회 파괴 등(안보위협 가능)
	재해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재난 등(안보위협 가능)

* 출처 : 국방부, 『국방백서 2004』, p.8. 및 엄태암, 앞의 글, p.12. 참고하여 재편집

56) 최병학, “동북아시아 해양영토분쟁과 한국의 해양안보”, 『해양전략』, 제154호, (대전 : 합동군사대학, 2012), p.50.

3. 분쟁의 진행 및 해결방법

국제사회에서 국가간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국가간의 해양분쟁이 야기되었을 때, 당사국들은 당사국간의 교섭 또는 국제사회를 통해 그 분쟁을 해결하기도 하고, 극도의 긴장이 고조되면 위기(crisis)에 이르게 되고, 이 위기가 무력충돌로 이어져 일정수준에 오르게 되면 전쟁(war)이 되는 것이다.⁵⁷⁾ 미첼(C. R. Mitchell)에 의하면 분쟁은 상황(Situation), 태도(Attitude), 그리고 행위(Behavior)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상황은 분쟁 당사자들이 상호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가졌다고 인식하는 것이며, 태도는 분쟁상황과 행위에 영향을 주고받는 심리적 상태 또는 조건으로 상대방이 군사력을 동원하거나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면 자신도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되고 분쟁이 확대되면 이해 당사국들의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폭력적인 집단사고를 유발시키는 배타적 민족주의 정서로 나타나기도 한다. 행위는 한 당사자가 분쟁 상대방의 목표를 포기 또는 수정시키기 위해 취하는 행동이다.

이러한 행위는 외교적일 수도 있고 폭력적일 수도 있으며 계획적이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⁵⁸⁾ 이처럼 분쟁은 분쟁을 구성하고 있는 3가지 구성요소가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면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간을 거치면서 변화한다. 또한 미첼은 분쟁은 <그림 2-1>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분쟁은 양립할 수 없는 목표의 존재, 양립할 수 없는 목표의 인식,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충돌행위의 발생에 따라 분쟁의 발단(Incipient conflict), 잠재적 분쟁(Latent conflict), 명백한 분쟁(Manifest conflict)으로 진행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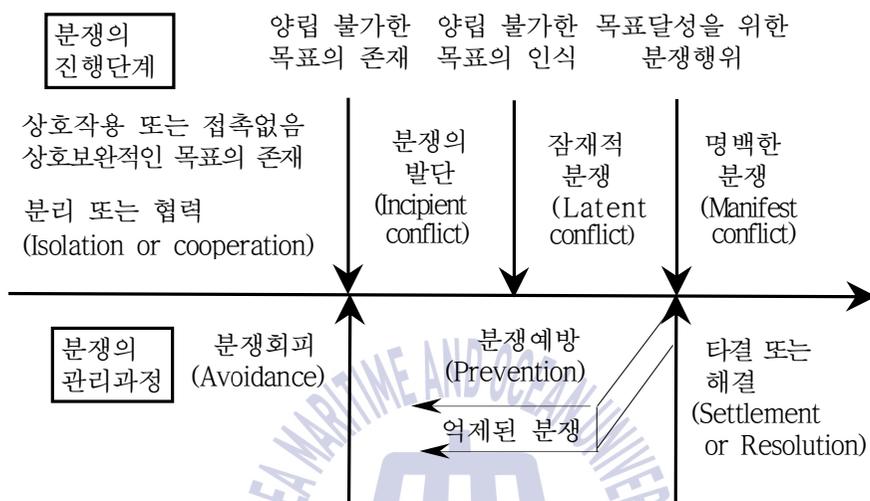
여기서 잠재적 분쟁은 분쟁 당사자가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인식하는 것, 즉 분쟁상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명백한 분쟁은 양립할 수 없는 목표가 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

57) 무력충돌 직전의 위기상황을 포함한 단계를 흔히 군사분쟁(militarized dispute)이라고 한다. 김만수, “도서영유권 분쟁과 한국의 독도 대응전략”, (서울 : 고려대학교, 2009), p.5.

58) C. R. Mitchell,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Conflict* (London : Macmillan, 1981), pp.51~55.

조건일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잠재적 분쟁은 분쟁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명백한 분쟁은 분명한 행위가 수반되는 분쟁상황이라는 것이다.⁵⁹⁾

<그림 2-1> 분쟁의 단계별 진행현황



* 출처 : C. R. Mitchell,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Conflict* (London : Macmillan, 1981), p.55, 256 재구성.

분쟁회피는 서로 양립 불가능한 목표의 존재 인식이 구체화되기 이전의 단계로, 분쟁의 발단 단계에서 양립할 수 없는 목표의 존재를 회피 또는 목표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잠재적 분쟁이 명백한 분쟁으로 진행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이다. 분쟁예방은 분쟁의 발단 및 잠재상황에서 양립할 수 없는 목표에 대한 행위를 단념하는 것이다. 분쟁해결은 분쟁타결의 범위를 넘어서 분쟁의 구성요소 모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분쟁의 원인을 완전히 해소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강제적, 사법적, 외교적 해결방안이 있다. 이중 외교적 해결방안에는 교섭, 중재, 심사, 조정, 그리고 국제조직을 통한 해결방법이 있는데, 교섭(negotiation)이란 분쟁 당사국들이 직접 상대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므로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해결책이 가능하고 정치적·법률적 문

59) C. R. Mitchell, 위의 글, p.49.

제 등 제반 분쟁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특별한 입장이나 태도를 취하도록 요구하지 않아 부담을 주지 않는 등의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반면에 해결의 객관성·공평성이란 면에서 특히 강대국과 약소국의 교섭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⁶⁰⁾

중재(mediation)는 제3자가 주선의 임무⁶¹⁾를 능가하여 직접 분쟁당사국간의 교섭에 개입하고 심지어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inquiry)는 제3자가 분쟁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이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국가간의 분쟁은 그 원인이 된 사실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야기되거나 또는 그 긴장도가 더욱 고조된다. 심사를 위하여 통상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심사위원은 분쟁 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된다.

조정(conciliation)은 독립적 지위에 있는 제3자(조정위원회, 1인의 조정위원 또는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가 분쟁을 심사하여 분쟁 당사국에 대하여 해결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정은 심사와 중개의 결합 형태이다. 그리고 유엔이나 안전보장이사회 총회를 통한 국제조직에 의한 해결방법도 있다. 사법적 해결방안은 독립된 재판기관에 의해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 판결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며, 여기에는 중재재판, 사법재판, 그리고 지역적 사법재판이 있다.⁶²⁾

60) 김정건, 『국제법』, (서울 : 박영사, 1990), pp.575~576.

61) 주선(good offices)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제3자가 분쟁 당사국간의 교섭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선은 제3자가 분쟁당사국을 설득하여 교섭에 임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분쟁당사국간의 교섭이 개시되면 주선의 임무는 종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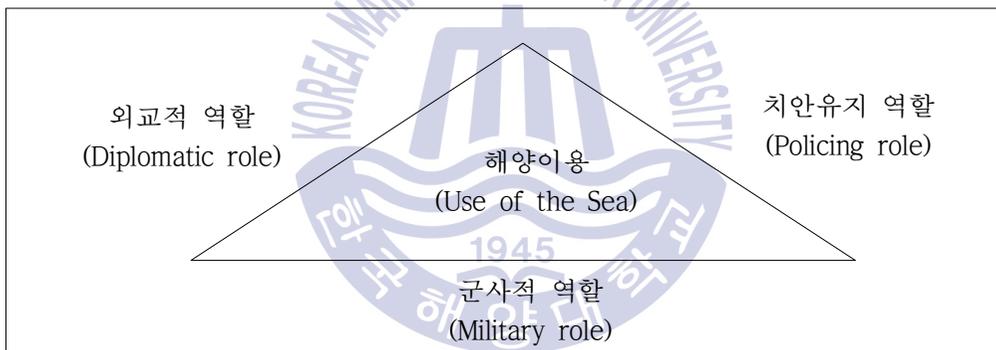
62) 국제해양법재판소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국제해저기구 및 대륙붕한계 위원회와 함께 설립된 조약상의 독립적인 사법기구로, 동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판단하고 있다. 1982년 12월 10일 자메이카의 몬테고 만에서 서명되었고, 1994년 11월 16일 발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을 기초로 하여 1995년 8월 유엔 전문기구로 발족되었고 재판소는 독일의 함부르크에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성남 : 한국학중앙연구원)

제3절 해군력의 역할

1. 탈 냉전기 이전 해군력의 역할

해군의 역할은 20세기 후반 냉전시대에 비교적 많이 수행되어 왔고 현재에도 해군의 독특한 기능과 임무는 변함없이 유효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중요해졌다. 탈 냉전기 이전 해군력의 역할과 관련하여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켈 부스(Ken Booth)는 해양의 사용과 관련된 해군의 역할을 <그림 2-2>와 같이 삼각형 이론을 통해 군사적 역할, 외교적 역할, 치안유지 역할의 3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고 그중 군사적 역할을 가장 핵심으로 꼽았다.

<그림 2-2> 해군력 사용에 대한 삼각이론



* 출처 : Ken Booth, *Navies and Foreign Policy*, (New York : Holmes & Meier Publisher, INC. 1979), p.16.

냉전이 종식될 무렵인 1990년, 에릭 그로브(Eric Grove)는 켈 부스의 삼각형 이론을 거의 수용하였으나 군사적 역할을 국가의 주권과 선의의 질서유지, 국가 자원과 국가의 권리보호, 미래 국제평화 유지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⁶³⁾

탈 냉전시대에 진입한 1994년, 마이클 퍼그(Michael Pugh)는 해양의 사용을 하나의 건물모델로 설명하고 있다. 국기과시(showing the flag)와 해군력 현시는 해양의 사용에 있어 기초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기둥으로 여전히 남아 있으며,

63) Eric Grove, *The Futher of Sea Power* (London : Routledge, 1990), pp.233-235.

다른 기둥들 즉 해양거부, 해양통제, 군사력 투사 또한 국가의 권익을 보호, 유지하고 지원할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⁶⁴⁾

이상과 같이 해군력의 역할에 대한 제 견해들은 <표 2-4>와 같이 주장하는 학자들의 국가나 주관적인 배경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를 종합해 보면, 해군력은 국가이익 추구하고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양의 효과적인 사용과 통제라는 측면에 그 역할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 해군의 역할

구 분	냉전기	탈 냉전기	
	Ken Booth(1979)	Eric Grov (1990)	Michael Pugh (1994)
군사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력균형 • 군사력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력투사 • 해양통제/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력 투사 • 해양통제 • 해양거부 • 해군력 현시 • 평화유지 및 강제 • 선의의 질서 유지
외교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힘에의한 협상 • 조작 • 국가의 위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기과시 • 포함외교 	
경찰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에 대한 책임 • 국가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권과 선의의 질서유지 • 국가자원과 권리 보호 • 국제평화유지 	

* 출처 : 배진석, “양분화이론으로 본 동아시아의 해양안보 질서와 해군력의 역할”, (부산 : 동아대학교, 2011), p.29.

2. 세계화 시대 해군력의 역할

세계화 시대의 해군의 독특한 기능과 임무는 변함없이 유효할 뿐만 아니라 국제안보 질서에서 오히려 해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로즈노우(James N. Rosenau)가 전 세계적 행위자의 확산, 역동적 기술의 충격, 국가경제의 세계화, 상호의존적 이슈의 출현, 국가의 약화 등의 원인으로 개인의 역량이 혁명적으

64) Michael Pugh, “Sea Power, Security and Peacekeeping after the Cold War”, *Maritime Security and Peacekeeping*,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4), p.26.

로 발전하고 이를 통해 국가적 수준의 탈 권위화 과정과 세계구조의 양분화가 이루어졌고 이것은 국제안보 질서의 양분화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국가중심적 체계와 다중심적 체계로 구성되어 발전하고 있다.⁶⁵⁾ 라고 하였듯이 국제안보 질서의 양분화는 해양안보 질서에도 국가중심적 안보를 추구하는 면과 다중심적 안보를 추구하는 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해양영토 분쟁이나 영유권 분쟁 등은 국가중심적 안보를 추구하는 안보환경을 조성하며 테러, 해적, 마약, 밀수 등과 연관된 분쟁 등은 다중심적 안보를 추구하는 안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냉전시대의 전통적 해양안보가 국가중심적인 안보질서였다면 세계화 시대에서의 해양안보는 국가중심적 안보질서와 행위자들이 다양한 다중심적인 안보질서로 양분화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양분화 된 해양안보 질서 상황에서 해군력의 역할은 과거처럼 군사적, 경찰적, 외교적 역할로 정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해양안보 상황에 따라 해군력의 역할이 좀 더 어느 쪽으로 치중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⁶⁶⁾

즉, 해군력의 역할은 군사적인 해양안보 상황에서는 군사적 활용 경향인 해양통제, 군사력 투사, 해군력 현시를 수행한다. 비군사적 해양안보 상황에서는 외교·경찰적 활용 경향인 해양감시, 협력적 원정작전, 해상에서 선의의 질서유지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프리 톨 교수는 해상에서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탈근대 해군(post-modern navies)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 중 하나임을 지적하면서 저강도 작전 등에서 해양안보를 위한 해군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⁶⁷⁾

또 다른 역할로는 세계적 수준에서 해군력을 이용한 상호 협력, 연합훈련,

65) 이승렬·배진석, “양분화된 동아시아의 해양안보 질서와 해군력의 역할, 『21세기 정치학회 회보』, 21권 1호, (서울 : 21세기 정치학회, 2011), p.160.

66) 이승렬·배진석, 위의 글, p.161.

67) 톨 교수는 국가 및 해군발전 모델을 전근대(pret-modern), 근대(modern), 탈근대(post-moderns)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중 탈근대적 국가는 북미대륙과 서유럽 및 북부유럽에 위치하고 일본 등 일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도 포함하였다. 탈근대 해군의 임무로 ① 해양통제, ② 원정작전 ③ 해양질서 ④ 해양합의 유지의 4가지 형태의 결과를 추구하는 전략과 전력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배형수 역, 앞의 책, p.15.

그리고 상호 방문 등을 통해 해양 컨센서스를 유지하는 역할에 대한 중요성도 지적하였다.⁶⁸⁾ 아울러 오늘날 북극항로의 개통, 남극대륙의 활용, 해저 자원개발 등 해양이 제공하는 다양한 미래의 가치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군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3. 국제분쟁 시 해군력의 역할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블랙만(Barry M. Blechman)과 카플란(Robert D. Kaplan)은 미국이 1946년부터 1975년까지 30년 동안 군사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총 215회의 사례 중에서 177회인 82%의 경우에 해군력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군사력 중에서 해군력이 가장 빈번히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고 분석했다.⁶⁹⁾

또한 미국의 멘델(Robert Mandel)에 의한 분석에 따르면 국제분쟁에서 해군력을 사용한 경우가 해군력을 사용하지 않았던 경우에 있어서 보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해군력이 외교적 수단으로 국제분쟁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정치적 수단이며, 분쟁해결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다는 경험적 사실을 증명해 준다.

미국의 로스(Robert Ross)는 대만해협 분쟁 시 중국과 미 해군의 군사력 사용에 관한 제반과정과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면서 군사력이 국가의 외교적 노력과 병행하여 사용될 때 그 효과가 나타나며, 여기에는 국가의 평판과 효과에 대한 의심, 동맹국에 대한 신뢰성, 상대국에 대한 강압의 효과 등에서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하였다.⁷⁰⁾

68) 이근, “해양안보 협력의 국제적 발전추세와 해군의 역할 확대”, 『Strategy 21』, 통권29호,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2), p.20.

69) 블랙만과 카플란이 식별한 미국이 군사력을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총 횟수는 263회이나 자료의 애매함 때문에 48회는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215회의 군사력 사용의 사례에 대해서만 분석을 실시하였다. 양정승, “설득이론을 통한 해군력의 정치적 사용에 관한 고찰”, 『Strategy 21』, 통권 30호, (서울 : 한국해양전략 연구소, 2012), p.245에서 재인용.

70) 양정승, 위의 글, pp.245~246.

제3장 동아시아의 해양분쟁 및 비군사적 해양안보 위협

제1절 남·동 중국해 해양분쟁에 따른 해양안보 위협

1. 남중국해 분쟁

남중국해(South China Sea)는 남사(南沙, Spratlys), 서사(西沙, Paracels), 중사(中沙, Macclesfield Bank), 동사(東沙, Pratas) 등 4개 군도가 위치하고 있다.⁷¹⁾ 남중국해의 지리적 분포는 북위 23도 27분에서 남위 3도까지, 동경 99도 10분에서 122도 10분까지의 해역으로 동서 거리가 약 1,300km, 남북으로 약 2,400km 뿐이며 동북에서 서남쪽으로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위치한 반폐쇄해에 속한다.⁷²⁾ 전 세계 해양 물류의 절반 가까이와 원유수송량의 60% 이상이 남중국해를 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원유수송의 대부분이 이 지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남중국해 분쟁은 이들 군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도서영유권 분쟁과 관할해역 갈등을 의미한다.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기원전 2세기 중국의 한 무제가 해양 항행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남중국해에 대한 항행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관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에 들어 중국은 1940년대에 남중국해에 ‘9단선(九段線 · nine dash line)’ 을 긋고 관할권을 주장한바 있다.⁷³⁾ 이런 역사적 기록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분쟁

71) 분쟁도서 명칭은 학자 및 연구자, 언론사 마다 약간 상이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국어(네이버 번역기 기준), 한문, 영어 순서로 통일하여 기술한다. 남중국해 군도별 섬, 산호초, 사주, 암초 수는 아래표와 같다.

구분	섬	산호초	사주	암초	구분	섬	산호초	사주	암초
남사군도	11	6	0	105	동사군도	3	29	0	0
서사군도	15	5	5	4	중사군도	0	20	0	0

* 출처 : <http://ko.wikipedia.org/wiki/Spratly> (검색일 : 2016. 6. 6) 및 관련 자료 종합

72) 김진욱, “동북아시아 도서영유권 분쟁의 법적 쟁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목포 : 목포대학교, 2013), p.62.

73)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은 남중국해에 설정한 가상의 선으로, 국민당 정부 시절인

의 시작은 대체로 1960년대에서 1970년대 해당 수역에서 석유가스 자원을 발견한 이후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⁷⁴⁾

남중국해의 아직 개발되지 않는 잠재적 석유 매장량은 조사기관에 따라 다양하지만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보고에 의하면 남중국해에는 최대 110억 배럴의 원유와 190Tcf(trillion cubic feet)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은 남중국해의 원유 매장량을 50-2,000억 배럴, 가스 매장량은 70-290Tcf로 추정하고 있다.⁷⁵⁾ 또한 남중국해에는 어족자원도 매우 풍부하여 연간 1km²에서 7.5톤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한다.⁷⁶⁾

2015년 10월 기준으로 남중국해 군도는 <그림 3-1>과 같이 베트남 32개, 중국 11개, 필리핀 11개, 말레이시아 6개, 대만이 1개의 도서를 각각 점령하고 있으며 분쟁 당사국 가운데 브루나이만 점령 도서가 없다.⁷⁷⁾

1947년 11단선을 담은 공식 지도를 제작·출판하면서 만들어졌으며 이 선 안에는 남중국해의 80% 이상이 포함되고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사군도 등이 모두 들어가 있다. 구단선이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2009년에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공동으로 제출한 대륙붕 외측한계 자료에 대해 중국이 공식적으로 9단선내 자국의 관할권을 주장한 것에서 비롯된다. 중국은 9단선이 역사적 권원에 두고 있으며, 9단선을 선포하고 남중국해의 권리를 주장한 것에 대하여 인접하고 있는 어느 국가도 이에 대해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목인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주장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발견하기 곤란하고 먼 왕조시대에 있었던 희미한 기록만으로 현대에 이르러 그러한 권리를 계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성,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주장이라고 본다. 정갑용,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9단선’의 합법성 검토”, 『독도연구』, 제16호, (대구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4), p.1.

74) 김진욱, 앞의 글, p.63.

75) U. 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South China Sea. 7 February 2013. p.2. (http://www.eia.gov/countries/analysisbriefs/South_China_Sea/south_china_sea.pdf. (검색일 : 2014. 4. 5).

76) Raman Ouri & Arun Sahgal. “The South China Sea Dispute : Implications for India.” *Indian Foreign Affairs Journal*. Vol. 6. No.4. 2011. p.443.

77) 한국국방연구원, 세계분쟁 데이터베이스

감시선이 남중국해 베트남 석유개발 구역에 있는 베트남 해양시추선의 해저케이블을 절단하고 해저개발을 저지하였다. 2013년 4월 이후로 중국은 베트남 해군의 중국 불법어선 단속을 방해하는 등의 일방적인 물리적 강압행위를 하고 있다.⁷⁹⁾

2014년 5월 중국은 남사군도 부근에 초대형 심해 석유 시추 장비를 설치하면서 중국과 베트남의 영유권 갈등이 격화되었다. 중국 선박들이 남사군도 분쟁해역에 조업중인 베트남 선박에 대해 물대포 공격과 선체 충돌을 함으로써 베트남은 연안경비대원 12명 부상, 어업감시선 및 조업어선 3척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석유시추 작업 호위를 위해 전투기를 투입하였고, 동년 6월에 중국 해경이 선박 3척을 동원하여 분쟁해역에서 항해중인 베트남 연안경비대 감시선 1척을 포위한 선체 충돌을 시도하였다. 2015년 6월에도 중국 해경은 남사군도 분쟁해역에서 조업중인 베트남 어선 2척을 나포해 긴장이 고조되었다.⁸⁰⁾

한편, 중국은 베트남에 이어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사군도의 황엄도(黃巖島, Mischief Reef)를 1995년 2월에 점령하였고, 어선 대피소란 명목으로 해군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자국의 영토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황엄도는 미국이 1951년부터 1992년까지 수빅만 해군기지와 클라크 공군기지에서 주둔하면서 항공기 사격연습장으로 사용하였을 때, 중국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필리핀에서 철수 한 후 3년도 채 지나기도 전에 중국은 역사적 권원과 관할권을 주장하며 점령한 것이다.

이에 필리핀 해군은 1995년 3월에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을 파괴함으로써 양측 군대가 충돌했다. 1996년 1월에는 필리핀의 카폰 섬 근해에서 중국함정과 필리핀 고속정 간에 약 90여분에 걸쳐 포격전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1997년에 중국은 황엄도에 이어 필리핀이 점유하고 있던 남약도(南鑰島, Loaita Island)과 양신사주(楊信沙洲, Lankiam Cay)를 점령했다⁸¹⁾. 이후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2009년에 필리핀

79) 윤석준, “동남아·서남아·오세아니아의 전략적 딜레마와 해군력 현대화”, 『2013~2014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4), p.250.

80)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5~16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6), p.23.

81) 김정현·박광용, “중국의 해양영토분쟁이 대한민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해양연구논총』, 제44집, (진해 : 해군사관학교, 2013), p.240.

은 영해기선 법안을 제정함과 동시에 황암도(黃岩島, Scarborough Shoal)는 필리핀 정부에 귀속되었다고 발표했다. 2012년 4월에는 필리핀 정찰기들이 루손 섬 서쪽 124마일 해상에 위치한 황암도에서 중국어선 8척이 조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퇴거를 요구함으로써 양측이 장기간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중국은 분쟁을 더욱 이슈화하기 위해 2012년 5월에는 남중국해 분쟁해역 주변에 필리핀 어선의 진입금지를 선포하였다. 필리핀도 이에 대응하여 분쟁 도서에 대해 명칭을 지정하자 중국은 자국의 이 지역 여행 중단과 함께 검역을 강화하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였고 무력행사를 시사하였다.⁸²⁾

남사군도 분쟁의 중요한 의미는 중국이 남중국해의 통제력을 강화하여 중국의 해상교통로와 연안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자원을 확보하는데 있다. 특히 원해로 해군력 투자를 위한 전개기지를 구축함으로써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나. 서사군도 분쟁

1970년 이전에 중국은 서사군도의 동쪽 군도(Amphitrite Group)를 점유하고 있었고, 서쪽 군도(Crescent Group)는 남베트남(당시 월남)이 점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4년 1월 19일부터 20일 양일간에 걸쳐 남베트남이 점령하고 있던 서쪽 군도에서 전투를 벌였다. 이는 중국이 최초로 타국에 대한 해양영토 침공을 시도한 사례이다.⁸³⁾ 중국은 해상전 뿐만 아니라 지상전도 벌였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전투기를 동원하여 엄호하는 가운데 서사군도에 병력을 상륙시켜 서쪽 군도의 5개 소도를 무력으로 점령한 후 현재까지 서사군도 전 도서에 대해 실질적인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다.⁸⁴⁾ 중국은 이 전투에서 승리한 후 베트남 해군이

82) 조선일보, 2012년 5월 11일.

83) 중국은 먼저 베트남 해군이 공격함으로써 전투를 개시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거짓인 것으로 보인다. 전투개시일인 1974년 1월 19일보다 약 3년이 앞선 1971년 7월 7일에 미국의 AP통신에 의하면, 미국의 정찰기가 중국수송선이 과거 수개월에 걸쳐 서사군도의 최대 섬인 영흥도에 선박 정박지와 부두, 50동 이상의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김중두, 『동아시아 해양분쟁』, (서울 : 문영사, 1997), p.116.

84) 한국국방연구원, 세계분쟁 데이터베이스

접근하지 못하도록 서사군도의 섬 중 가장 큰 영흥도(永興島, Woody Island)에 전차를 갖춘 수비대를 배치하고 해군부두와 비행 활주로 등을 건설하는 등 요새화하였다.⁸⁵⁾ 또한 중국은 1974년 1월 이후 서사군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는데, 광둥 지방정부의 영흥도 분소 설치, 영흥도와 하이난도 간 항공노선 설치, 1980년 서사군도 외곽도서에 대한 등대 및 항만시설 설치 등을 들 수 있다.⁸⁶⁾ 최근에 중국은 영흥도에 길이 480m×600m에 달하는 항구를 신설하여 구축함 등 상당수의 함정이 계류할 수 있게 하였고, 대형수송기 및 SU-27 전투기가 필요시 이착륙할 수 있도록 2,600m의 활주로를 신설하였으며, <그림 3-2>와 같이 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하였다.

<그림 3-2> 서사군도의 미사일 발사대



* 출처 : 뉴스타운 중국, 남중국해 파라셀 제도에 미사일 8기 배치 2016년 2월17일

2016년 4월 7일 미국 기관지 성조지는 “중국이 영흥도에 최신예 J-11 선양 전투기 16대를 배치” 했다고 전하면서 중국이 전투기를 배치한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10대가 넘는 전투기를 섬 한곳에 배치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의 실효적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⁸⁷⁾

서사군도 분쟁의 중요한 의미는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 개시라는 측면과 이로

85) 김종두, 앞의 책, p.117.

86) 김태호, 『동아시아 주요 해양분쟁과 중국의 군사력』,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5), p.93.

87) 매일경제, “중, 남중국해 전투기 16대 배치”, 2016년 4월 4일.

인한 분쟁 당사국들의 영유권 주장이 표면화된 점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남중국해의 남사군도와 서사군도 분쟁과 관련하여 중국은 압도적인 해군력을 앞세워 베트남과 필리핀이 점유하고 있던 도서를 무단 점령한 이후 이를 실효적 지배를 공고화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⁸⁸⁾ 반면, 힘의 열세로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ASEAN 국가들은 미국과 다양한 형태로 군사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6월에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상그릴라 대화 시 자유 통항권 등을 이유로 남중국해 분쟁에 미국이 개입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미 상원에서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무력사용을 비난하고 영유권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2013년 1월 필리핀은 남중국해 분쟁 해결을 위해 유엔협약법협약 제7부속서(중재재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중재재판소에 제소하고 재판개시를 위해 중국에 서면 통고를 하였지만 중국은 거절하였다.⁸⁹⁾ 동년 10월에는 필리핀이 중국의 역사적 영유권을 뒤엎는 60개의 고대지도를 공개하였다.

한편, 2013년 이후 미국과 필리핀은 중국에 대항하여 발리카탄 연합 군사훈련⁹⁰⁾을 양적·질적으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2013년 12월에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항모 라오닝함을 감시하는 작전을 수행 중이던 미국의 순양함 카우펜스함에 중국의 도크형 상륙함이 180m까지 접근하여 양국 군함이 충돌 직전의 위기를 초래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태평양에서 지배력을 행사해온 미국 해군과 대양해군으로 부상하는 중국 해군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⁹¹⁾

88) 이장훈, “남중국해의 파고가 거칠어지고 있다,” 『국방저널』, 통권 제436호, (서울 : 국방홍보원, 2010), p.51.

89) 박영길, “필리핀의 중국 상대 남중국해 분쟁 중재재판소 회부문제”, 『독도연구저널』, Vol. 21, (부산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3), p.56.

90) 발리카탄(Balikatan)은 용어상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협력하여”라는 의미로서 필리핀과 미국이 공동으로 군사계획을 수립하고, 전투력을 증강시키며, 군사시설 및 군사정보서비스를 상호 운용하며, 외부 위협에 대처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양국 간의 연합 군사훈련이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은 미국과 키리졸브 및 포이글(독수리) 연합 연습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91) 변창구,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남중국해 분쟁”, 『한국 동북아논총』, 71호, (서울 : 한국동북아 학회, 2014), p.38.

2014년 12월에 중국은 필리핀의 중재안을 수용하지도, 재판절차에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했고 주권에 관한 문제로서 유엔해양법협약의 조정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면서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이를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2015년 10월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필리핀이 제기한 여러 문제들이 재판소의 관할권 하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필리핀이 제기한 이슈는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남해 구단선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유엔해양법협약에 합치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문제, 즉 법의 해석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므로 PCA가 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이다.⁹²⁾

동년 10월 시진핑 주석은 영국방문을 앞두고 “남중국해 제도는 예로부터 중국의 고유땅으로 옛 조상들이 물려준 것이다. 중국의 주권 및 해당 권익을 침해하려는 자를 중국인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⁹³⁾ 라고 단호히 주장한바 있다. 이에 미국은 2015년 10월 27일에 이지스 구축함인 라센함을 남중국해에 중국이 건설해 놓은 인공섬인 미제초(美濟礁, Meiji Reef), 저벽초(渚碧礁, Chu Jade Reef) 인근 해역 12해리까지 근접 항해시켰다. 라센함 항해에는 미 해군 대잠초계기 P-8A와 P-3도 투입됐다. 이어 2015년 11월 8일~9일에는 B-52 전략폭격기 2대를 남중국해 인공섬 주변 상공을 비행시켰고 이에 따라 남중국해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해상뿐 아니라 공중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⁹⁴⁾ 이처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인공섬 근해에 미 군함과 전폭기가 무력시위로 인해 미·중간 갈등이 고조될 개연성이 높아졌다.

2016년 7월 12일, PCA는 남해 구단선 내 자원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중국은 자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근거를 박탈한 이번 판결에 분노하고 남중국해에 군사력 배치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은 또 다시 “남중국해 도서는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 라면서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주권과 해양권익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판결의 영향을 받지

92)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앞의 책(2015~16), pp.26~27.

93) 인민일보, “시진핑, 남중국해 제도는 예로부터 중국의 고유땅”, 2015년 10월 19일.

94) 연합뉴스, 미군 “B-52 폭격기 인공섬 주변 상공 비행”...中 경고에도 비행 지속, 2015년 11월 13일.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및 국방부에서도 PCA 판결에 대해 수용 불가하며 해양주권을 확고히 수호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발 성명을 냈다. 반면에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행보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행동과 외교적 압박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⁹⁵⁾ 이로 인해 미·중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남중국해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필리핀에 재 파병을 추진하고 <그림 3-3>과 같이 5개 기지를 미군이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림 3-3> 미군이 주둔할 필리핀 기지



* 출처 : 동아일보, 2016년 3월 22일

5개기지 중 안토니오 바우티스타 공군기지는 남사군도와 300~400km 떨어진 곳으로 미군이 남중국해의 분쟁지역을 쉽게 정찰하고 긴급 상황에선 재빨리 전투기를 출동시킬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⁹⁶⁾ 이러한 미국과 필리핀의 군사공조 강화에 대응해 중국은 필리핀 해안에서 230km 떨어진 황암도에 활주로를 건설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남중국해 분쟁 일지를 종합하면 <표 3-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95) 연합뉴스, “中 남중국해 영유권 패소…미·중, 新냉전 패권다툼 격랑속으로”, 2016년 7월 12일.

96) 동아일보, “美, 남중국해 인근에 中 견제용 공군기지”, 2016년 3월 22일.

〈표 3-1〉 남중국해 분쟁일지

1980년 11월	중국 공군의 H-6 폭격기, 남사군도 정찰
1984년 10월	중국과학원 남해해양조사국, 남사군도에 대한 종합적 조사 실시
1987년 10월	중국 동해함대 함정, 청도(靑島)에서 남사군도 최남단 중모암사(曾母暗沙, James Shoal)까지 항해
1988년 3월	중국-베트남, 적과초(赤瓜礁, Johnson Reef)에서 무력충돌 발생. 중국 해병대, 남사군도 6개 암초 점령, 주권표지 및 (해군관측소 설치) → 이후 중국은 수년에 걸쳐 화양초와 적과초에 항구적인 군사시설 건설
1989년 3월	중국 해군, 남사군도 최전방본부 설치
1992년 2월	중국, 시사군도 및 남사군도를 포함하는 영해법 공포
1992년 8월	중국, 남사군도 2개 도서 추가 점령
1995년 3월	필리핀, 팡가니방 산호초에 중국 어선대피소 파괴
1998년 7월	중국, 팡가니방 산호초 포함 모든 남사군도 영유권주장
1999년 1월	중국, 3척의 전투함을 미제초(美濟礁, Meiji Reef) 인근에 배치. 필리핀, 중국의 남사군도 긴장행위 자제 촉구한 미국입장 환영.
2000년 1월	중국해군, 사상 최초로 해안에서 500km 떨어진 해역에서 미사일 함정을 동원한 해상훈련 실시
2001년 1월	중국은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했으나 EEZ를 선포하지 않은 동아시아 유일국. 중국은 타국과는 달리 쌍무적 협정체결 더 선호
2002년 11월	중국과 아세안, 남중국해 선언 채택, 협상을 통해 영유권 문제 해결 합의
2009년 3월	중국 외교부 성명, 말련의 남중국해 탄환초(彈丸礁)를 자국 영토라고 한데 대해 중국의 영토임을 재천명
2009년 3월	필리핀, 남사군도와 황암도(黃岩島, Scarborough Shoal)를 영토로 편입시키는 신 법안(영해기선법) 서명
2010년 11월	중국, 남중국해에서 실탄 사격을 포함한 군사훈련 실시
2011년 4월	중국,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해군 훈련 실시
2012년 4월	필 해군, 중국어선 나포 중에 중국군함 2척 접근, 양국 군함대치
2012년 5월	중국, 남중국해에서 상륙훈련, 분쟁해역 주변 필, 어선 진입 금지 선포
2013년 1월	필리핀, 남중국해 분쟁관련 PCA 제소, 미국과 연합훈련 강화
2015년 10월~11월	시진핑 주석, 남중국해는 중국의 고유땅 주장 미국 이지스함 및 초계항공기/폭격기 중국의 남사군도 인공섬 근해 접근
2016년 3월	미국-필리핀, 필리핀 5개기지 미군 배치 합의
2016년 7월	PCA, 남해 구단선 내 자원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 출처 : 육군 군사연구소, 『세계의 지역분쟁 사례집 III』, (대전 : 육군본부, 2012), pp.36-56. 및 관련 자료 참조하여 재정리

2. 동중국해 분쟁

가. 센카쿠 열도(조어도) 분쟁

센카쿠 열도는 분쟁 당사국인 중국, 일본, 및 대만이 각기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중국해 외양의 조그만 도서군이며 각 영유 주장 국가들마다 명칭도 각기 다르다. 즉 중국은 조어도(釣魚島 : Diao-yu Dao), 일본은 침각열도(尖閣列島: Senkaku Islands), 대만은 조어대(釣魚臺 : Tiaoytai) 로 부르고 있다.⁹⁷⁾ 센카쿠 열도(조어도)의 지리적 위치는 <그림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만의 동북방基隆(基隆)으로 부터는 약 190km, 일본의 오키나와로 부터는 서남방 약 350km 떨어진 동중국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도상에서 보면 북위 25도 44분(南小島 남단)에서 25도 56분(黃尾嶼 북단)과 동경 123도 30분(釣魚島 서단)에서 124도 34분(赤尾嶼 동단) 사이에 산포되어 있으며 5개의 조그만 섬과 3개의 암초로 구성되어 있다.⁹⁸⁾

<그림 3-4> 센카쿠 열도(조어도)



* 출처 : 위키백과

주도인 조어도만이 약 4.3km²의 면적을 갖는 섬이며 기타는 거의 모두 1km²도 안되는 작은 섬 또는 암초이다. 이들 섬에는 특별한 자원도 없으나 1970년대 이

97) 이춘근, 앞의 글, p.15.

98) 양희철·김진욱, “조어대(센카쿠열도)의 영유권 분쟁과 당사국간 법리에 관한 연구”, 『Ocean and Polar Research』, vol.36 no.3, (안산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4), p.257.

후 이 군도 부근 해역의 해저에 석유 부존 가능성⁹⁹⁾이 인정되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센카쿠 열도 분쟁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표 3-2>와 같이 1895년 청일 전쟁이후 일본의 영토로 귀속되었다가 1951년 9월 미·일 오키나와 반환협정 시 다시 일본으로 반환되어 일본의 관할 하에 있었으나 중국은 역사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표 3-2> 센카쿠 열도(조어도) 영유권에 관한 중·일 주장¹⁰⁰⁾

구분 시기	관할국	중국 주장	일본 주장
19세기말 까지	중국	- 중국의 고유영토 (역사적 문헌 입증) * 1534년 중국이 처음발견	- 무주지
청일전쟁 당 시	일본	- 1895년 4월 시모노세키 조약 의거 ‘대만 및 부속 도서와澎湖제도 강제할양	- 강제 할양과는 무관. 1895년 1월 오키나와 현에 정식편입
2차대전 당 시	미국	- 중국의 고유영토를 일본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이양	- 대일 강화조약 의거 적법 이양
오키나와 반환협정	일본	- 타국영토의 미·일 간 거래	- 미국관할에서 일본 영토로 복귀

중국은 센카쿠 열도는 기억할 수 없는 오래전부터 고유영토였고 대만이나 북
건설에서 출어하는 중국 어민들의 전초기지였으며 태풍의 피항지이자 어로기에

99) 1974년부터 1980년 사이에는 중국의 지질지광부가 동중국해에서 진동탐사·동력 및 자력 등을 포함한 대량의 지질탐사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1982년과 1989년 사이 15개의 천연가스정을 굴착하였고, 이중 석유가스를 함유한 PingHu(平湖) 구조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탐사결과는 많은 시추정 등에서 석유가스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특히 1982년 PingHu1정(平湖 一井)의 시추공(Discovery Well)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하였고, 1988년에는 PingHu4정(平湖四井) 측정결과 일일 최고 1,200배럴의 석유 생산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이 외에 1985년 PingHu2정(平湖二井) 측정결과는 산업적 가치를 가지는 천연가스가 있음을 발견하는 등, PingHu 구조는 현재 개발 가능한 석유가스전으로 평가받고 있어서 조어도 인근해역에는 약260억 배럴, 동중국해분지의 석유매장 가능성은 약 수백억 배럴까지 아주 낙관적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희철·김진옥, 위의 글, p.259.

100) 이홍표, “조어도 영유권 분쟁과 중·일 관계 : 에너지 안보와 민족주의 측면”, 『STRATEGY 21』, 제15호,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5), p.116.

는 수개월씩 이 섬에서 살았고 중국 대륙의 연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빈빈히 이 섬에서 약초를 채취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본은 무주지에 대한 선점과 함께 청·일 전쟁 승리 후 1895년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여 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이양 받은 이후 실효적으로 이 섬을 관리해오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¹⁰¹⁾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은 2010년 9월부터 양국 간 양립할 수 없는 분쟁으로 격화되고 군사적 충돌의 징조가 보이고 있다.

2010년 9월에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센카쿠 열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을 나포한 이후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이후 중국은 대일본 희토류 수출 중단 및 경제적 제재조치를 취하고, 센카쿠 열도 근해에서 대규모 해상훈련을 실시하였다.¹⁰²⁾ 또한 2012년 4월에 중국의 국가해양국은 해양이 중국의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중요 자원이라고 하면서 조어도 주변 수산자원 이용을 강화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2012년 9월 일본 정부는 센카쿠 열도 5개 섬 가운데 3개의 섬을 소유자로부터 사들여 국유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¹⁰³⁾

일본의 방침에 대해 중국은 즉각 반발하면서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17곳에 영해기선을 선포해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공식화하고 이에 대한 영해도를 UN에 제출하여 위기는 한층 고조되었다. 중국은 이후 대규모 어선단과 이를 통제하기 위한 16척의 어선감시선을 투입하는 등 일본의 실효적 지배를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중국의 행위에 대응하여 일본 노다 총리는 2012년 7월 15일 “필요에 따라 센카쿠 열도에 자위대를 활용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에 원자바오 중국총리는 “조어도가 중국의 신성한 고유 영토임을 전 세계는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주권과 영토에 관한 문제에서는 굳건한 자세로 조

101) 김정현·박광용, 앞의 글, p.249.

102) 중일 양국은 지난 2010년 9월에 일본의 해상보안청이 다오위다오 근해에서 중국어선을 불법조업 혐의로 선장을 구속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중국의 대항책은 희토류 대일 수출 금지와 더불어 일본으로의 중국 관광객 출국을 금지시키는 것이었다. 결국 일본은 굴복하고 중국인 선장을 석방하였다.

103) 2012년 9월 10일, 일본정부는 센카쿠열도 무인도 5개 섬 가운데 3개의 섬(기타코지마(北小島), 미나미코지마(南小島), 그리고 우오쓰리시마(漁釣島))를 소유자로부터 300억엔에 사들이는 국유화 방침을 공식 결정하였다.

금도 양보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¹⁰⁴⁾ 특히 2016년 6월 9일 중국 해군 함정이 2시간여 동안 센카쿠 열도 접속수역 안에서 항행한 뒤 빠져나갔다. 그동안 센카쿠 열도 영해나 접속주변에는 중국의 해경선이 수차례 진입한 적이 있지만 군함이 항행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센카쿠 열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로 영토와 영해를 단호히 지킬 것” 이라고 하였고, 중국 국방부는 “중국의 고유 영토로서 중국 군함이 본국 관할 해역에서 항행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다” 라고 밝혔다.¹⁰⁵⁾ 중·일간 센카쿠 열도(조어도) 관련 주요 분쟁일지를 정리하면 <표 3-3>과 같다.

<표 3-3> 중·일 간 센카쿠 열도(조어도) 관련 주요 분쟁일지

1972년 3월	중국, 유엔 해저위원회대표 발언 통해 조어도 영유권 처음 주장
1996년 7월	일본 극우파 청년 일단 등대설치, 일본의 영유권 주장
1996년 10월	중국, 동해역 북서쪽에서 군사훈련 실시
2000년 5월	일본 우익, 센카쿠 열도에 상륙하여 일본의 영유권 주장
2009년 2월	중국외교부, 조어도에 일본 순시선 파견 공식 항의제기
2010년 7월	중국, 해군 함정(2척) 同 해역 인근에서 해상훈련
2010년 9월	일본, 인근 해상에서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충돌한 중국 어선 나포 중국의 가스전 독자개발에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 표명
2010년 12월	중국, 일본 지방의회 의원의 다오위다오에 상륙에 강력 항의
2011년 3월	중·일간 무력 대치(중, 정찰기/헬기/어업감시선↔일, F-15/구축함/순시선)
2012년 7월	일 정부, 필요에 따라 센카쿠 열도에 자위대 활용토록 지시
2012년 9월 ~10월	일본, 민간인 소유 센카쿠 3개 섬 매입 공포, 중·일 대규모 순시선 대치
2014년 7월	센카쿠 열도 주변지역 유사시 미·일 동맹의 구체적인 대응방침을 규정한 ‘가이드라인 2015’ 를 책정 발표
2016년 6월	중국 군함, 최초로 센카쿠 열도 접속수역 진입 후 이탈

* 출처 : 육군 군사연구소, 앞의 책, pp.36-56 및 관련 자료 참조하여 재정리

104) 조선일보, 2012년 9월 21일.

105) 중앙일보, “중국 군함 첫 센카쿠 진입...”, 2016년 6월 9일

다. 동중국해 EEZ 및 대륙붕 경계선 획정 문제

중국은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EEZ 및 대륙붕 경계선 획정문제로도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은 양국의 해안선으로부터 따져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주장한다. 반면, 중국은 육지자연연장 원칙에 입각하여 대륙붕이 끝나는 지점을 경계선으로 주장한다. 중·일 간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선 획정문제는 1968년에 유엔의 아시아 연안지역 광물자원 공동개발조정위원회(CCOP)가 동중국해 일대의 해저조사를 실시해 석유매장 가능성을 확인한 이후부터 촉발되기 시작했다.¹⁰⁶⁾

동중국해 가스유전은 <그림 3-5>와 같이 중국 상하이에서 남동쪽으로 450km,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북서쪽으로 400km 떨어진 이곳은 춘샤오, 텐와이텐, 뚤차오, 룡징 등이 가스전 군을 이루고 있다.

<그림 3-5> 중·일 간 동중국해 가스전 및 EEZ 분쟁구역



* 출처 : 연합뉴스, “미·일-중, ARF서 '남중국해 인공섬' 놓고 연일 격돌”, 2015년 8월 7일

106) 손기섭, “일본과 인접국 간의 해양자원 확보 및 영토분쟁,” 『21세기 해양갈등과 한국의 해양전략』,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 p.169.

춘샤오 가스전 전체 추정매장량은 2,460억^m로, 2003년도부터 중·일 양국은 동중국해의 석유를 비롯한 해저자원의 부존 매장량과 경제성 및 분포도를 면밀하게 조사해왔다. 중국은 2004년도 12월 중·일 양국의 동중국해 중간수역에 12개의 천연가스전 광구를 일방적으로 설정했다. 일본 정부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 중 3개 광구는 일본의 EEZ으로 완전히 들어와 있고, 9개는 중일 경계수역에 걸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본은 해역의 폭이 400해리에 못 미치는 동중국해에 중간선을 그어 EEZ을 설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대륙붕이 뻗어있는 오키나와 해구에까지 모두 자국 EEZ이라고 맞섰다.

2005년 4월에 중·일간 국장급 협의회에서 일본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EEZ의 중간선으로 하여 ‘잠재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천명한 바 있다. 일본은 2005년 7월에 들어 자국기업에 중국과 분쟁중인 동중국해에서의 가스전 시굴권을 정식으로 허가하였는데, 일본 정부가 시험 굴착의 인가를 해준 곳은 ‘중·일 경계선’에 가까운 일본 측의 3개 광구로써 그 중 2개 지역은 중국이 개발 중에 있는 춘샤오, 뚤차오의 가스지대와 경계선을 마주하고 있다.¹⁰⁷⁾

이에 중국은 일본이 민간업체에 원유 및 가스 탐사권을 부여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2005년 7월부터 가스전에서 천연가스 생산과 더불어 이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폭격기를 2007년 9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43차례 출동시켰다. 일본도 전투기를 해당구역에 8차례 긴급 대응 발진시켜서 긴장이 고조되었다. 2008년 6월에 중국은 일본과 동중국해 가스전을 공동개발을 합의하였으나 또다시 단독으로 개발을 진행하였고, 2010년 9월에는 일본 순시선이 중국어선을 나포하자 가스전 개발에 관한 조약 체결 교섭을 일방적으로 연기하였다. 일본은 중국에 개발중지와 대상해역의 탐사정보 제공을 계속 요구해왔다.¹⁰⁸⁾ 반면 중국은 개발을 중지할 이유가 없다고 거부하였다.

2012년 4월에는 중국 국가해양국 소속 항공기가 동중국해 EEZ의 경계선 인근을 순찰하던 일본의 구축함에 50m까지 다가가 근접 비행하는 등 위협을 주

107) 정갑용, 『중·일간 동중국해 대륙붕 분쟁과 우리의 정책방향』, (부산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p.18.

108) 김정현·박광용, 앞의 글, p.253.

었다.¹⁰⁹⁾ 2015년 7월, 일본은 중국의 가스전 사진을 공개하면서 중국의 일방적인 자원개발을 항의하였고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중국의 개발동향이 확인될 때마다 개발중지를 강력히 요구할 것 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관할해역에서 활동은 정당하고 합법적이라며 반발하고 영토주권을 강력히 수호할 것” 이라고 하였다.¹¹⁰⁾ 이와 같이 중국은 동중국해 EEZ내에서 독자적으로 가스전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는 가운데 실효적 지배를 공고화시키기 위해 군사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동중국해의 지리적, 지형학적 및 국제정치적 환경은 매우 복잡하여 국제법상의 원칙이나 기준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EEZ 및 대륙붕 경계선 획정문제도 현재와 같은 애매모호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중·일간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제2절 한반도 주변의 해양안보 위협

1. 독도 영유권

독도는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이며¹¹¹⁾, 위치는 <그림 3-6>과 같이 울릉도로 부터 동남방 약 87.4km, 측면으로 부터 216.8km, 일본의 오키섬으로 부터 북서방 약 157.5km에 위치하고 있다. 독도는 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4초에 있고 서도는 북위 37도 14분 30.6초, 동경 131도 51분 54.6초에 있으며 풍부한 어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매우

109) 연합뉴스, 2012년 4월 13일.

110)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앞의 책(2015~16), p.44.

111) 1947년 8월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산악회 주최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1차 학술조사가 실시되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로 행정구역이 정해졌다. 그 이후 2000년 3월 20일, 경상북도 울릉군 의회는 독도의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켜, 독도의 행정구역이 2000년 4월 1일부터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에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변경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성남 : 한국학중앙연구원)

중요한 섬이다. 독도는 서기 512년에 우산국을 신라가 정복한 이래 순수한 우리말로 독섬, 돌섬, 가지섬도 이라 했고 자산도, 우산도, 삼봉도 등으로도 부르면서 한국의 고유영토가 되어왔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 어떤 왕조나 정부에 의해 방치되거나 포기한 적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한국영토의 일부로 지배, 관리되어 왔다는 사실은 수많은 문헌에 의하여 입증되었다. 이에 일본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논박할 만한 역사적 근거도 없이 오직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¹¹²⁾

<그림 3-6> 독도의 지리적 위치



* 출처 : 국토교통부, 독도지리넷.

그러나, 『삼국사기』, 『만기요람』, 『세종실록지리지』, 『성종실록』 과 1667년 일본에서 발행된 역사서 『은주시청합기』¹¹³⁾, 1896년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112) 최병학, “해양영토 분쟁과 독도 영유권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2호, (서울 : 한국지방정부학회), 2010, p.237.

113) 일본 운주(雲州) 지방 번사였던 사이토 호센(齊藤豊仙)이 편찬한 것으로, 일본의 은주(隱州)를 관찰하고 들은 내용을 기록한 보고서로 일본인에 의해 편찬된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기록을 담은 최초의 일본문헌이다. 권오엽, 『독도논문 번역선 2』, (서울 : 다다미디어, 2005), p.167.

『조선국교시말내탐서』¹¹⁴⁾등에는 엄연한 한국영토로 기록되어 있어 일본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임이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조선시대의 공도정책이 사실상 영유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일본의 주장은 마치 무인도는 한국의 섬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은 주장이다. 무인도라고 하여 한국의 섬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유인도를 정책적으로 무인도화 하였다고 하여 한국의 섬이 아니라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¹¹⁵⁾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를 전혀 분별하지 못해 울릉도를 이소다케시마, 독도를 마쓰시마로 부르다가 때로는 이를 뒤바꾸어 울릉도를 마쓰시마, 독도를 이소다케시마로 혼동하다가 독도를 다케시마로 확정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해 일본이 논란을 일으킨 발단은 일제의 침략사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즉, 일본이 한반도 침략에 혈안이 된 시기인 1905년 2월 22일 ‘도고현 고시 제40호’ 라는 것을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불법 편입 조치하였던 것이다.¹¹⁶⁾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하자 연합국에 일본이 강제로 침탈한 침략영토에 대한 처리가 단행되었는데 1946년 1월 29일 ‘SCALPAN 677호’ (연합군 최고사령관 지령, Supreme Command Allied Power Instruction) 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일본의 범위로부터 제외 되었다. 그러나 1951년 9월 8일 연합국과 일본의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에서는 일본의 영토포기 지역에 한국의 도서들을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라고만 명시하고 독도를 직접 명시하지 않음으로

114) 조선에 체류한 일본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가 등에 의한 복명보고이다. 일본정부는 1869년 3명의 외무성 관원을 조선에 보내 조선의 내부사정을 알아보도록 지시하여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의 부속으로 되어있는지 전말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870년 4월, 조선에 파견된 외무성 관원에 의해 이 보고서가 완성되었다. 광진오, “일본의 독도 인식을 중심으로”, 『독도와 한·일 관계』, (서울 : 지식산업사, 2010), p.56.

115) 김병렬, “독도문제와 한·일관계”, 『군사』, 제56호,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p.18. ; 2005년 1월 14일 일본 시마네현 의원들은 고시 제40호를 신문에 기사화 한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고, 2월 23일 현 의회에 상정해 3월 16일 가결했다. 다케시마의 날은 일본 시마네현에서 정한 것이지만 이후 일본 전 지역에서는 해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시위를 해 오고 있다.

116) 배진수,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영토 분쟁 : 배경 및 현황”, 『Strategy 21』, 12호,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3), p.225.

써 일본에게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¹¹⁷⁾ 1952년 1월 18일 우리정부가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¹¹⁸⁾을 선포하였는데, 그 범위 안에 독도와 그 영해가 포함되었다.

이에 일본이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의 영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외교문서를 우리정부에 보내오면서 독도 영유권 분쟁이 시작되었다.¹¹⁹⁾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도전 행위는 1953년 5~6월에 독도에 무단 상륙하여 위령비를 파괴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1954년 8월과 9월에 일본 순시선과 독도 의용수비대의 총격전, 1959년 9월 극우단체의 독도 상륙기도 등이 발생하였다. 그러다가 1965년 한·일 어업협정의 결과 ‘평화선’의 일본에 대한 적용이 배제됨으로서 독도의 12마일 영해 밖은 공해가 되었고, 독도는 한국 해양경찰에서 경비하였다. 일본은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으나, 외상의 연례적인 의회 답변에서 관례적으로 되풀이 되는 주장이었고, 일본 순시선이 한차례 독도 영해 밖을 돌고 가는 정도였다.¹²⁰⁾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극명한 대립으로 나타난 것은 연안으로부터 200해리를 타국이 관할할 수 없는 EEZ를 제도화한 유엔해양법협약이다. 이로 인해 양국간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1995년 12월 한국이 독도에 접안시설을 착공함에 따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수위가 높아지게 되었으며, 1996년 9월 총선을 앞둔 일본 자민당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총선의 공약까지 추진하게 되었다. 1997년 6월 한국이 ‘21세기 해양수산 비전’과 그 일환으로 제시된 독도개발 계획을 발표하자 일본 외무성은 처음으로

117) 동북아 역사재단, 『대일 강화조약 자료집』, (서울 : 동북아 역사재단, 2006). pp.24~29.

118) 평화선(平和線), 이승만 라인, Lee Line이라고 하며, 대한민국 영토를 규정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은 남쪽으로 제주도과 마라도를, 동쪽으로는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선(線)을 그었으며 1965년 한일조약 체결로 사실상 해체되었다.

119) 독도에 대한 한·일간 최초 논쟁은 1693년(조선 숙종 13년) 독도에서 동래수군인 안용복이 독도근해에서 조업 중이던 일본어선을 강제 퇴거조치하면서 시작되었다. 안용복은 일본인의 울릉도 출입금지령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일본의 울릉근해에서 불법어로와 별목을 자행하자, 1881년 일본으로 건너가 막부인 도쿠가와로부터 “앞으로 독도근해에서 조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였다.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1996), pp.27~42.

120) 신용하, 『한·일간 독도 영유권 논쟁의 역사와 그 쟁점』, 2002년, (사) 4월회·독도학회 공동 심포지엄 발제문, p.26.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와 공사 중단을 정식으로 요구하였다. 이후 동년 6월 8일, 9일, 15일에 걸쳐 일본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영해 직선기선’을 대한민국 어선 4척이 침범했다는 이유로 나포하였다가 풀어주는 등 사태가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1998년 1월 7일,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공해상에 표류 중인 선박을 견인하기 위해 한국 해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독도 주변 영해를 침범하였다. 동년 1월 20일, 일본은 한국 어선을 다시 나포하였다.¹²¹⁾ 이러한 갈등의 연속은 결국 한·일 어업협정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 파기를 가져왔는데 우여곡절 끝에 1999년 1월 ‘新 한·일 어업협정’을 공식 체결하였다. 이후 2005년 3월 일본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다.¹²²⁾

2006년 4월에는 일본 해상보안청의 독도 근해 수로조사 통보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담화까지 발표하였으며, 이에 고이즈미 총리가 강력 반발하는 등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2012년 4월 일본 오사마 관방장관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을 되풀이 하였고, 동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독도를 방문하자 일본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까지 보류하였고 일본 극우파들은 한국영사관에 벽돌테러를 자행하였다.

특히 일본은 2015년 7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방위백서¹²³⁾를 냈는데 이는 2005년 고이즈미 내각때 처음으로 집어넣은 뒤 11년 연속이다.¹²⁴⁾ 2016년 4월에는 일본 내각관방에서 시마네현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독도 관련 자료를 소개하는 ‘다케시마 자료 포털 사이트’ 영문판을 개설하였다.¹²⁵⁾ 아울러 일본은 방위

121) 배진수, 앞의 글, p.230.

122) 그 내용을 보면 현의 주도하에 독도 영토권 조기 확립과 국민여론 계발을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2월 22일 제정한다는 것이다. 송영심, 『일본의 역사왜곡 21가지』, (서울 : 산호와 진주, 2005), p.9.

123) 일본은 방위백서에 1978년부터 “일본 고유영토인 독도 문제가 여전히 미결상태로 남아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부터는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적으며 역시 주장을 계속했다. 2015년 방위백서에는 일본 방공식별구역 지도에 독도가 다케시마 라는 표기와 함께 일본 땅으로 소개됐다. 독도를 한국 방공식별구역 범위에 넣으면서도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일본 영공이라고 기술했다. 동아닷컴, “일본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 2015년 7월 21일.

124) 조선일보, “일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 11년째 도발”, 2015년, 7월 22일.

125) 아시아투데이, “일본 또다시 독도는 일본땅...영문사이트도 개설”, 2016년 4월 15일

백서, 외교청서¹²⁶⁾ 등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초·중·고 역사 교과서¹²⁷⁾에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해 영토야욕을 끊임없이 불태우는 이유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해양영유권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으로 찾는 것 외에도 독도가 지니는 가치 때문이다. 독도가 지니고 있는 전략적 가치는 지정학적, 경제적, 군사적 가치 측면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지정학적인 가치이다. 독도를 섬으로 볼 때 독도를 기점으로 약 2만 km² 에 해당하는 해양영토를 획득할 수 있다. 독도는 동해의 한가운데 위치한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해양경계획정 기준으로 EEZ를 선언시 경상북도 크기의 해양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¹²⁸⁾

둘째는 어자원과 에너지원 등 경제적 가치이다. 독도 주변은 풍부한 어자원의 보고로 꼽힌다. 또 독도부근에는 2007년 11월 향후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¹²⁹⁾ 6억톤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매장량은

126) 일본은 2012년 외교청서에 이어 2016년 외교청서에도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해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 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일본 외교청서에서 또 “독도는 일본 땅” 주장, 2016년 4월 15일

127) 일본은 4년마다 역사 교과서의 검증결과를 발표해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데,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기술한 사례를 보면 2010년 3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5종 모두 기술, 2011년 3월 중학교 사회 교과서 17종 가운데 14종 기술, 2012년 3월 고교 사회 교과서 39종 가운데 21종기술, 이후 수차례 왜곡 작업 후 2016년 3월에는 고교 사회 교과서 35종 가운데 27종(77.1%)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기술하였다. 연합뉴스, “일본 교과서 검정 논란 일지”, 2016년 3월 18일

128) 독도가 암석이나 도서이냐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인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에 의해 배타적 경제수역기점 가능여부는 법의 애매 모호성 때문에 논란이 많다. 그러나 일본은 1980년대에 파도가 치면 잠겨 버리는 1.5m²의 면적의 조그만 암초에 불과한 오키노 도리시마에 시멘트 및 철제 블록 공사를 하여 조그만 인공섬으로 만들었다. 일본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인정해주지도 않는데 여전히 오키노 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을 기점으로 삼고 있다. 독도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서로 동도와 서도라는 2개의 큰섬과 주변 89개의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약 5만 7천여 평(18만 7천453m²)에 달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오키노 도리시마 보다 훨씬 더 큰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으로 할 경우, 경상북도 크기의 해양영토를 얻게 된다. 경북매일, 2006년 5월 3일.

세계 다섯번째로 총 252조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셋째는 군사적 가치이다. 일본은 구한말 잠재 적국인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해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일찍이 잘 알고 있었다. 일본은 러·일 전쟁 시 러시아 함대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독도에 망루를 세워 전초기지로 삼았다.

이러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야욕에 대해 각종 역사적 자료와 지도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우리정부는 독도문제에 관해 조용한 외교가 최선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측의 시비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¹³⁰⁾ 지금까지 한·일 양국의 독도 영유권 쟁점을 정리한 <표 3-4>를 보면 독도는 어느 면에서도 한국의 영토임이 명백하지만 일본은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보다 구체화하여 행동화 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일 간의 해양분쟁이 더욱 첨예화되어 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의 기습적인 독도 점령의 가능성과 일방적인 EEZ의 재 선포 등을 배제할 수가 없다.¹³¹⁾

129) 하이드레이트는 바닷속 600~1,600m 깊이에서 메탄 성분은 수분이 붙은 물질, 액화된 가스가 다시 고체화된 상태로 이 물질이 분포하는 해저에는 천연가스, 석유가 순서대로 매장돼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며, 하이드레이트는 그 자체적으로 훌륭한 광물자원이지만, 석유가 매장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지시자원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다. 경향신문, 2010년 2월 18일.

130) 이와 관련하여 우리측 입장의 근거는 첫째, 지정학적 근거에서 보면, 우리 영토인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49해리인데, 일본 오키섬에서는 이 거리의 약 2배에 가까운 86해리이다. 따라서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에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역사적 근거를 보면 ① 독도는 신라시대에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을 형성하였으며, 우산국은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신라에 귀순하여 왔다. 그 이후 계속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관리하에 있다. ② 일본이 1905년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님을 실증하는 것이다. 셋째, 국제법상의 근거를 보면, ‘포츠담선언 과 ‘카이로선언’은 폭력과 강요에 의해 취득한 모든 영토를 돌려준다는 구절이 있으며,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통해 카이로 선언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선언하였으므로, 폭력과 강요에 의해 빼앗겼던 독도를 일본은 당연히 포기해야 한다. 당시 일본의 폭력성을 증명하는 대표적 예가 ‘고종강제 퇴위’ 사건이다. 일본은 1905년 그들의 강요로 체결된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다. 이에 대항하여 고종황제가 국가의 자주권회복을 위해 헤이그로 밀사를 파견한자 일본은 이를 빌미로 궁궐밖에 대포를 배치한 채 고종황제를 위협하여 강제 퇴위시켰다. 김강녕, “동북아의 해양분쟁과 한국의 안보” 『군사논단』, 제29호, (서울 : 한국군사학회, 2001), p.160.

<표 3-4> 독도 영유권 관련 한·일간 주요 쟁점사항

구분	한국주장	일본주장
역사적 문헌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국사기』, 『만기요람』, 『세종실록지리지』 등에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기록 - 일본 역사서 『은주시청합기』, 1896년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조선국교시말내탐서』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 	1905년 시네마현 고시40호에 독도를 다케시마(竹島)현에 공식 편입 조치로 일본의 고유영토임
국가의 표시	국가 행위	국내적인 일개 지방관청 고시에 불과
	통고 의무	비밀리 진행, 통고 없었음.
무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주지가 아님, 한국의 고유영토 - 일제 강점기에 편입조치는 일본 영토가 아님을 반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주지가 아님, 일본의 고유영토 - 자국 고유영토의 편입조치
선점의 합법성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당한 시기이므로 무효이고, 15세기부터 실효적 지배를 하였음	시네마현 고시를 1906년 9월에 대한제국에 통보
실효적 지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한국 식민지 과정에서 이루어진 영토 탈취행위 - 당시한국은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로 항의가 불가한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입조치 이후 독도 실제조사 및 어로면허 발급 - 국제법상 정당한 경영, 이에 대한 한국측 항의 없었음
기 타	연합국은 대일본 강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로 1947~1950년에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서 독도는 한국 영토로 판정	1951년 연합국의 『대일본 강화조약』에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권리·권원을 포기하는 도서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합국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

* 출처 : 배진수, 앞의 글(동아시아 지역의 해양영토 분쟁 배경 및 현황), p.227 참조하여 요약 및 재정리

131) 최병학, 앞의글, p.237.

2. 이어도 관할권

이어도는 <그림 3-7>과 같이 지리적으로 마라도로부터 약 149km, 중국의 통다오로부터 약 247km 떨어진 지점에 위치¹³²⁾하고 있다.

<그림 3-7> 한·중 주장 EEZ 및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 출처 : 동아일보, 한-중, 이어도 놓고 ‘EEZ 신경전’, 2011년 7월 28일

기준수면에서 4.6m 아래 있는 수중 암초이며, 수심 40m를 기준으로 할 때 남북으로 약 600m, 동서로 약 750m에 이르는 이어도는 1900년 영국 상선인 6,000톤급의 소코트라(Socotra)호가 일본에서 중국 상해로 향해하다 이 암초에 의해 배 밑바닥에 손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영국 해군본부에 보고를 하였다. 이 보고를 접한 영국 해군본부는 이듬해인 1901년 해군 측량선인 워터위치(Water Witch)호를 파견하여 암초의 위치와 수심(당시 수심 5.5m)을 확인하고 최초의 손상 입은 선박의 이름을 따 소코트라암(Socotra Rock)이라고 국제적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0년 12월 중앙지명위원회가 지금의 이어도(Ieodo)로 결정·고시하여 사용하고 있다.¹³³⁾

132) 이어도 해역은 우리나라로 복상하는 태풍의 길목이어서 해양기상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며, 연간 수십만 척의 선박이 통항하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이다. 이어도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김영구, 『이어도 문제의 해양법적 해결방법』, (서울 : 동북아역사재단, 2008).

133) 심재설, “해양과학의 보고, 이어도”, 『이어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 국회 정책 토론회 발표 논문집, 2007. pp.1~2,

여기서 수중암초란 섬이나 암석에도 해당하지 않고, 썰물 때는 노출되나 밀물 때는 물에 잠기는 간조 노출지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법적 효과도 지니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어도의 가장 높은 지형을 이루고 있는 정상부분은 화성쇄설류(화쇄류 : pyroclastic flow)에 의해 운반 퇴적된 용회암층이 기존의 퇴적층을 피복한 후 풍화 침식에 의해 삭박되고 남은 잔류지형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이어도의 화산 응회암층 지질구조는 180만년전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제주 본섬의 특 화산의 하나인 송악산과 맥을 같이한다. 이어도는 대륙이 침강하거나 융기하여 형성된 육도가 아닌 제주도와 똑같은 양도인 것이다.¹³⁴⁾ 따라서 이어도 자체에 대한 영유권 문제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과 중국의 바다 폭이 400해리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이어도가 한국과 중국의 영토로부터 모두 200해리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

이어도 관할권 분쟁이 구체화 된 배경을 살펴보면 1995년부터 한국이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자 중국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이어도 부근해역을 집중 탐사하고 2005년에는 이어도 부근 상공에서 다수의 순회감시 비행을 실시한바 있다.¹³⁵⁾ 2006년 후진타오 주석이 ‘해양대국’을 선언한 이후 그동안 간헐적으로 주장해오던 이어도 관할권 주장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2007년 12월, 중국 국가해양국 산하기구 웹사이트인 해양신식망(海洋信息網)은 “쑤엔자오(蘇巖礁)는 동중국해에 발달한 중국 대륙붕의 일부분으로 중국의 200해리 EEZ 내에 있는 중국영토” 라고 본격적으로 관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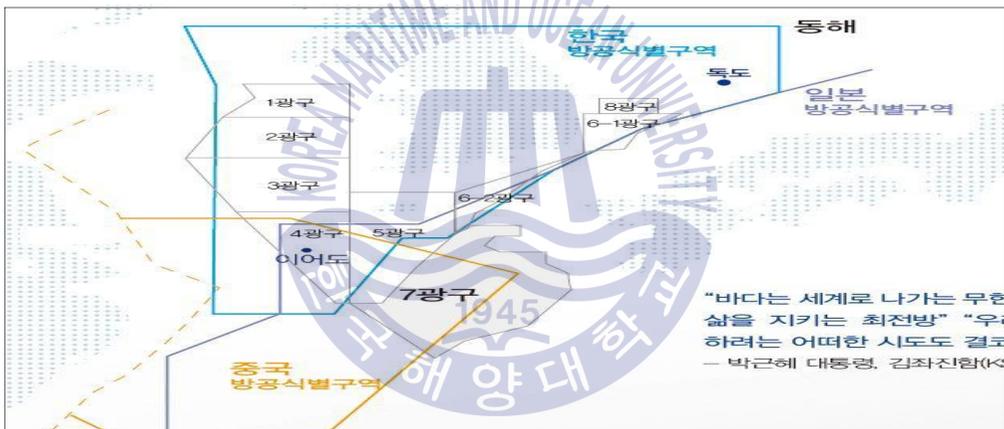
2011년 중국은 해상 관광선 3척을 이어도에 보내 마치 중국인들이 자기나라 바다를 관광하는 것처럼 해서 이어도 수역의 국제분쟁 지역화를 시도했다. 이어 2012년 3월에 중국 국가해양국의 류츠구이 국장은 관영 신화통신에서 “쑤엔자오가 중국의 전체 관할해역에 들어 있다.” 라고 주장의 수위를 한층 강화하

134) 송성대, “한·중 간 이어도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대한지리학회지』, 제45권 제3호, (서울 : 대한지리학회, 2010), p.417.

135) 고봉준, “독도·이어도 해양영토 분쟁과 한국의 복합대응”, 『한국 정치연구』, 제22집 제1호, (서울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3), p. 201. ; 중국 정찰기의 이어도 출현 횟수는 2009년 7회, 2010년 10회, 2011년 27회, 2012년 36회, 2013년 40회, 2014년 38회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이어도 넘보는 중국.... 정찰기 출현 6년새 5배 증가”, 2015년 9월 15일.

였다. 이어도 주변해역이 동북아 안보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건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다. <그림 3-8>과 같이 2013년 11월 23일 중국은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동중국해 지역에 대해 방공식별구역(ADIZ :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선포하였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구역은 동중국해 분쟁도서인 센카쿠열도 주변공역과 우리나라 제주남방 이어도 해역을 포함하고 있다.¹³⁶⁾ 중국의 일방적인 CADIZ 선포에 미국·일본·한국은 강력히 반발하며 CADIZ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표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는 2013년 12월 8일 거제도 남쪽의 흥도와 제주도 남방의 이어도까지 확대된 새로운 KADIZ를 선포 하였다.¹³⁷⁾

<그림 3-8> 한·중·일 방공식별구역



* 출처 :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의 걸어온 길, 함께 갈길』, (대전 : 해군본부, 2014), p.57.

기본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은 각국이 영공방위를 위해 영공외곽인 공해 상공의 미식별 항공기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목적으로 설정한 공중작전구역으로 영공과는 달리 주권을 행사하거나 국제법에 근거하지 않지만 자국의 안보 위협시 군

136) 최근 국내외 언론은 중국은 동중국해에 이어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은 필리핀과 베트남 등이 이미 선포한 EEZ와 일부 겹칠 것으로 예상돼 지역 내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된다. 서울신문, 中,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준비”, 2016년 6월 2일 등 다수 언론 보도

137)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의 걸어온 길, 함께 갈길』, (대전 : 해군본부, 2014), p.39.

사적 행동을 펼치는 군사 작전구역이므로 방공 식별구역이 중복될 경우 군사적 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¹³⁸⁾ 중국의 CADIZ 선포와 우리나라의 KADIZ 확대 조치로 이어도 주변 해역이 한·중·일 3국의 방공 식별구역에 의해 모두 중복됨을 감안할 때, 동 해역에서 한·중·일 3국간의 분쟁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중국 입장에서 CADIZ 설정은 중·장기적으로 이어도 관할권 문제뿐 아니라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에서도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큰 틀에서 볼 때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에 대한 반 접근 지역거부 전략의 일환이다.¹³⁹⁾

이와 같은 한·중 간 이어도에 대한 상이한 인식과 접근을 객관적 시각에서 살펴보면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어도 문제는 아직까지 국가가 공식적으로 갈등의 핵심 주체로 등장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한·중 양국 정부는 모두 이어도 이슈에 대해 당사자 간 협상이슈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¹⁴⁰⁾ 중국이 주장하는 EEZ 획정 원칙인 형태의 원칙이나 한국이 주장하는 중간선은 양국 정부의 기본 입장인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상대국 정부에 대해 이를 공식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하지는

138) 중국의 ADIZ 설정에서 야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해양 구역이 센카쿠 열도와 그 영공을 포함하는 여부에 있다. 이는 중국이 ADIZ 설정 성명의 내용이 이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 센카쿠 열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일본에게는 사실상의 주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만, 중국의 ADIZ 설정이 비록 센카쿠 열도를 포함하는 형태로 표기되었으나, 사실 ADIZ 설정 성명에 내재된 의도와 중국 외교부의 태도로 보건데, 센카쿠 열도의 영공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중국은 2012년도에 센카쿠 열도와 그 부속도서에 대한 영해기점과 영해 범위를 선포하고 유엔해양법협약 제16조에 근거하여 관련 해도를 UN에 기탁하였다는 점에서, 센카쿠 열도와 그 부속도서의 영공을 ADIZ의 공역 범주에서 제외하여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바 있다. 양희철, “중국 ADIZ의 국제법적 해석과 동북아 안보에서의 함의”, 『국제법 학회 논총』, 제59권 4호, (서울 : 대한국제법학회, 2014), pp.185~186.

139) 정철호, “중 CADIZ 설정과 한국의 KADIZ 확대에 따른 과제”, 『정세와 정책』, 통권 215호, (서울 : 세종연구소, 2014), p.1~7.

140)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1.9~11) 때, 이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는 ‘한·중 공동언론 발표문’을 통해 “한·중 양측은 양국 간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양국관계의 장기적, 안정적 발전과 해양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인식하고, 해양경계획정 관련 협상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세계일보, 2012년 1월 10일.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중 양국의 학계가 각자의 원칙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이에 민간 부문이 동조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어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양경계 획정 이슈이기 때문에 갈등 주체 간의 양립 불가능한 이슈는 아니다. 주지하듯이, 이어도는 수중 암초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양법적으로 경계획정의 결정적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가간 합의를 통해 이어도 주변수역의 해양경계가 획정될 수 있다. 이어도 이슈가 양립 불가능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협상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국가 존립의 토대인 영토를 둘러싼 분쟁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지면서 마치 합의와 타협이 영토주권의 포기인 인식되면서 양립 불가능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갈등의 첨예화에는 기본적으로 상대국의 의도에 대한 불신과 같은 인식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⁴¹⁾

셋째, 이어도 문제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및 국익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 해결이 쉽지 않다. 특히 서해(동중국해)는 한·중 양국의 해상교통로로, 양국 모두 이 해상교통로를 통해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다. 이어도 문제가 국가 간 본격적인 갈등 이슈로 부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면, 현재로서는 잠재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지만 중국 민족주의의 발흥이 이어도까지 확장될 경우 센카쿠 열도 분쟁과 같은 심각한 수준으로 이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극우 성향의 개인이나 단체의 해상시위, 점거 등으로 인한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 및 그 과정에서 양국 단속 선박간의 우발적인 충돌을 상정할 수도 있다. 또한 이상과 같은 충돌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악화될 경우 양국 해양경찰들 간의 해상 충돌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¹⁴²⁾ 따라서 중국의 군사적·외교적 전략을 고려해 볼 때 언제라도 이어도 관할권 문제는 표면화 될 소지가 다분한 실정이며 더 나아가 중국 민족주의 성향이 발효된다면 극단적인 무력충돌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141) 이남주·배기찬, “동아시아공동체 추진과 민족주의 극복방안,” 동북아역사재단 편,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의 현황과 전망』, (서울 : 동북아역사재단, 2009), p.438.

142) 고정민, “이어도 분쟁의 가능성과 대응방안 : 중국의 민족주의적 접근을 중심으로”, 『국제문제연구』, Vol.14 No.2, (서울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 2014), p.22.

3. 한국과 주변국간 대륙붕 및 EEZ 경계획정

한반도의 동해와 서해지역은 <그림 3-9>와 같이 일본 및 중국과 거리가 400해리가 못되기 때문에 200해리 외측한계로 되어 있는 EEZ 경계선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3-9> 우리나라 대륙붕 수역



* 출처 : 연합뉴스, 2012년 7월 5일

대륙붕 문제에 있어서 먼저 한·중간에는 앞의 이어도 관할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 공식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없으나, 한국과 북한은 중간선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중국은 서해 대륙붕을 구성하는 대다수 퇴적물이 중국의 황하강 및 양자강에서 흘러나온 토사임을 들어 대륙의 자연연장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¹⁴³⁾ 한·일간 대륙붕 경계문제에 있어서는 1974년 이미 양국간 대륙붕 경계협정을 체결한 이래 현재까지 양국 간에 별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당시 육지의 자연적 연장원칙을 주장한 한국의 입장과 중간선 원칙을 주장

143) 김현수, “한반도 주변수역의 해양경계선 획정에 관한 영구”, 『해양연구논총』, 제 19집, (진해 : 해군사관학교, 1997), pp.33~34.

한 일본의 입장이 맞서, 결국 한·일 양국은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양국 연안의 저조선을 기준으로 제1점부터 35점까지 차례로 연결한 중간선으로 하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북부구역의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남부구역에 대해서는 경계획정을 보류한 채 관할권 주장이 중복되는 지역에 대해 공동 개발키로 하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남부구역의 공동 개발에 관한 협정』(유효기간 50년)을 체결함으로써 일단 합의를 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해양법협약으로 인한 200해리 EEZ 제도의 성문화와 대륙붕 외측한계의 200해리 거리기준 등장 등 대륙붕 개념의 근본적인 변화로 인해 현재 한·일간에는 합의된 공동개발구역의 대륙붕 지위도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¹⁴⁴⁾ 한·일간의 대륙붕 경계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되는 2028년 6월 22일 이후에는 재협상되어야 하는데, 대륙붕의 경계문제에 관한 한·일 협정이 타결되던 1970년대와는 다르게 국제판례가 지질 및 지형적 요소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고려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한·일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도 심각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3절 초국가적 해양안보 위협

1. 한국의 해상교통로 안보 환경

해상교통로는 문자 그대로 바다의 길을 의미한다. 국제적으로 해양안보의 중요성을 논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해로는 영어로 SLOC(Sea Lanes of communication), 즉 해상교통로로 설명이 되며 단순한 교통로의 의미보다도 해양문제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해상교통로는 본래 보급품과 증원군이 이동하는 해상의 통로로서 ‘Sea Lines’라고 사용하였으나 민간 해운활동의 발전으로 해상수송의 비군사적 기능이 확대되어 ‘Sea Lanes’라는 단어가 일반 해운항로에도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결국 오늘날 사용하는

144) 배진수, 앞의 글, p.249.

SLOC 이란 단어는 군사적 목적과 비군사적 목적의 해상 수송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¹⁴⁵⁾ 국가생존 차원에서의 해상교통로의 안전 문제는 오늘날에도 전시 병참선은 물론 평시 국가번영을 위한 해상 수송로로서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해상교통로를 수출입 물동량을 운송하는 방향에 따라 구분해 보면 <그림 3-10>와 같이 ① 서해를 통해 중국에 이르는 한중항로 ② 남해에서 남중국해와 말라카 해협을 거쳐 동남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로 진출하는 서남항로 ③ 일본열도를 우회하거나 해협을 통과하여 북미주, 중남미와 대양주를 향하는 동남항로 ④ 한국과 일본 사이를 오가는 한일항로 ⑤ 동해에서 러시아와 홋카이도를 가로질러 태평양으로 나가는 북방항로로 나눌 수 있다.¹⁴⁶⁾ 이중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해로는 세계에서 가장 번잡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로로 꼽히고 있으며, 이 지역 국가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어 지역차원은 물론 범세계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번영을 가져다주는 생명선 구실을 하고 있다.

145) 한국해군에서는 해상교통로를 “국가의 생존과 전쟁수행 상 필히 확보해야 할 해상연락 교통로”로 정의하면서 ‘Sea Lines(Lane) of communication’로 병행표기하고 있다. 해군본부, 『해군군사용어사전』, (대전 : 해군본부, 2013), p.662.

146) 한·중 항로는 중국과 EEZ에 대한 이해가 엇갈리고 있으나 미주로 연결되는 동남항로와 함께 한·일 항로는 미국의 증원군 전력의 전개되고 주일 유엔사 후방기지의 미군 전쟁물자를 수송하는 전략적 항로로 한국의 대미관계, 대일관계에 따라 비교적 안정된 환경을 구비하고 있다. 서남항로는 한국의 총수출입 물동량의 30% 이상과 원유 수입량의 90% 이상의 물류가 경유하는 핵심적인 말라카해협과 중동지역을 연결하는 해로로 한국의 무역경제와 산업은 이 항로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남항로는 중국과 지리·정치적으로 대결 구도에 있는 대만, 바시, 말라카 해협으로 연이어져 있으며, 항로상 인근 연안 각국의 도서영유권 분쟁을 비롯하여 해양통제권을 두고 전략적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항로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 해상교통로는 가장 교통량이 많은 말라카해협(Malacca Strait)을 비롯하여 순다해협(Sunda Strait), 롬보크해협(Lombok Strait)과 연계되는 마카산해협(Makassar Strait), 대한해협 등이 있으나 말라카해협이 유럽과 동아시아간 교역 및 원유수송 항로로서 가장 고도의 전략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간 약 607,000여 척이 통항하는 말라카해협이 폐쇄될 경우 일반 선박들은 약3일의 추가 항해거리인 1,000마일의 우회항로를 이용하여야 하며 주요 이용국인 한국, 일본, 독일, 그리스, 인도네시아,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은 치명적인 경제적 영향을 받게 된다. 정철호,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해양전략과 한국의 해양안보”, 『세종정책연구』, 2012 - B, (서울 : 세종연구소, 2012), p.55.

<그림 3-10> 한국의 해상교통로 현황



* 출처 : 임경환,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에 따른 동아시아 해양안보환경 전망”, 『동북아연구』, 제28권 2호, (광주 : 조선대학교, 2013), p.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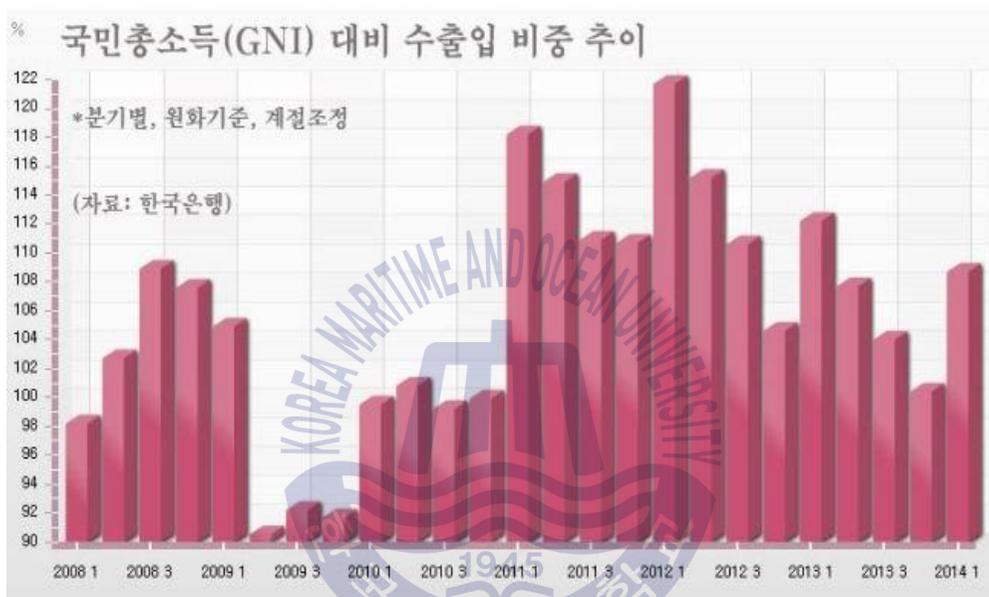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많은 물자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원의 경우 거의 전부를 수입하고 있다. 해외로 연결된 파이프라인이 전무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해상교통로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된다. 실례로, 우리나라의 국내 수출입 화물은 2014년 기준, 8억 9210만톤으로 이중 항공 운송은 0.3%(250만톤)에 불과하다. 반면, 해상 운송은 99.7%(8억 8960만톤)로 국내 수출입 화물의 대다수를 책임지고 있다. 원자력 발전 연료봉 및 부품, 원유, 연료탄, LNG, 철광석 등과 같은 전략물자 운송은 100%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다.¹⁴⁷⁾

만약 해상교통로가 차단·봉쇄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림 3-11>에서 보는바와 같이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도를 보여주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중을 보면 2004년부터 70%대로 올라가더니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에는 104.5%로 치솟았고, 2011년 정점(113.5%)을 찍었다. 이후에도 100%대

147) CNB 뉴스, 2015년 12월 18일.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그만큼 외부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해상교통로가 차단·봉쇄된다면 수출입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며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온다는 것이다.

<그림 3-11>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중



* 출처 : 헤럴드 경제, ‘韓경제…대외의존도 13분기 연속 100% 초과’, 2014년 7월 5일

또한 정삼만 박사의 연구를 인용해 본다면 석유 공급이 40일간 차단되었을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손실액은 20조 7,952억원, 50일간 차단 시 25조 9,941억원, 60일간 차단 시 31조 1,929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석유 비축량이 40일이라는 것은 40일간 추가 공급 없이도 한국경제의 원활한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이를 기준시점으로 상정했을 경우, 이후 30일이 경과함에 따라 2009년 국가 총예산의 14.9%, 국방예산의 109.3% 그리고 방위력개선비의 약 3.6배에 해당하는 손실액이 발생한다.

이 같은 손실은 즉각 대규모 해고사태와 실업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석탄 및

석유가 차단되면 1일 약 8,412명의 일자리가 소멸되며 해상교통로 차단에 따른 취업유발 손실은 40일 차단시 4.9%(336,462명), 50일 차단시 5.2%(420,578명), 60일 차단시 5.6%(504,094명)으로 증가된다. 정삼만 박사는 각종 수학적, 통계학적 기법을 사용해서 해로 차단 시, 한국 경제가 입을 피해를 추정한 후 한국 경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수출·입은 해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것이 차단되었을 때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 차원이 아닌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¹⁴⁸⁾

즉 해로의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일 때, 대한민국의 존망은 불과 몇 개월 정도에서 결판나게 될 정도로 해로의 안전은 국가의 안위에 결정적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5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것은 사활적인 국가이익 수호에 해당되며 향후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현안이 될 것이다.

2. 해적·해상테러 위협

해양의 모든 불법행위가 곧 해상교통로를 위협하는 요인이지만, 해적행위와 해상테러 등은 직접적인 무력 사용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그 위협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¹⁴⁹⁾ 아시아 지역에서의 해적행위에 대한 분석은 아시아 해적퇴치협정(ReCAAP :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의 연례보고서에 잘 제시되고 있다. 아시아 해적퇴치협정의 해적 및 무장강도 건수 집계는 아시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해사기구의 통계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남중국해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한국의 핵심항로에는 해적들이 준동하여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연간 3,000여척의 한국 국적선박이 통항하며 중동 원유의 87%가 통과하는 말라카 해협의 근해 해적사건은 <표 3-5>에서 보는바와 같이 2010년 이후 다소 증가 추세에 있다.

148) 정삼만, “해상교통로의 국가 경제적 영향에 관한 계량적 분석”, 『해양연구논총』, 41집, (진해 : 해군사관학교, 2009), pp.87~114.

149) 유엔협약법에 따르면 “해적행위는 공해 및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장소에서의 선박, 항공기, 인명 및 재산에 대한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행위 “로 정의된다.

<표 3-5> 동아시아 지역 해적 피해현황(2010~2015년 전반기)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남중국해	17	12	7	10	40	11
말라카 해협	5	24	12	12	44	35
동남아시아 전체	99	113	104	124	140	106

* 출처 : ReCAAP Information Sharing Center,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 Annual Report 2014*.(Singapore, ReCAAP Information Sharing Center, 2015), p.12 ; 2015 Report. pdf.

특히 2014년에는 44건이 발생하여 최근 5년 중 가장 활발하였으며 2015년 전반기 동남아에서는 전년대비 18%가 증가한 총 106건이 발생하였다. 남중국해, 말라카 해협, 인도네시아 연안에서 해적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도 바로 이들 연안국들의 치안질서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적활동의 근절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반해적 활동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 각국은 연안 국가들의 해적활동 퇴치를 위한 노력을 적극 요구하고 있으며, 해적위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초계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말라카 해협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 해역에서의 초계활동을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연안국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동아시아 해역에서 해적들의 직접적인 선박 및 인질 납치활동이 감소한 것은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등 연안국들의 치안상태가 향상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적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은 국제적 노력이 약화될 경우에 해적활동이 다시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말리아 해적행위에서 보듯이 해적활동은 일시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혹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향후 아시아의 급성장하는 경제규모, 부족한 해양치안 역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해적행위가 동아시아에서 급격히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적행위와는 별도로 해상테러는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상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그동안 해상에서 발생한 테러

유형을 보면 ① 선박납치 ② 선박폭파 ③ 선박충돌 ④ 선박에 대한 무장공격 ⑤ 항만시설에 대한 공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표 3-6> 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 미 수차례 발생하였다.

<표 3-6> 해상테러의 유형과 사례

대 상	일시/유형	장 소	테러 조직	사건내용
아킬레 라우로 (이태리 여객선)	1985.10.7. /선박납치	이집트	팔레스타인 해방전선	승객 180명 및 승무원 31명 억류(미국인 1명 살해)
USS Cole (미 구축함)	2000.10.27. /선박충돌	아덴항	이슬람 과격단체 지하드	해군병사 17명 사망, 39명 부상, 수리비 약 2억 4천만 달러
랭부르호 (프랑스 유조선)	2002.10.6. /선박충돌	예멘 해역	알카에다	해적의 공격에 의한 화재 발생으로 1명 사망, 9만 배럴의 원유 유출
슈퍼 페리 14호 (필리핀 여객선)	2004.2.27. /선박폭파	마닐라 근해	무슬림 무장단체 아부 사아프	사망 2명, 실종 100명, 부상자 14명
인도 뭄바이항	2008.11.	뭄바이	-	파키스탄으로부터 해상을 통해 10명의 테러범들이 뭄바이에 상륙 후 무차별 공격하여 5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
엠스타호 (일본 유조선)	2010.7.28./ 선박에 대한 무장공격	호르무즈 해협	압둘라 아잠여단 (자칭, 알카에다 연계)	소형보트를 이용한 자살폭탄 공격

* 출처 : 백병선, “한국의 해상교통로에 대한 초국가적 위협의 분석 및 향후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전략』, 제16권 3호, (서울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0), p.103. ; 고명석, “해상테러 및 해상강도”, 『해양의 국제법과 정치』, 한국해로연구회(편), (서울 : 도서출판 오름, 2011), p.79. ; 언론기사 등을 참조하여 정리

앞으로 해상교통로에 대한 테러 위협은 말라카 해협과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밥-엘-만데브(Bab-el Mandeb) 해협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망된다. 말라카 해협의 경우 해저지형은 해협 전체에 걸쳐 수많은 천소(淺所)와 침선이 산재되어 있으며, 항로 주변에 많은 섬들이 위치해 있어 선박의 기동이

제한을 받는 해협의 주요 저수심 및 테러리스트들이 쉽게 은닉할 수 있는 섬 주변 등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2002년 10월에 체포된 알카에다의 해상작전 참모였던 압둘 나시르를 통해 알카에다가 말라카 해협을 비롯한 주요해협에서 선박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의 국가정보기관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알카에다와 연계를 맺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이슬람 테러 집단인 제마 이슬라미야가 말라카 해협에서의 테러 공격에 대한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밝히고 있다.¹⁵⁰⁾

이와 같이 동아시아의 해적과 해상테러는 해상교통로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해적행위 주도세력이 해상테러와 연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해적과 연계한 테러집단의 대규모 해상테러가 동아시아에서 발생한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경제 및 안보 위기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해적 및 해상테러 행위는 횡수보다는 전반적인 해양활동을 위축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다.

3. 재해재난, 해양오염 및 불법어로 위협

가. 재해재난 위협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대형 재해재난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서부 수마트라섬에서 발생한 규모 9.3의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Tsunami, 津波)¹⁵¹⁾로 인도양 연안 13개국에서 23만여 명이 사망하였다.¹⁵²⁾ 동년 12월 28일, 미태평양사령부에서는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연합 지원을 위해 ‘합동임무부대 536 (Joint Task Force 536)’을 조직하여 구호활동을 시

150) 백병선, 위의 글, p.95.

151) 지진·해일을 뜻하는 일본어이다. 해안(津)을 뜻하는 일본어 ‘쓰(tsu)’와 파도(波)의 ‘나미(nami)’가 합쳐진 항구의 파도란 말로 선착장에 파도가 밀려온다는 의미이며, 일본에서는 1930년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1946년 태평양 주변에서 일어난 알류산열도 지진해일이 당시로서는 자연재해 사상 최대 규모의 희생자를 내자 주요 언론들이 ‘지진과 해일’을 일컫는 ‘쓰나미(tsunami)’라는 일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63년 열린 국제과학회에서 ‘쓰나미’가 국제용어로 공식 채택됐다.

152) 연합뉴스, 2012년. 12월 26일.

작하였고, 2005년 1월에는 명칭을 '연합지원부대 536(Combined Support Force 536)'으로 변경하여 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당시 연합지원부대에 병력을 파견한 국가는 미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러시아, 프랑스, 말레이시아 등이었다. 한국도 쓰나미 발생 이후 곧바로 공군 수송기 1대 및 해군 상륙함(LST)인 향로봉함과 비로봉함 등 2척을 이용하여 의약품, 생필품, 피해복구장비 등의 구호물품을 신속하게 수송하는 등 인도주의 구호활동을 적극 실시하였다.

이후,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일본 동북부 대지진으로 초대형 쓰나미가 센다이 등 인근 도시를 덮쳤으며, 이로 인해 사망 및 실종자가 2만 명을 넘었고, 피난주민이 33만 명에 달하였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는 치유가 어려운 상태로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¹⁵³⁾ 2013년 11월에는 필리핀 중부지역을 강타한 태풍 하이엔으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유엔인도지원 조정실(UNOCHA) 보고서에 따르면 태풍 하이엔으로 900만~1,300만 명이 영향을 받았고, 가옥 27만 2천여 채가 완전히 붕괴되고 27만 1천여 채가 부분 파손되었으며 190~300만 명이 집을 잃은 것으로 파악되었다.¹⁵⁴⁾ 태풍복구를 위해 한국은 아라우 부대를 파병하였으며 미국은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와 해병대 1,000여명을 현지에 급파하여 긴급 구호작전을 실시하였다. 영국도 항공모함 테어링함과 헬기항모 일러스트리어스함을 파견하였다. 일본도 함정 3척과 10대의 수송기, 6대의 헬기를 포함한 1,180명의 병력을 파견하였다.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는 곧 다른 국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면, 쓰나미에 의한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불안정이 그 지역의 주민을 해상에서의 범죄행위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로안전의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즉 대규모 재해재난에 따른 빈곤과 질병은 국내적인 치안 무질서를 야기하여 정권을 약화시키고 해적, 해상테러, 마약밀매, 불법이민 등 국제적 해상 범죄를 양산할 수 있다.

153) 박창권, “동아시아 해양안보 현안과 시사점”, 『2013~2014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4). p.58.

154) UNCHA, Philippines : Typhoon Haiyan Situation Report No.10(as of 16 November 2013), ww.unocha.org.

나. 해양오염 위협

동아시아 해양은 역내 국가들의 경제발전으로 해양 이용도가 높고, 해안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 있어 해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대형 유조선 유류누출¹⁵⁵⁾, 화학물질의 대량 취급, 폐기물의 해양 투기사례 증가 등으로 해양오염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듯이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확산은 재난에 가깝다. IAEA 통계치를 기준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전 68기 중 동아시아가 33기를 차지한다. 반면 영구적으로 원전을 폐쇄한 수치는 동아시아가 꼴찌다.¹⁵⁶⁾ 가장 큰 문제는 원전 밀집지역에서 원전사고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는 물론 정상적인 선박 항해도 불가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해양오염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지역적 차원의 노력은 매우 저조하며, 해양오염과 관련한 국가 간 갈등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

육상으로부터 기인되는 오염의 경우 연안국 간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환경보호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협력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역내 국가들의 해양오염 방지나 해양안전과 관련한 국제협약 비준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또 협약을 비준하였다 하더라도 국내적 이행이 신속히 따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양오염 역시 해양안보의 위협요소로 평가하고 동아시아 각국들과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대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55) 해양오염 사례를 보면 한국의 연안에서는 1995년 전남 여수 앞바다 ‘시프린스호’ 및 2007년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건으로 우리나라 남·서해안이 황폐화 되었던 것을 보더라도 해상유류 유출사고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국외에서 발생한 사례를 보면 1968년 영국 근해에서의 Torrey Canyon호, 1978년 프랑스 근해에서 Amoco Cadiz호, 그리고 1989년 알래스카 근해에서의 Exxon Valdez 호 등 초대형 유조선 좌초에 따른 해양오염 사고 및 1991년 걸프전 발발에 따른 페르시아만의 유류오염 사태는 원유 및 위험화학물에 의한 해양오염 사고가 선박의 정상적인 항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서항, “동아시아 해로안보와 해군의 역할”, 『STRATEGY 21』, 통권 25호,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0), p.75.

156) 환경 TV 뉴스, 동아시아 지역 신규 원전 건설 세계 1위...원전 폐쇄는 꼴찌, 2015년 3월 12일

다. 불법어로 위협

동아시아 지역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어업은 심각한 문제이다. 어업집단 간의 충돌, 불법어민들과 법집행력 간의 충돌이 남중국해와 인도네시아 군도수역, 태국 및 미얀마 연안에서 규칙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이 분쟁지역에서 발생할 경우 심각해진다. 남중국해의 경우 연안 해역에서의 남획으로 인해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어 연안국 어부들은 자국 영해를 넘어 분쟁수역으로 들어가 어로작업을 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근처에서 어로작업을 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필리핀 어민들은 서사군도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하고 있다.¹⁵⁷⁾ 센카쿠 열도 분쟁 지역에서도 어선들이 조업을 하면서 정부 간 충돌로 확대되고 있다. 분쟁지역에서의 어로활동은 자신의 해양관할권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상대의 해양관할권 주장을 무력화하는 가시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 따라서 EEZ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동아시아 해상에서 불법조업 문제는 단순한 어로문제가 아니라 해양관할권 갈등의 상징적 행위로서 정치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중 간에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중국어선은 서해 NLL 인근해역에서 하루 평균 500-700척씩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우리해경에 나포된 불법 중국 어선은 1,980척이다. 특히 한강하구 수역 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활동이 201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강하구 수역은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 분쟁 가능성이 높은 민감 수역이며, 정전협정에 의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통제하고 있다. 이곳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2014년까지는 연 2~3회였지만 2015년에는 120여회로 증가했다. 2016년 전반기에는 520여회에 걸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최초로 민정경찰이 투입되어 퇴거작전을 실시하였다.¹⁵⁸⁾ 이러한 NLL 인근해역 및 한강하구

157) M. Taylor Fravel, "Maritime Security 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Competition over Maritime Right," in Patrick M. Cronin, *Cooperation from Strength, The United States, China and the South China Sea* (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 January 2012), p. 37.

158) 포커스 뉴스, "군·경·유엔사, 한강하구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합동 단속", 2016년 6월 10일

수역의 불법 중국 어선 문제는 한·중 간의 외교적 문제를 넘어 남북 해군 간에 충돌의 위험성마저 고조되고 있는 형편이다.

제4절 소결론

남·동 중국해 분쟁은 중국을 비롯한 관련국가들 간의 역사적 권원과 국제법에 근거한 주장이 첨예하게 얽혀있다. 중국은 자신의 정치·경제·군사적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분쟁당사국들에게 양보를 얻어내고 도서영유권과 해양관할권을 확대하고 해양자원을 독점¹⁵⁹⁾ 하려하고 있다. 이는 한번 점유한 해양영토에 대해서는 이를 실효적 지배를 공고화함과 동시에 이를 영구 고착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¹⁶⁰⁾

반면에 상대적으로 국력이 열세한 동남아 국가는 서로 간에 힘을 합치고 미국의 지원을 활용하고자 하고, 일본은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등 역내 국가간 수평적 군사협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 해양분쟁 문제로 인하여 직·간접적인 대결과 충돌을 벌일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간의 심각한 해양영유권 분쟁은 군사적 충돌

159) 중국은 1992년 2월 25일 제7차 전국 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을 채택 하였다. 이 법제 제2조에 의하면 중국의 영해는 “육지영토와 내수에 인접한 수역이고 육지영토는 본토 및 그 연안도서, 대만 및 조어도를 포함하는 그 부속도서, 동사군도, 서사군도, 중사군도, 남사군도와 중국에 속하는 그 밖에 일치 도서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바 있다. 이정태, “남사군도 영토분쟁과 중국의 대응”, 『선주논총』, 제5집, (구미 : 금오공대 선주문화연구소, 2002), p.147.

160) 이와 관련하여 국립외교원의 이지용 교수는 현재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열도를 둘러싸고 벌이는 해양영유권 분쟁이 중·일 간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양국 그리고 미국 모두 무력충돌과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경우를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충돌의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지방정부와 군부 등을 포함한 개별적 이익집단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하여 우발적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우발적 사건의 발생은 자칫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 매우 높은 상황에 접근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지용, “중국의 국가정체성 진화와 동아시아 해양안보환경 변화”, 『국제관계연구』, 제19권 통권 36호, (서울 :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4), p.106.

로 확대될 수도 있다. 한반도 주변 해양에서도 일본의 기습적인 독도 점령의 가능성과 일방적인 배타적 경제수역의 재 선포 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이어도 역시 중국이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었거나 한·중 간의 경제 및 외교관계에서 국익이 걸린 중대한 문제가 발생 시 이어도가 중국 관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남중국해 분쟁과 유사한 방법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상황으로 독도 및 이어도 문제는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의 해양분쟁은 미첼이 주장한대로 명백한 분쟁에 해당되며 일반적인 방법으로 분쟁해결이 쉽지 않아 위기 이상의 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

아울러 해적 및 해상테러와 대규모 재해재난, 해양오염에 따른 빈곤과 질병이 발생하거나, 정상적인 선박항해가 불가할 경우, 당해국가의 정권을 약화시키고 해상에서의 국제적 범죄를 양산시켜서 궁극적으로 해상교통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불법어로 역시 EEZ 문제와 연결되어 정부 간 충돌로 확대된 사례가 있고, NLL 인근해역 및 한강하구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어로 행위는 남·북한 간에 군사충돌까지 야기할 수 있다.

결국, 동아시아의 해양분쟁과 비군사적 해양안보 위협은 연성적 성격의 이슈이지만, 국가 간 역사문제와 국민적 감성, 정치·군사·경제적 민감성 때문에 쉽게 경성적 이슈로 변질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해양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국가간 해양분쟁이나 비군사적 위협에 따라 한국의 해상교통로가 차단되거나 제한을 받는다면, 에너지 수·공급의 차질을 시작으로 국가산업 및 경제활동이 대부분 마비되는 등 한국의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는 국가차원의 해양안보 전략과 한국 해군의 해양전략 및 운용개념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주변국과의 갈등과 충돌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국제적 해양협력을 강화하여 신뢰를 증대하고, 한국 해군-해경 등 정부 유관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제 4 장 동아시아의 군사적 해양안보 위협

제1절 주요국의 해양전략 및 해군력

1. 중 국

중국의 해양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중국의 위협과 국가이익에 대한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은 탈냉전 이후 주변이나 변방지역에서의 지역전쟁 또는 우발상황을 중국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해상에서 분쟁과 위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¹⁶¹⁾ 사실 해군 전력은 핵 전력과 공군 전력에 비하여도 미미하였다. 해군은 지상군의 작전을 측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어,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30년 동안 육군 장성이 해군사령관 임무를 수행했고 1980년대 까지 연안방어에 주력하였다. 이와 같이 해양에 관심이 부족했던 중국이 개방정책을 실행하고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육군중심의 방어 전략은 변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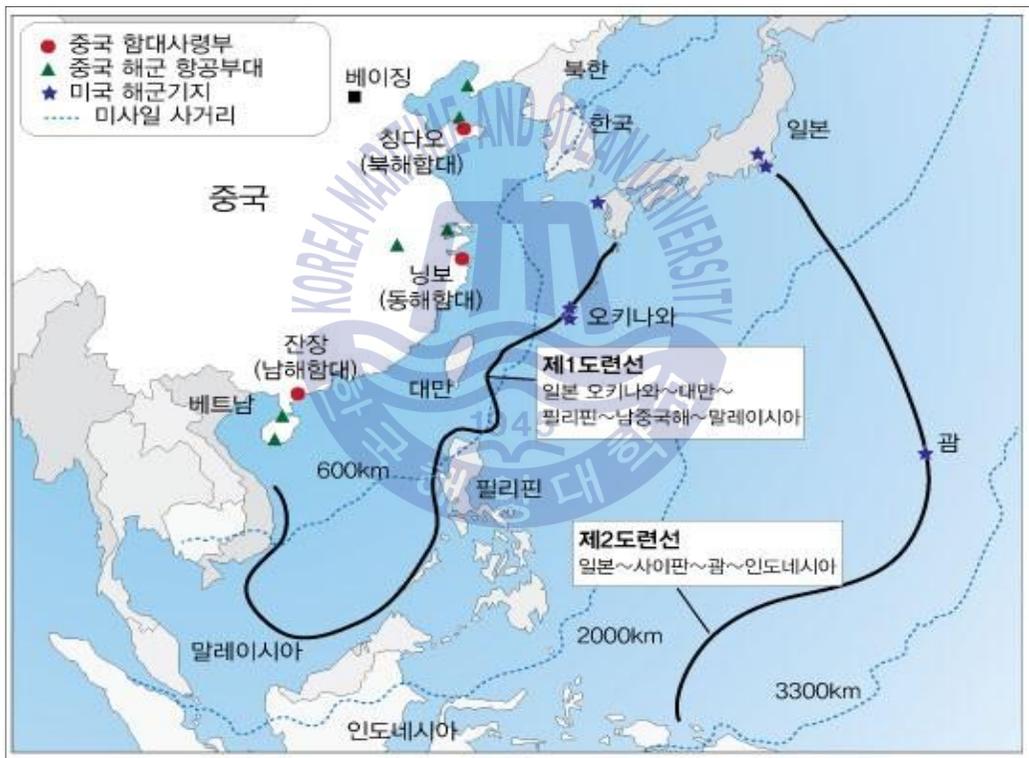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 해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류화칭(劉華清)이 1982년 해군사령관에 취임하면서 중국 해군은 전환기를 맞이하고 대양해군으로의 기초를 다졌다. 그는 소련의 고르시코프가 구축했던 다층 방어(layered defence) 전략과 비슷한 형태의 전략 입안을 시작으로 중국 해군을 독자적 군사 임무를 가정한 전략적 전력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했다.¹⁶²⁾ 즉, 중국 해군의 전략개념이었던 “연안방어 전략”을 연안보다 멀리 떨어진 근해수역으로 확대하는 “근해방어 전략(Offshore Defense)”으로 변경하였다. 1986년 공식화한 근해방어 전략은 국제적인 전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안방어’에서 ‘대양방어(open ocean defense)’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전략의 첫 번째

161) 미 해군대학(Naval War College)의 버나드 콜(Bernard Cole)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근대사 109년간 약 470회의 외국 강대국의 침입이 있었으며, 이 중에서 약 84회가 국가 존망을 위협하는 해양으로부터의 위협이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Bernard D. Cole, *The Great Wall at Sea*, (annapolis, MD : Naval Institute Press, 2001), p.9.

162) You Ji, “China’s Naval Strategy and Transformation”, Lawrence W. Prabhakar, Joshua H. Ho and Sam Bateman (eds.), *The Evolving Maritime Balance of Power in the Asia-Pacific*(2006), pp. 72-3.

단계는 <그림 4-1>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만-일본 규슈-베트남- 말레이시아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島鍊線, Island Chain)에서 해양통제권을 장악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건설하고, 두 번째 단계는 제1도련선에서의 해양통제권이 확보되면 쿠릴열도, 일본, 필리핀, 보닌제도, 마리아나제도, 케롤라인제도 등이 포함된 제2도련선으로 방어선을 넓히는 것이다.¹⁶³⁾ 목표시기는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에서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A2/AD)을 각각 2020년과 2050년까지 완수한다는 개념이다.¹⁶⁴⁾

<그림 4-1> 중국 해양전략의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



* 출처 : 김강녕, “이어도 해양영토 분쟁과 한국의 대응”, 『전투발전연구』, 제22 호, (대전 : 해군본부, 2015), p.55.

163) Toshi Yoshihara and James Holes, “Command of the Sea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Orbis*, vol. 49, no. 4 (Fall 2005), p.681.

164) You Ji, “The Evolution of China’s Maritime Combat Doctrines and Models : 1949-2001,” *Institute of Defense and Strategic Studies* (May 2001), pp.6-11.

한편, 중국은 2012년 당 대회에서 “해양권리 및 이익수호”를 공식적인 국가 해양정책으로 천명하는 등 해양굴기(海洋崛起)를 통한 해양강국 건설을 추진하고¹⁶⁵⁾ 인도양과 대서양 쪽으로 진주목걸이 전략(Strings of Pearl Strategy)을 구현하기 위해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에 해외기지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2014년 중국 국방백서에서 의하면 다변화하는 세계정세와 전쟁양상의 변화에 맞춰, 중국 해군의 전략개념을 “근해방어 전략”에서 “적극적 근해방어 전략(Active Offshore Defense Strategy)”으로 변경하였다. 2015년 중국 국방백서에서는 주변국과의 해양 영유권 분쟁 그리고 일부 역외 국가들의 개입 및 군사적 조치들을 적시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해상 군사 역량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주권 및 해양권의 수호, 전략적 통로 및 해외이익의 안전수호를 강조하였다. 또한 “적극적 근해방어”에서 “적극적 근해방어 및 원해호위”의 결합형으로 변화를 요구하며 전력 건설의 우선순위를 해양, 우주, 사이버 및 핵전력에 뒤편으로써 해양강국을 향한 대양해군 건설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¹⁶⁶⁾

이와 더불어 최근에 중국은 ‘중국 해양 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조건 없는 기반시설 투자와 경제이익 공유를 선언한 일대일로¹⁶⁷⁾(一帶一路)’ 정책도 추진

165) 2013년 4월 발표된 중국의 국방백서에 중국의 다양한 군사력 운용은 “해양권리 및 이익의 보호”라는 별도의 절을 구성하였다. 2013년 7월 중국은 해양감시, 해양경비, 어업법 준수, 밀수단속 등의 기능들을 합하여 국가 해경국을 출범시켰다.

166)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앞의 책(2015~16), p.68.

167)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란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일로)를 뜻하는 말로, 시진핑이 2013년 9~10월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처음 제시한 전략이다. 중국이 태평양쪽의 미국을 피해 육상 실크로드는 서쪽, 해상 실크로드는 남쪽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600년전 명나라 정화(鄭和)의 남해 원정대가 개척한 남중국-인도양-아프리카를 잇는 바닷길을 장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육상 실크로드는 신장자치구에서 시작해 칭하이성-산시성-네이멍구-동북지방 지린성-헤이룽장성까지 이어진다, 해상 실크로드는 광저우-선전-상하이-칭다오-다롄 등 동남부 연안도시를 잇는다. 일대일로가 구축되면 중국을 중심으로 육·해상 실크로드 주변의 60여 개국을 포함한 거대 경제권이 구성되며 유라시아 대륙에서부터 아프리카 해양에 이르기까지 60여 개의 국가, 국제기구가 참가해 고속철도망을 통해 중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고 대규모 물류 허브 건설, 에너지 기반시설 연결, 참여국 간의 투자 보증 및 통화 스와프 확대 등의 금융 일체화를 목표로 하는 네트워크를 건설한다. 2049년 완성을 목표로 하며, 인프라 건설 규모는 약 185조원으로 추정된

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해군력 발전을 살펴보면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해군력 현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상전력은 러시아로부터 소브레메니급 구축함을 도입하면서 크게 향상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2000년대 중반부터는 자국에서 생산한 대형 전투함들도 전력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 고유의 이지스 레이더와 대공방어체계를 갖춘, 소위 중국판 이지스함인 Luyang II급 구축함 같은 첨단 전력들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 해군의 잠수함 세력도 계속적으로 개편되고 있다. 중국은 1990년대 말부터 러시아로부터 킬로급 잠수함을 도입을 시작했고 현재 킬로급, 송급, 밍급, 로미오급, 위안급 등의 재래식잠수함과 한급, 상급, 시아급, 진급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시아급(6,500톤) 전략핵잠수함(SSBN)을 대체할 진급(8,000톤) SSBN¹⁶⁸⁾에는 사거리 8,000km 쥐랑-2(JL-2)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12기를 탑재할 예정이다. JL-2 SLBM은 중국해군에게 신뢰성 높은 제2타격능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한급(5,500톤)을 대체하는 상급(6,000톤) 핵추진 공격잠수함(SSN)은 지상공격용 순항미사일과 대함미사일, 최신형 어뢰 등을 장착한 중국의 신형잠수함이다. 또한 상급 SSN의 개량형으로 제3세대 SSGN Type 095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 중이며 조만간 전력화될 것으로 추정된다.¹⁶⁹⁾

중국 해군의 해양력 투사능력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그동안 대만 상륙작전을 염두에 두고 상륙함을 건조했으나, 2008년 이후에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신형 도크형 상륙돌격함인 18,000톤급 071급을 4척 운용중이고 이보다 더 큰 25,000톤급 상륙강습함 081급 1척을 운용중이고 추가로 3척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동풍 21D(DF-21D)와 같은 중거리탄도 미사일은 서태평양 해상에서 미국의 항공모함을 포함한 함정을 공격 할 수 있는 능력제공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¹⁷⁰⁾

다. 이를 위해 중국은 400억 달러에 달하는 신(新) 실크로드 펀드를 마련하고 AIIB를 통해 인프라 구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2014.

168) 중국의 최신형 핵잠수함인 진급 핵추진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이며, 미국에 대한 중국의 A2/AD전략을 위한 주요 전력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169) 정임재, “동북아 세력경쟁질서와 해양변수 연구”, (경기 : 경기대학교, 2014), p.83.

중국 해군 발전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항공모함으로, 완공 직전 건조가 중단된 항모 2번함 바라크(Varyag)를 1998년에 우크라이나로부터 들여왔을 때는 이를 완성시켜 사용할 것이라는 주변국의 우려가 있었다. 바라크 항모는 라오닝함으로 개명되어 2011년 4월에 진수식을 가진지 1년 5개월 후인 2012년 9월에 실전에 배치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취역식 축전에서 “라오닝함의 취역은 중국군의 현대화 수준을 높이고 국방력과 종합 국력을 끌어올리는 데 중대하고도 깊은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하였다.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인 인취(尹卓) 제독은 중국이 독자 기술로 건조 중인 2번째 항공모함은 라오닝함 보다 규모가 크며 주력 함재기는 쟈(殲)-15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옛 소련의 항모인 바라크함을 개조한 라오닝함에 대해 “건조 당시 규모 측면에서 제약이 많았다”면서 제 2항모의 규모는 함재기 격납고 면적, 유지보수 공간, 탄약창고 등의 규모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라오닝함 보다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¹⁷¹⁾

이와 같이 중국 해군은 잠수함, 항공모함, 신형 구축함과 호위함, 신형 중대형 상륙함 등을 건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원해작전 능력 강화를 위해 함정 크기와 수량 측면에서 ‘소형·대량’에서 항공모함, 구축함 등 ‘대형·소량’으로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중, 북해함대의 본부가 있는 산둥성 칭다오에 배치된 라오닝 항공모함은 작전반경이 800km 내외로 한국의 서해 및 이어도가 작전반경내에 위치하여 매우 위협적이다. 최근 중국은 하이난에도 항모기지를 건설했는데 이는 남중국해의 제해권 장악과 원양작전의 의도로 보인다.

2015년 기준으로 중국해군은 235,000명의 병력에 3개의 지역함대를 기반으로 작전을 수행한다. 칭다오를 모항으로 하는 북해함대는 황해 북단과 보하이해를 관할하고, 닝보에 함대본부를 둔 동해함대는 일본과 분쟁중인 조어도 열도를 포함한 황해 남단과 동중국해를 방어하며, 잔장을 사령부로 둔 남해함대는 영유권 분쟁중인 남중국해를 작전지역으로 한다.

170) 최중호·임경한, 앞의 책, p.102.

171) 연합뉴스, 2016년 3월 7일

함정은 총 850여척이며, 항공모함 1척, 전략 핵잠수함 4척, 잠수함 66척 등이 포함되어 있다.¹⁷²⁾ 총 전투함정은 303척으로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해군의 전투함정을 모두 합한 302척 보다 많은 수치이다.¹⁷³⁾ 해상 항공전력은 각 함대별 2개의 항공사단을 배치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3~4개의 항모전투단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전투능력이 있는 고정익 항공기는 341대로서, H-6 대형폭격기 30대, 요격기 72대, 대함공격기 200대, 대잠초계기 4대, 전자정보수집기 7대, 조기경보통제기 6대 등과, 헬기 100여대¹⁷⁴⁾와 해병대 1만여명을 보유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2015년 이후 공개적으로 중국 해군은 향후 기존 연근해 방어에서 원양방어로 작전개념을 넓혀 해양주권과 권익을 적극 수호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2015년 9월 시진핑은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에서 중국군을 30만명으로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는 지상군 중심에서 탈피해 첨단무기와 장비를 갖춘 해·공군 주축으로 바꾼다는 복안이다.¹⁷⁵⁾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국가차원에서 해군력을 대폭적으로 증강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작전범위를 동·남중국해, 더 나아가 필리핀 해역까지 확장해 나가는 적극적 방위전략을 구사함으로써 국가이익 극대화를 위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역내 국가들과 국가이익이 상호 충돌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해양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 해양에서 해양영토 및 EEZ를 주장하고 방어하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최근 일부 전문가들은 ‘Salami-Slicing’¹⁷⁶⁾ 전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172) 국방부, 『국방백서 2014』 및 해군본부, ‘2015년 주변국 해군력 자료’ 종합.

173)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앞의 책, p.72.

174) *Military Balance 2013*. pp.289~291.

175) 김주환, ‘중국군 30만명 감축의 전략적 함의’, 『국회보』, 2015년 10월호.

176) Salami-Slicing 전략이란 이탈리아의 소시지에서 따온 말로 얇게 썰어서 조금씩 먹는다든 것으로, 협상의 전략 중 하나의 카드를 여러 개로 쪼개서 각각의 보상을 따로 받아내어 협상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 한다는 전략.

2. 일본

일본은 고대로부터 자국의 정체성을 해양국가로 인식하였고 해양력을 국가전략의 최우선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최근 아베 정권이 수립한 국가안보 전략에도 해양국가로서 자유롭고 안정적인 해양의 사용이 일본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주는 핵심적 국가이익이라고 명시하였듯이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국가가 바다로 둘러싸였다는 “도국(島國)” 혹은 “해국(海國)” 이라고 인식해 왔다. 다시 말해 일본이 해양국가라는 사실은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식,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며 이는 일본의 대외관, 경제 및 군사정책을 포함한 대외전략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온 것이다.¹⁷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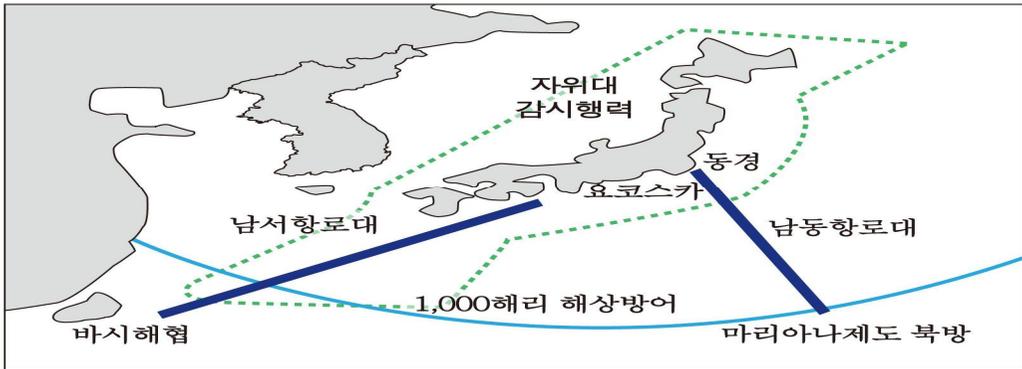
일본은 수출입 물동량의 약 99%가 해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약 9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해양으로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국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유지하고 확보하는 것은 일본 해양전략의 기본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1981년 스즈키 전 일본 수상이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시 일본 열도 기준 1,000마일 이내의 해상교통로는 일본이 관할하고 그 외곽은 미국이 관할하는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것이 <그림 4-2>와 같이 3해협(쓰시마, 소야, 쓰가루)을 방위하는 1,000 해리 해상교통로 방어전략”이다.

일본은 국제안보 정세 등을 고려하여 시대별로 해양전략을 크게 3단계(200해리 전수방위, 1,000해리 전수방위, 적극적 전수방위)¹⁷⁸⁾로 발전시켜 왔다. 최근에는 중국의 해양진출이 가시화됨에 따라 해상교통로 방어범위를 2,000마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177) 박영준, “21세기 일본의 해양질서 구상과 해양정책,” 『외교안보연구』, 제8권 제1호, (서울 : 외교안보연구원, 2012), p.233.

178) 1단계 200해리 전수방위전략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추구한 해양전략이다. 이는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면서 오직 바다로부터의 위협을 방어한다는 다소 소극적 전략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것은 400여개의 유인도서로 구성된 섬 국가인 일본 본토를 방위해야 한다는 논리였으며, 이 시기에 해상자위대의 전력이 양적·질적으로 큰 성장을 하였다. 3단계 적극적 전수방위 전략은 2000년대 이후부터 추구해 오고 있으며 해양을 국가이익의 핵심으로 인식하면서 안보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다소 공세적 해양전략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2〉 일본의 1,000해리 해상방어구역



* 출처: 김정현, “한국해군이 지향할 해양전략”, 『전투발전연구』, 제16호 (대전: 해군본부, 2012), p.14.

한편, 미·일 안보체제의 전략적 중요성은 1996년 4월의 클린턴-하시모토 정상회담을 통한 신 안보 공동선언으로 나타났다. 이 공동선언에 의해 미·일의 군사적 협력 범위가 기존의 필리핀 이북의 극동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이것은 1997년 9월 23일 일본자체 방위에 중점을 둔 미·일 방위협력 지침이 주변지역 급변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양국간 방위협력 지침으로 개정되었다.

이후 일본은 미·일 동맹의 질적 강화와 일본의 전략적 역할의 확대를 위해 2004년 12월 개정된 방위계획 대강에서는 9·11테러 이후 테러리즘의 확산과 불량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주요 위협으로 간주하여 ‘기본적 방위력’ 개념에 입각하되, 다기능성과 융통성 그리고 효율성을 강조한 군사력 보완을 제시하였다.¹⁷⁹⁾ 북한의 핵실험으로 2006년 10월 14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자,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군사 활동을 가능케 하는 ‘주변사태법’ 등에 근거하여, 해상자위대의 북한 선박 검사 및 미군의 활동을 후방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2010년 방위계획 대강에서는 새로운 안보환경 하에서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정보·경계활동을 강화하고,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는 현실을

179) 김기주, “일본의 해양전략 평가와 전망”, 『2013-2014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4), p.189.

바탕으로 자위대를 다기능적이고 탄력적인 방위력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즉 종전의 필요 최소한의 방위력을 갖겠다는 ‘기본적 방위력(Basic Defense Force)’ 개념을 폐기하고, 평화시의 억제, 유사시의 대처, 그리고 테러리스트 공격과 같은 grey zone의 위협에 대응하여 자위대에 정찰 및 감시전력, 정밀타격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동적 방위력’ 개념을 새롭게 표방하였다.¹⁸⁰⁾ 2013년 방위계획대강은 4번째 개정문서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더불어 중국의 강압적 현상 변경행위를 역내 안보질서를 불안정하게 하는 핵심요소로 지적하였다.¹⁸¹⁾

한편, 아베 정권은 중국을 견제하려면 <그림 4-3>과 같이 일본·하와이(미국)·호주·인도가 연계해 다이아몬드 대열을 갖추어야 한다는 안보 다이아몬드 전략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중국이 유사시 일본의 해상교통로를 봉쇄 또는 차단하지 못하도록 해상교통로의 방어 범위를 확대¹⁸²⁾ 하면서 중국의 해양패권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역내 해양균형자’ 역할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3> 일본의 ‘안보 다이아몬드’ 전략



* 출처 : 조선닷컴, “시진핑 ‘진주 목걸이’ 外交 전략, 아베의 ‘안보 다이아몬드’ 와 충돌”, 2014년 9월 17일

180) Takahashi Sugio, “Changing Security Landscape of Northeast Asia in Transition : A View from Japan”, 한국전략문제연구소(KRIS) 국제심포지움 발표논문 (2012.7.5)

181) 김기주, 앞의 글, P.190.

182) 도쿄만을 기준으로 센카쿠 열도까지는 약 1,000해리,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까지는 약 2,000해리, 말라카해협까지는 약 3,000해리이다. 일본은 2,000해리 이내에서는 감시정찰이 가능하고 1,000해리 이내에서는 전력 투사가 가능한 전략 개념을 추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은 2015년 4월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일본이 패전국에서 미국의 안보 우군으로 격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이전 방위협력지침 대비, 일본 자위대¹⁸³⁾의 활동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미·일간 위기대응을 평시, 중요영향사태, 무력공격사태, 존립위기사태(추가), 국제평화활동(추가) 등 5단계로 확대하였다. 신 지침으로 인해 일본은 정식 군대로서 역할과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된 것이다.¹⁸⁴⁾ 또한 최근 일본은 신안보법¹⁸⁵⁾을 제정하여 자위대의 무력사용 범위의 활동반경 확대가 가능해졌으며, 미·일 동맹 강화와 국제공헌이라는 명분으로 해상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해외로 확대시키고, 해상자위대의 급속한 전력증강을 추진하

183)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군대 대신 ‘자위대(Self-Defence Force, 自衛隊)’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184) 윤종준·백병선, “한국의 안보 변화 위협에 대한 전망”, 『국제문제연구 제15권 4호』, (서울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5), p.22.

185) 신안보법의 주요내용

구 분	대상 법률	주요내용	비 고
개정	자위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위출동 여건 추가 재외 일본인 보호조치 미군 등 부대의 무기 등 방호 	집단적 자위권 그레이션
	PKO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PKO 활동범위 확대 정당방위에 추가, 방해배제용 무기사용 	
	중요영향사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사태법에서 중요영향사태법으로 개정 미군 이외 외국군 지원활동 추가 지원 범위 및 내용 확대 	후방지원
	선박검사활동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영향사태, 자위대 해외파견 시 선박검사 활동 실시 	
	무력공격사태대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존립위기사태 정의 무력행사 新 3요건 명기 	집단적 자위권
	미군행동관련조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존립위기사태 시 지원 미군 이외 외국군 지원 	
	특정공공시설이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존립위기사태 및 미군 이외 외국군 지원 	
	해상수송규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존립위기사태 시 해상수송 규제 	
	포로취급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존립위기사태 시 포로지원 	
	NSC설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법 개정에 따른 심의사항 추가 	
新법	국제평화지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분쟁에 공동대처하는 다국적군 후방지원을 위한 자위대 해외파견 	후방지원

* 출처 : 윤종준·백병선, 위의 글, p.23.

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력 증강은 주요 전력인 호위함대의 질적 증강, 잠수함부대 및 소해부대의 질적 증강, 그리고 해외활동의 확대에 따른 장거리 투사능력 발전으로 이루어져 왔다. 해상자위대는 첨단 시스템을 기반으로 세계 정상급 해군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표 4-1>에서 보는바와 같이 호위함대(護衛艦隊), 항공집단, 잠수함대 그리고 호위대로 구성되어 있다. 호위함대는 해자대의 정예로 4개의 호위대군으로 구성되며 대부분의 중·대형 전투함들이 여기에 배속되어있다. 1개 호위대군은 보통 구축함 8척에 헬기 8대로 구성되어 소위 ‘8·8함대’ 라고 불린다. 해상자위대는 8·8함대가 4개 있는 셈이다.

<표 4-1> 일본 해상자위대 조직 및 배치현황¹⁸⁶⁾

부대명		위치	부대명		위치
호위함대	제1호위대군	요코스카	잠수함대	제1잠수대군	쿠레
	제2호위대군	사세보		제2잠수대군	요코스카
	제3호위대군	마이즈루		제1연습잠수대	쿠레
	제4호위대군	쿠레		잠수함교육훈련대	쿠레
항공집단	제1항공군	카노야	호위대	요코스카 호위대	
	제2항공군	하치노헤		사세보 호위대	
	제4항공군	아츠키		마이즈루 호위대	
	제5항공군	나하		쿠레	
	제21항공군	아츠키			
	제22항공군	오무라			
	제31항공군	이와쿠니			

2015년 현재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약 45,500명의 병력으로 함정은 구축함 36척, 잠수함 18척, 호위함 11척 등 200여척이다.¹⁸⁷⁾ 특히, 기본 구축함 전투력의 8배에 이르는 전투력을 보유했다는 이지스함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보유하고 있다. 이지스구축함은 7,200톤급의 초대형 군함으로 현재는 6척

186) 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 <http://www.mod.go.jp/msdf/formal/english>

187) 국방부, 『국방백서 2014』 및 해군본부, ‘2015년 주변국 해군력 자료’ 종합.

(공고급 4척, 아타고급 2척)으로 한국 해군의 3척에 비해 두 배로 많으나 2020년까지 아타고(Atago)급 이지스구축함 2척을 추가로 건조해 총 8척의 이지스구축함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¹⁸⁸⁾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발전된 재래식 잠수함을 보유한 일본은 새로운 방위 개념에 따라 잠수함 전력을 22척으로 확장하기로 하였다. 이는 동중국해에 대한 감시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이다.¹⁸⁹⁾

해자대의 최근 발전 과정에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것은 휴가 구축함 도입과 2DDH 프로젝트이다. 일본의 경우, 현행 헌법에 따라 항공모함을 건조할 수 없으나, 최근 SH-60 헬리콥터를 11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18,000톤급 초대형 휴가함 및 이세함을 실전 배치하였다. 이 함정들은 함교의 위치가 한 쪽으로 치우쳐 있고 함수부터 함미까지 뺀 비행갑판을 갖추고 있어 외형상으로 경 항공모함과 비슷하다.

뒤이어 2015년 3월 26,000톤급 헬기 모함으로 14대의 SH-60 헬리콥터 탑재가 가능한 1번함인 이즈모함이 취역했고 2번함인 가가함이 진수했다. 휴가급(전장 197m, 만재톤수 18,289톤)→이즈모급(248미터, 24,000톤)으로 점차 대형화·첨단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¹⁹⁰⁾ 그리고 휴가급(2척)과 이즈모급(1척)에는 2017~2018년에 미국으로부터 42대를 도입할 예정인 F-35나 해리어(Harrier) 같은 수직이착륙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다.

이러한 대형 함정의 확보는 일본이 실질적으로 항공모함을 도입했다는 논란과 함께, 더 나아가 군사 대국화로 들어서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종합하면 일본의 해자대는 수상, 수중, 공중 그리고 기뢰전, 상륙전력 등을 양적 및 질적 차원에서 균형있게 증강하고 있으며, 해상전 수행능력 면에서 동아시아 최강이라 평가할 수 있다.¹⁹¹⁾

188) 연합뉴스, “일본, 탄도·대함미사일 동시 요격하도록 이지스함 개량”, 2015년 6월 14일.

189) 김기주·손경호, 앞의 글, p.150.

190) 『Jane's Fighting Ships(2014~2015)』

191) 허성필, “최근 일본의 방위력 증강 동향과 안보적 시사점 : 해상자위대 전력을 중심으로”, 『주간국방논단』, 제1497호,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14), p.7.

3. 미 국

미 해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최초의 해양전략은 1986년도 해양전략이다. 이 전략이 작성된 배경은 미·소 간의 첨예한 군사적 대결, 제3차 세계대전의 길목 직전까지 갔던 쿠바사태, 그리고 세계의 모든 바다에서 급속히 증강된 소련 해군력에 대응해야 하는 일 등이었다. 따라서 소련해군에 대응하여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결전에서는 승리하는 것, 즉 ‘War at sea’ 가 핵심개념 이었다. 하지만 냉전 이후 미 해군은 위협 세력이 세계적인 세력이 아니라 지역적인 세력이라고 인식하고 안보 정세와 전략 지형의 변화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여 1992년 ‘바다로부터 육지로(... From the sea)’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이 전략개념은 2년 후인 1994년도에 「Forward... From the sea」 로 개정되었지만 명칭만 바뀌었을 뿐 기본적인 내용은 그대로였다.¹⁹²⁾

그러다 2006년 10월 미 해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해양경비대사령관이 함께 서명한 신 해양전략(New Maritime Strategy), 즉 ‘21세기 해양력을 위한 협력적 작전전략(A Cooperative Strategy for 21 Century Seapower)’ 을 2007년에 공표하여 해적, 테러, 자연재해와 같은 비전통적 위협과 잠재적이지만 중국과 같은 전통적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과 파트너십의 구축을 강조하였다. 이 같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미 해군은 ① 전방배치(forward) ② 억제(Deterrence) ③ 해양통제(Sea Control) ④ 전력투사(Power Projection) ⑤ 해양안보(Maritime Security) ⑥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Humanitarian Assistance/Disaster Response)라는 6개 항목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미 해군은 새로운 해군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해양교리사령부를 창설하였으며, 이 기구는 해군 및 해병대의 장성이 번갈아가며 사령관직을 수행하였다. 미 해군의 우선적 전략목표는 ‘중국의 부상과 해군력 증강이 미국과 동아시아 지역 안보와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라는 전략적 평가와 연계되어 있었다.

이후 미국은 중국의 반접근 및 지역거부(A2/AD)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해전투(Air-Sea Battle)등 새로운 작전개념을 발전¹⁹³⁾시켜 중국과의 군사

192) Department of Navy, *FORWARD.....FROM THE SEA*, (Department of Navy : Washington D.C., 1994).

충돌에 대한 가능성에 대하여 대비하고 있다. 공해 전투개념은 1980년대 냉전 기간 중 유럽지역에서 구소련이 서독의 풀다 협곡(Fulda Gap)을 돌파하여 영국 도버해협까지 침공할 것에 대처하기 위해 지상군과 항공력의 입체적 작전수행을 위해 개발된 공지 전투(AirLand Battle)를 모델로 삼고 있다. 당시 독일지역 미국 사령관이었던 콜린 파월장군이 구소련의 초전 제2차 공격을 방어하지 못할 경우 NATO군은 핵무기를 사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고 언급할 정도의 절치부심 하였던 국면에서 개발된 전투개념 이었다.¹⁹⁴⁾ 공·해 전투는 미·중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이 동아시아의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역내 미군 기지를 타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지상군 보다는 해군과 공군 중심의 합동전력을 이용하여 저지선을 돌파해 중국군 지휘부를 타격하고, 중국의 병참선이 될 수 있는 동남아시아 해로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2015년 미 해군은 인도-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중국 해군력의 인도양과 태평양으로의 확장은 도전인 동시에 기회이며 중동·아프리카는 폭력적인 극단주의 조직 및 테러조직들이 활동하는 지역으로 변화되는 등 지정학적인 변화와 군사적 도전으로 중국의 A2/AD전략, 사이버·전자전, 北·이란의 WMD를 고려하여 미국의 핵심능력으로 전방현시(Forward Naval Presence)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평가에 따라 2015년 3월에 2007년도의 “21세기 해양력을 위한 협력적 전략을 최신화 하여,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power : Forward, Engaged, Ready’ 이라는 새로운 해양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작전환경 변화에 적합하게 ‘전 전장영역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핵심은 ① 모든 전장접근(All Domain Access) ② 억제(Deterrence) ③ 해양통제(Sea Control) ④ 전력투사(Power Projection) ⑤ 해양안보(Maritime Security)이며 전방배치 함정을 현재의 97척에서 2020년 까지 120척으로 증강시키는 것으로 <표 4-2>, <표 4-3> 와 같이 국가안보를 지원하는 해양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미래전력 구축으로 구분된다.

193) 국방부, 앞의 책(국방백서 2014), p.15.

194) 정철호, 앞의 글(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해양전략과 한국의 해양안보), pp.37-38

〈표 4-2〉 국가안보를 지원하는 해양력

구 분	내 용
모든 전장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지역에서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 • 우방국과 주기적인 연합작전·훈련을 통해 모든 전장접근 보장
억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도미사일잠수함에 의해 전략적 핵 억제 • 항모강습단, 수상/수중전력, 해병원정군 등을 통해 재래식 억제 달성
해양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전, 수중전, 타격전, 기뢰전, 대공·미사일방어, 전장인식, ISR은 필수요소
전력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습부대는 원거리 해양기반 타격능력을 갖춘 잠수함, 항공모함, 수상전투함정으로 구성 • 원정군은 지역확보를 위해 내륙 깊숙이 전력투사
해양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범죄조직 격퇴, 어업 및 해양통상 보호를 위해 해양안보전력 지원

* 출처 : 해군본부, 정책실 자료(2015년 7월)

〈표 4-3〉 전력구상 및 미래전력 구축

구 분	내 용
유연하고 신속하며 준비된 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모함 11척, 탄도미사일잠수함 14척, 상륙함 33척 포함 300척 이상의 함대전력 유지 • 해안경비대는 해양경비, 해안순찰, 신속대응함정 91척 유지
병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경험을 갖추고 무기와 체계운용에 능숙한 미래병력 양성
개 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군전력에 맞는 위게임 및 훈련, 전면적 합동/연합훈련을 통해 전투개념을 개발·발전
역 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투우위를 유지하고 개선시켜 주는 역량에 자원 집중 • 미래의 플랫폼, 모듈방식과 개방형 설계로 효율적인 예산사용

* 출처 : 해군본부, 정책실 자료(2015년 7월)

이후 미 국방부는 점증하는 아·태 지역의 해로 안보를 위해 미 의회의 2015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¹⁹⁵⁾에 따라 2015년 8월 아시아-태평양 해로안보 전략(Asia-Pacific Maritime Security Strategy)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세 가지 전략목표로 해양에서 항해의 자유보장, 분쟁과 강압 억제, 그리고 국제법 및 기준 준수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해양안보 전략 네 가지를 설정하였다.¹⁹⁶⁾

첫째, 미국은 군사적 능력 차원에서 전력투사능력, 연안위협에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연대응능력, 그리고 정보전력을 강화한다.

둘째, 군사태세의 강화를 위해 미국은 전방전개전력을 증대한다. 미 해군은 향후 5년간 미 영토 밖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함정규모를 30% 증대하여 전방전개능력을 유지할 것이다.

셋째, 미국은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작전, 동맹 및 동반자 국가들과의 연합연습 훈련, 항구방문, 기타 주기적인 작전들을 적극 추진한다.

넷째, 동맹 및 동반자 국가들이 자국의 해양영토를 보호하고 지역해양안보 문제에 협력할 수 있는 해양안보 능력 강화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지역국가들의 해군력 강화뿐만 아니라 필요한 기반구조, 군수지원능력, 제도적 체제, 훈련능력 등을 포함한 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¹⁹⁷⁾

아울러 미국은 아·태지역의 해군력 강화를 위해 <표 4-4>와 같이 전투사령부의 책임지역 및 임무 중 중부사령부의 미 해병전력과 정찰감시 자산을 태평양사령부로 이전하면서 전체 해군함정의 60%를 아·태지역으로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¹⁹⁸⁾

195) 미국의 국방수권법(NDAA)은 미국의 안보와 국방 정책, 국방 예산과 지출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타국에 정치적·군사적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법이다.

196) Department of Defence, *Asia-Pacific Maritime Security Strategy* (Washington D. C. : Department of Defence, 2015), pp.1~35. 요약.

197) 박창권, “미국, 아시아·태평양 해양안보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주간국방논단』, 제1594호,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15), pp.1~5 요약.

198) 2012년 6월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1차 아시아 연례안보회의(상그릴라 대화) 기조연설에서 레온 파나타 미 국방장관은 아태지역 전진배치 되는 함정비율을 2020년까지 현 50%대 수준에서 60%로 늘릴 것 이라고 발표했다.

<표 4-4> 미국, 지역 통합전투사령부의 책임지역 및 임무

사령부	책임지역 /임무
북부사령부 (NORTH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 : 미 본토와 캐나다, 멕시코 및 태평양대서양 연안 500해리 영역 ● 임무 : 본토방어, 대민지원, 안보협력 및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통제
남부사령부 (SOUTH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 :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 파나마 운하 및 인근 지역 ● 임무 : 역내안보와 협력 확보 및 마약퇴치
유럽사령부 (EU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 : 유럽 전역과 아시아/중동 일부, 북극해와 대서양 지역 ● 임무 : 대서양 연안국의 안전 확보
중부사령부 (CENT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 : 아프리카 동북부, 중동, 인도양의 20여개 국가 ● 임무 : 아라비아 반도의 석유자원 확보 및 방호와 우방국 안보 지원
태평양사령부 (PA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 : 미 서해안, 아시아, 아프리카 동해안, 러시아 동부, 남극 및 북극 ● 임무 : 미국과 부속영토 및 아태지역 동맹국의 안전과 안정, 이익 보호
아프리카사령부 (AFRI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 : 아프리카 지역 54개국 ● 임무 : 아프리카 제국의 안정 확보 및 국방력 강화

* 출처 : 박정일, 『세계안보의 관점과 전략』, (서울 : 창조문화, 2009), pp.126-127.

자료를 종합하여 재구성

이는 미 항모 6척이 아·태지역에서 상시 작전을 수행하고 30여척의 함정이 추가 배치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미 의회조사국(CRS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은 주기적으로 미 해군력 증강계획과 관련된 연구내용을 발표하였다. 2014년 8월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013~14년도 미 해군의 중장기 목표는 306척의 함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 해군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포드급 항모 1척, 버지니아급 공격핵잠수함¹⁹⁹⁾ 10척, 알레이버크급 이지스구축함 10척, 연안전투함 14척, 상륙강습함 1척과 지원함 다수 등 총 44척의 신규함정을 건조할 예정이다. 미 해군 주요 전력의 서태평양 배치 현황 및 계획은 <표 4-5>와 같다.

199) 냉전 당시 주력 로스엔젤레스급의 후계함으로 시울프급이 취역하였으나 1991년 구 소련의 붕괴로, 더 이상 대양에서 미 해군을 상대할 수 있는 적국이 없어지자 상대국의 연안에서 작전을 전개하는 방향으로 개념이 수정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연안에서의 작전에 특화되면서 시울프 급 보다 저렴하게 건조한 것이 버지니아 급 이다.

〈표 4-5〉 미 해군 주요 전력의 서태평양 배치 현황 및 계획

구분	現전력	추가 배치(계획)	기 지
항 모 (1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척(로널드레이건) * 조지워싱턴 정비 		일본 (요코스카)
수상함 (20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휘함1척 (블루릿지) • 이지스함 9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지스함 2척 추가 배치 * 북한 도발 및 미사일 위협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륙함 4척, 대기뢰전함 4척 		일본(사세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전투함(LCS) 1척 • 잠수함구조함 1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척 순환 배치(2016년까지) 	싱가포르(칭이)
잠수함 (3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잠수함 3척(LA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잠수함 1척 추가배치(LA급) * 인도-아· 태지역 신속대응 	괌

* 출처 : 『Jane's Fighting Ship(2013, 2014)』 및 위키백과 자료.

특히 한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 7함대²⁰⁰⁾는 항모를 교체하고 업그레이드된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구축함, 괌에 배치된 LA급 핵잠수함 등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가장 최첨단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력한 함대를 운용하고 있다.

제2절 북한의 군사적 해양안보 위협

1. 북한의 해양전략

북한은 체제 생존을 최우선시 하면서 기본 목표인 대남 적화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상전, 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전을 요체로 하는 군사전략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양한 전술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은 권력 승계 이후 국지도발 뿐만 아니라 전면전 수행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장사정포, 수중전력, 특수전 부대, 사이버 부대 등 비대칭 전력을 집중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북한은 현

200) 제7함대(United States Seventh Fleet)는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해군 태평양 함대 소속 서태평양 담당 함대이다. 50-60척의 함선과 350대의 항공기, 6만명의 해군과 해병대 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 전진 배치된 미국의 함대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http://ko.wikipedia.org>.

재 6,000여 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한 내부의 심리적·물리적 마비를 위해 군사작전 차질 유발, 주요 국가기반 체계 공격 등 사이버전을 수행하고 있다.²⁰¹⁾ 이와 함께 재래식 무기의 성능도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있다. 북한은 대륙국가의 영향으로 해양사용 거부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술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신형 잠수함과 어뢰를 이용한 은밀 기습 공격능력과 해안포, 미사일, 상륙 및 공중 전력으로 동시다발 기습능력도 구비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해양에서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필요시 선 기습 후, 핵 공격 순의 전략을 구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북한의 해군력

북한해군도 그들의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의 하나로써 적화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한 해상전력으로 육성되어 왔다. 즉 그들의 군사전략이 지향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격 중심의 선제기습을 위한 전력을 중심으로 증강을 지속해 온 것이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 해군력은 급속도로 증강되었고, 특히 대규모의 잠수함 전력과 고속공격전력, 상륙전력 등을 확보함으로써 해양거부 및 고속 침투·공격 능력을 증강하였다. 예컨대 북한 해군력 건설의 특징은 한국을 기습공격하거나 속전속결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비대칭전력 위주로 전력 증강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잠수함과 소형고속 공격전력 증강이 핵심이었다.

최근 북한의 해군력 증강현황을 살펴보면 <표 4-6>과 같이 소형 잠수함정을 제외한 모든 전력이 10여 년 동안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초계 잠수함과 중형 수상함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형 전력들은 끊임없이 증강되어 왔지만, 그만큼 노후 전력을 신형으로 교체하여 숫자상으로는 증강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²⁰²⁾

201) 국방부, 『국방백서 2014』, p.24.

202) 임인수, “북한의 군사위협 평가와 전망”, 『2013~2014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서울 : 한국해양전략 연구소), 2014, p. 320.

<표 4-6>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해군력 증강현황

구분	2005	2010	2011	2012	2013	비고
초계잠수함	22	22	20	20	20	R급 SS
연안잠수함	29	32	40	40	40	지속 증강
소형잠수함	20	23	23	23	23	-
프리켓	3	3	3	3	3	-
연안경비함	4	4	4	4	4	-
경비정	400+	400+	400+	400+	400+	-
상륙정	129	129	129	129	129	-
공기부양정	135	135	135	135	135	-
소해함	24	24	24	24	24	-
소형잠수함 지원함	8	8	8	8	8	-
조사선	4	4	4	4	4	-
해군병력	46,000	46,000	60,000	60,000	60,000	병력 증가

* 출처 : 『Jane's Fighting Ships』 2005-2006,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년 판
북한 해군력 자료 및 해당년도 『Military Balance』, 재인용

2015년 기준으로 북한의 해군 전력은 전투함정 430여척, 기뢰전함정(소해정) 20여 척, 지원함정 40여척, 수중전력은 잠수함과 잠수정 등 70여 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상교통로 교란, 기뢰 부설, 수상함 공격, 특수전 부대의 침투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신형 중대형 함정과 다양한 종류의 고속 특수선박을 건조하여 수상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고 신형 어뢰도 개발하고 있다.

북한의 잠수함 전력으로 R급(1,500톤급) 잠수함은 2010년까지 22척을 유지하다가 2011년 2척을 도태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대신 보다 작고 기동성이 뛰어난 연안형 잠수함(Coastal Submarine)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후속함은 소위 “상어” 급으로 불리는 260톤급의 소형 잠수함으로 대체되었다. 1995년부터 신포에서 건조를 시작해서 90년대에는 매년 3~4척을 건조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속도가 줄었지만 연평균 2척 정도를 지속적으로 증강하였고 2011년에는 8척이 증가하였다.²⁰³⁾ 주목할 점은 북한이 2016년 4월 23일 동해에서 실시한 2,000톤급 신포급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

203) 임인수, 앞의 글, p.322.

협²⁰⁴)으로 이를 전 세계에 공개하였다. 현재 성능이 검증된 SLBM 보유 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과 인도 등 6개국이며 북한이 성공할 경우 세계 7번째 SLBM 보유국이 되면서 군사강국의 반열에 뛰어든다고 할 수 있다.²⁰⁵ 현재북한의 상당수의 잠수함은 동해에 배치되어 있으며, 서해의 잠수함 전력은 전진 배치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동해에는 주로 중형 잠수함이, 서해에는 소형 잠수함과 잠수정이 배치되어 있다.

북한은 2012년부터 호위함과 스텔스 고속정 등 5 종류의 수상전투함을 건조하고 있다. 서해 남포와 동해 나진 군항에서 포착된 호위함은 1,300톤으로 헬기 이·착함이 가능하다. 스텔스 고속정은 ‘해삼급’ 과 ‘농어급’ 으로 200~300톤으로 최대속력 50노트이다. 무장은 신형 대함미사일(130km) 4기 또는 76mm 함포를 탑재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참관 하에 2015년 2월 6일 스텔스 고속정에서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을 언론에 공개한바 있다.²⁰⁶)

북한의 해상 기습침투 능력도 해양에서의 주요한 비대칭적 위협이다. 북한은 상당한 비정규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의 핵심은 특수전 부대이다. 특수전 병력은 현재 2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수전 부대는 전시에 땅굴 및 비무장지대 침투대기 시설을 이용하거나 잠수함, 공기부양정, AN-2기, 헬기 등 다양한 침투수단을 이용하여 전·후방 지역에 침투하여 주요 부대 및

204) 북한 미사일 전문가인 미국 에어로스페이스의 존 실링 연구원은 미국 북한전문 웹사이트 ‘38 노스’ 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SLBM이 작전 환경에서 신뢰성 있게 운용되는 방향으로 기술적 진전이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고 밝혔다. 그는 “30km만 비행해도 탄도미사일 실험은 성공적인 것” 이라고 평가했다. 30km 비행은 연료를 그만큼만 채웠기 때문으로 봤다. 발사속도도 음속을 초과했다. 또한 그는 북한 SLBM이 2020년쯤에는 실전 배치 될 것이며, 미 국방부도 이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북한 SLBM, 2020년쯤 실질적 위협” , 2016년 4월 26일. ; 동년 7월 9일 북한은 SLBM을 또다시 발사하였고 이에 대해 실링 연구원은 빈번한 미사일 시험에도 북한은 여전히 중대한 기술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라며 “북한이 SLBM을 전력화하는데 최소 수년이 필요할 것” 이라며 북한의 이런 시도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방어능력을 극복하기 위한 접근법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북한 SLBM 시험발사 계속 이어질 것” , 2016년 7월 11일.

205) 문근식, “치명적 위협 북한 SLBM 에 대비하라” , 『통일한국』 , 통권 제386호, (서울 : 평화 문제연구소, 2016), p.20.

206) 코나스넷, “북한 해군력 증강과 위협” , 2015년 2월 14일.

시설 타격, 요인 암살, 후방 교란 및 배합작전 수행 등으로 역할이 확대되었다. 상륙전력은 공기부양정, 고속상륙정 등 260여 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수전 부대를 후방지역에 침투시켜 주요 군사·전략시설을 타격하고 상륙해안의 중요 지역을 확보하는 작전을 수행할 것이다.²⁰⁷⁾ 이와 같이 북한의 특수전 및 상륙작전 능력은 유사시 전략적 측면에서 상당한 과급력을 가질 수 있다. 한국전쟁 초반 북한은 특전대 600명을 태운 수송선으로 기습 침투해 부산항을 점령하려 시도했었다. 만약 대한해협 해전에서 북한의 수송선이 격침되지 않고 당시 유일의 대형수하물 처리 능력을 가진 부산항이 점령되었다면, 미군과 유엔군의 보급과 증원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한국전쟁의 양상은 달라졌을 것이다.

3. 북한의 해양도발 양상

가. NLL 무력화 책동

1953년 8월30일 마크 웨인 클라크(Mark W. Clark · 1896~1984) 유엔군 총사령관이 <그림 4-4>와 같이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했다. 동해는 군사분계선(MDL)의 연장선에, 서해는 38선 이남인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와 북측 황해도 사이에 선을 그었다.

<그림 4-4> NLL과 북 주장 해상 경계선



* 출처 : 연합뉴스, NLL과 북 주장 해상경계선, 2013년 6월 24일.

207) 국방부, 앞의 책, p.26.

이는 같은 해 7월 27일 정전협정 당시 육상의 군사분계선에는 합의했지만, 해상경계선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취한 조치였다. 연안수역의 범위를 두고 유엔군 사령부는 3해리(5.6km), 북한은 12해리(22km)를 각각 주장한 게 문제였다.²⁰⁸⁾ 결국 양측은 “연해의 섬 및 해면에 관한 통제권은 1950년 6월24일 이전을 기준으로 하되, 서해 5도는 유엔군 사령관 관할 아래에 둔다”는 단서규정을 두는데 그쳤기에 클라크 총사령관이 동해 및 서해에 我 해군 및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기 위한 선으로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였다.

서해상에는 당시 영해 기준 3해리를 고려하고 서해 5개 도서(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와 북한지역의 개략적인 중간선을 기준으로 NLL을 설정하였다. 동해상에는 군사분계선(MDL) 연장선을 기준으로 하여 북방경계선(NBL : Northern Boundary Line)을 설정하였다. 당시 유엔군사령부는 이 사실을 한국 해군에만 전달하고 북측에는 공식 통보하지 않았다. 이 당시 북측에는 사실상 해군력이라고 할 만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군의 활동만 적절히 통제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1996년 7월 1일 유엔사/연합사 정전 시 교전규칙을 개정하면서 동·서해 모두 NLL로 명칭을 통일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NLL의 법적인 성격을 살펴보면 NLL은 비록 유엔군 사령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정되었지만 남북한 군사력의 직접적 충돌을 막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유용한 선으로 남북한 간의 NLL에 대한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유엔군사령부도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새로운 해상 군사분계선을 합의할 때까지 현 서해 NLL이 서해에서의 실효적인 해상경계선이라는 점과 북한이 NLL을 월선 하는 것은 도발로 간주할 것임을 북측에 전달하였다.²⁰⁹⁾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의 체결로 무력 적대행위가 정지되고 법적으로 정전이 성립되었지만 평화가 설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전자는 정전상태의 효과적인 유지를 위해서 유엔군사령부가 설치한 NLL을 일종의 방위수역 또는

208) 연합뉴스, “북방한계선과 북 주장 해상경계선”, 2013년 6월 24일

209) 김호춘, “서해북방한계선(NLL)의 법적성격에 관한 연구”, 『정보·보안 논문지』, (경기 : 한국융합 보안학회, 2013), p.24.

전쟁수역의 한계선이라고 할 수 있다.²¹⁰⁾ 또한 NLL은 전시에 교전국의 해군력(군함 또는 기타수단)으로써 모든 선박에 대해 당해 선박이 선적한 화물의 국적 및 형태를 불문하고 적의 항(港) 또는 해안선과 외부로 출입·교통하는 것을 차단하는 봉쇄선(blockaed line)이 아니다. 봉쇄는 이를 침파하는 중립선박도 나포하여 몰수할 수 있는데 비해, NLL은 그것을 넘어 해주항에 드나드는 제3국의 선박에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²¹¹⁾

즉 NLL은 남북한 간의 군사분계선인 동시에 일정한 수역에서의 해양경계선으로 남북한 간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남북한 간의 해양경계선의 성격도 국가 간에 인정되는 해양경계선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NLL의 정치·군사·경제적 역할 및 가치를 보면

첫째, 정치적으로는 정전체제 유지 및 방위의지 과시 역할을 하고 있다. 군사경계선은 지상의 경우 비무장지대라는 완충지대를 중심으로 철책선에 의해 분리되고 있지만 해상에서는 지리적 특성상 지상과 같은 완충지대가 없이 NLL에 의해 양측을 분리하고 있다. NLL은 비록 정전협정 규정상에는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남북이 지난 60여 년간 실질적인 해상군사분계선으로 간주하고 해상 경비활동 등을 수행한 경계선이다. 또한 NLL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해역으로 부각되면서 이 선의 유지는 한국의 대북 방위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NLL을 힘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한국 방위 의지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둘째, NLL은 북한의 전쟁도발 의지를 차단하기 위한 수도권 방위의 지리적 완충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즉 북한의 속전속결 전략과 기습공격 전략의 방위능력을 강화시키고 취약성을 제거할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을 제공한다. NLL은 북한의 군사공격 개시선과 수도권과의 거리를 이

210) 제성호, “북방한계선(NLL)의 법적 성격과 유효성”, 육군3사관학교 (제9회 충성대 학술세미나, 2004), p.9,

211) 제성호, “정전협정 60년 NLL과 서북도서”, 『STRATEGY 21』, 통권 31호,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p.35.

격시킴으로써 북한의 기습 공격 가능성을 제거시켜 준다. 북한은 서해 해군기지인 해주와 웅진반도 일대로부터 김포, 강화도, 인천 등 수도권 측방에 2-3시간 이내에 기습적인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NLL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북한의 도발 움직임에 대한 조기 경보를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진 경계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NLL은 영해 12해리와 EEZ 200해리 설정에 따라 경기만 일대에 대한 한국의 해양관할권을 보장하고 확대해 주고 있고 수도권 측방 해안지대를 발전시키며 경기만 일대의 넓은 해역을 경제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경제적으로 수도권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인천항 및 평택항 등에 대한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으며, 한국 어선들의 안전한 조업활동을 보장하고 인근 해역에 해저자원에 대한 개발과 탐사가 이루어질 때 해저자원에 대한 활용도를 증대하는 차원에서 NLL의 경제적 중요성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앞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1953년 NLL 설정이후 한국은 NLL 이북 해역에 대한 초계활동을 중단한 것은 물론 북한도 20년간 북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사실상 NLL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기에 해상경계선으로 굳어지는 듯했다.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은 1973년 12월 북측은 “황해도와 경기도 경계선의 연장선 북쪽 수역은 우리 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고 1970년대 초에 상당수준의 고속정 전력을 구비하게 됨으로써 그때까지 숨을 죽이고 있던 서해에서 NLL 무력화 기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212)

그리하여 1973년 10월에는 대규모로 NLL을 침범하는 소위, 서해사태를 유발하기에 이르렀고,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하는 등, 서해 접적해역 일대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후의 김정일 시대에도 <표 4-10>와 같이 NLL 침범을 계속하였다.

212) 임인수, 앞의 글, p.323.

〈표 4-7〉 1990년대 이후 북한의 NLL 침범 현황

년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횟수	12	38	25	30	26	16	6	48	71	25	20	19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횟수	21	19	14	21	28	24	50	95	17	20	25	13

* 출처 : 임인수 앞의 글, P.325 및 언론보도 종합

나. 서해 5도에 대한 도발

연평도, 백령도 등의 서해 5도의 위치는 위협 노출의 비대칭성 양상을 보인다. 백령도는 북한 해안으로부터 13km, 연평도 역시 12-13km 떨어져 있을 정도로, 서해 5도는 북한의 해안과 인접해있어 북한에게는 턱밑에 비수와 같은 존재이다. 북한은 NLL 인근의 전방해역에서 전투력을 강화하고 있다. 제1차 및 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등을 겪으면서, 한국해군에 열세인 그들의 해상 전력을 인식해 연안 전투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서해 5도 인근 장산곶, 강령반도, 사곶, 등산곶 등지에 해안포 전력의 강화이다. 북한의 주요 해안포 전력은 사거리 12-20km 사이의 76.2mm, 122mm 및 130mm 평사포, 54km의 170mm 곡사포, 사거리 84-96km인 샘릿(Samlet)과 실크웜(Silk Worm)지대함 미사일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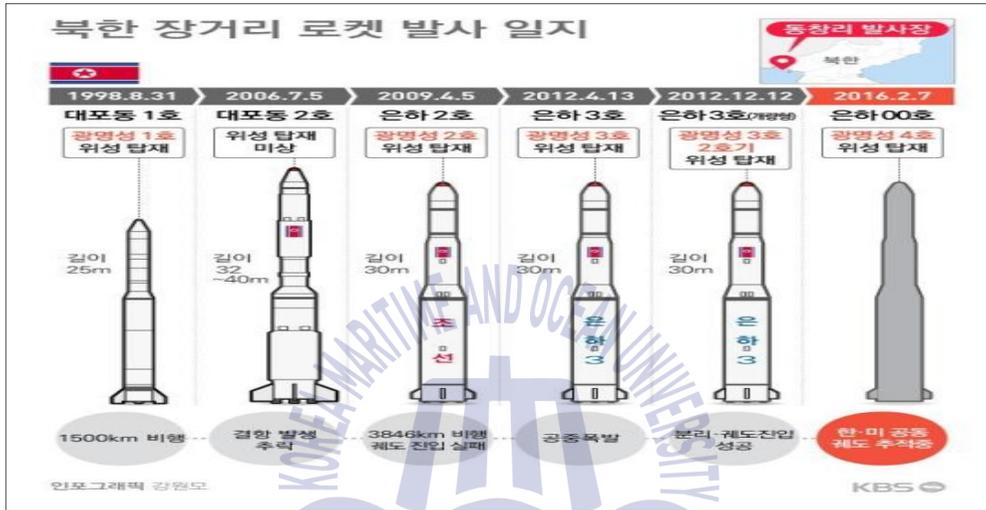
이들 전력은 우선적으로 한국해군의 원활한 작전 수행을 방해 및 교란하고, 유사시에는 한국해군의 인적, 물적 피해를 극대화 시켜 정치, 심리적인 충격까지 강요하는데 동원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해 5도가 북한 해안포의 사거리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을 이용해 직접적인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은 연평도 포격을 통해 확인한바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해안포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서해 5도의 방어는 쉽지 않다. 우선 한국 본토와의 격리성과 북한에의 인접성으로 인해 방어를 위한 신속한 대응과 증원이 쉽지 않다. 또한 섬들의 협소함으로 인해 백령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서에는 대규모 방어 전력을 배치하기가 용이하지 않다.²¹³⁾

213) 박성용, “북한의 해양 비대칭 전력과 한국의 해양안보”, 『정치정보연구』, 제14권 2호, (서울 : 한국 정치정보 학회, 2011), pp.117~118.

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북한은 <그림 4-5>와 같이 1990년대 말부터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핵 실험을 강행하고 있다.

<그림 4-5>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일지



* 출처 : KBS TV 2016년 2월 7일

1998년 8월, 북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대포동 1호'를 발사했다. 일본 북부 상공을 통과해 1,600km를 날아가자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은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06년 7월 대포동 2호를 발사했고 3개월 뒤인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2009년 4월에는 개량형 대포동 2호를 '은하 2호'라고 칭하면서 인공위성인 광명성 2호를 실어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주장하였다. 2009년 5월에는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이후 2012년 12월에 은하 3호를 발사하였다. 국방부는 은하 3호의 잔해를 조사한 결과 북한은 500kg의 탄두를 1만km 이상 날릴 수 있는 로켓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2013년 2월 12일에 북한은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이어 2016년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발사체는 위성으로서 가치가 없고, 탄도미사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밝히면서 위성이 되려면 적어도 800~1500kg 정도가 탑재가 돼야 하는데, 이번에는 200kg 정도를 탑재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로 보는 게 정확하다"고 하였다. 또한 국정원은 이번 장거리 미사일이 2012년 12월에 있었던 광명성 3호보다는 성능이 다소 개선이 됐다고 평가했으며, 당시에는 100kg이었던 미사일이 지금은 약 2배로 늘어났다고 분석하였다.²¹⁴⁾ 이처럼 북한은 고비 때 마다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횡수를 거듭할수록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더 길어지고, 핵실험의 강도는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조만간 핵능력을 군사력에 통합하여 전략적·전술적 목적으로 실제로 운용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매우 열세한 상황에서 북한은 자신의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고 한·미의 행동을 압박하고 제한하기 위해 핵능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²¹⁵⁾

제3절 소결론

중국은 미국의 견제를 거부하기 위해 자체 군사력, 특히 해군력을 증강하고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에서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을 각각 2020년과 2050년까지 완수한다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내륙과 해양을 복합적으로 연계시키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동아시아 해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항공모함과 중국형 이지스함 및 전략 잠수함 등의 최첨단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해군력 증강 추이는 동아시아 해양질서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미·중간 해양패권 경쟁을 초래하고 있다. 일본은 미·일 동맹 강화와 국제공헌이라는 명분으로 해상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해외로 확대시키고 있다. 기존 1,000해리 위를 넘어 말라카 해협까지의 해양 방위를 목표로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급격하게 증가

214) 뉴데일리, 국정원 “2012년 광명성 3호보다 성능 다소 개선“, 2015년 2월 7일.

215) 박창권, “북한 핵위협 현실화를 고려한 군사전략 발전방향”, 『주간국방논단』, 제 1586호,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15)

하고 있는 중국의 해군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는 대형함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첨단 신형 이지스함 및 잠수함 전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제 안보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안보 다이아몬드 전략도 본격화 하고 있다. 미국은 2020년까지 해군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는 등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문제는 중·일 해군의 전력증강이 해군력 투사 능력을 제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군력 투사는 해양을 통해 상대국에게 직접 발휘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이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군사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해군은 잠수함 전력과 고속공격 전력, 상륙전력 등을 증강함으로써 해양거부 및 고속 침투·공격 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이어 끊임없이 NLL 무력화와 서해 5도에 대한 도발을 시도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을 감행하고 있다. 향후에도 북한은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고 이를 이용하여 과감한 도발을 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주변국 및 북한의 군사적 해양안보 위협은 한국의 해양안보에 어떠한 함의를 던져주고 있는가? 그것은 동아시아 해양은 협력과 상호의존의 자유주의적 질서보다 대립과 갈등의 현실주의적 질서가 우위에 자리하고 있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유사시 무력시위 및 선제공격의 수단으로 해군력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중국 및 일본과 해양에서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견제 전력을 확보해야 하며,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 해군이 독자적으로 대응 가능한 억제전력을 구축해야 한다. 즉 주변국 및 북한의 군사적 해양안보 위협은 개별적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 있는 복합적 위협이므로, 우선순위에 의한 순차적 대응이 아닌 동시·병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차원에서 이를 인식하고 적정수준으로 해군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제 5 장 한국 해군의 대비방안

제1절 동아시아 해양안보 위협의 영향과 한국 해군의 대비분야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남·동 중국해 분쟁 및 독도, 이어도 문제는 평화적 합의나 국제법에 따른 사법절차에 의해 해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즉, 도서영유권 및 해양관할권은 주권 및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국제법 규범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지만 갈등의 확산 정도에 따라 군사적 영역으로 확대되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군비경쟁과 상호 위협인식이 높은 상태”를 의미하는 ‘Asia Paradox’의 전형에 해당한다.²¹⁶⁾

동아시아의 해양분쟁은 당사국들 간의 제한적인 분쟁을 넘어 지역해 차원에서 해양관할권 및 군사활동 공간 쟁탈로 확대되는 양상이며 어느 일국에 의한 해양통제력 확대는 우리나라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위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 위협이다. 다만, 이러한 간접적 영향요소는 물류이동과 에너지 수급에 직결되는 문제가 있으며, 결국 우리나라의 해상교통로 및 에너지 공급환경을 위협하는 직접적 실익의 문제로 확대된다. 특히 중·일 혹은 중·미간 긴장관계의 형성은 동아시아 전체의 해양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군사적 및 군사적 영역 모두에 파급력을 갖는다.

동아시아의 비군사적 해양안보 위협인 해적 및 해상테러와 대규모 재해재난, 해양오염도 당해국가의 정권을 약화시키고 해상에서의 국제적 범죄를 양산시켜서 궁극적으로 해상교통로의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불법어로 역시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와 연결되어 정부 간 충돌로 확대된 사례가 있고, NLL 인근해역과 한강 하구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 행위는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를 넘어 남·북한 간에 군사적 충돌로 발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의 해양분쟁 및 비군사적 해양안보 위협은 ‘연성적(軟性的)’ 성격의 이슈이면서도, 국가 간 역사문제와 국민적 감성, 정치·군사적 민

216) 양희철,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해양을 통한 이행방안,” (사)해양환경안전학회 추계 학술발표회, (목포 : 목포해양대학교, 2015), p.161.

감성 때문에 쉽게 ‘경성적(硬性的)’으로 변질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경성적’ 혹은 ‘연성적’ 이슈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한편, ‘경성적 이슈’ 이자 직접적 위협인 동아시아의 군사적 해양안보 위협에서 심각한 문제는 중·일의 해군력 증강이 해양을 통해 군사력 투사능력을 확장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일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군사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더불어 북한 해군은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감한 도발을 또다시 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중국 및 일본과 해양에서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견제 전력을 확보해야 하며,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 해군이 독자적으로 대응 가능한 억제전력 구축이 필요하다.

결국 동아시아의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은 군사적 요소와 비군사적 요소가 상호 명확하게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해군의 대비분야를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차원의 해양안보 전략을 발전시키고 한국 해군의 해양전략을 정립해야 한다. 동아시아의 해양안보 위협은 군사적·비군사적 요소가 직간접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복합적 위협이므로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의 높은 해양 의존성을 고려하여 국가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에 동시에 대처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해군의 소요 전력은 요구 능력을 기반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북한 해군의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등 비대칭적 위협 등에 대해서는 극복해야 할 위협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등 전력 소요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적정 수준의 해군력 확보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또한 비군사적 해양안보 위협의 증가에 대비하고 한반도 통일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 해군의 역할과 운용영역을 확대시켜야 한다.

셋째, 주변국과의 갈등과 충돌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국가 조직간 해양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와 조직을 정비하고 동아시아 각국들과 국제

적 해양 및 해군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복잡하게 얽힌 동아시아의 전략적 상황에서 미국이나 중국이 협력 체제를 주도하려 할 경우 이들의 패권적 경향을 우려한 지역 국가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으나 한국은 해양 및 해군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상황적·역사적 조건을 충족시키는 국가이다.

상기 대비분야를 동아시아의 해양안보 위협에 따라 정리하면 <표 5-1>과 같이 구분할 수 있으며, 분야별 대비방안은 제2절 부터 기술한다.

<표 5-1> 동아시아 해양안보 위협의 영향과 대비분야²¹⁷⁾

해양안보 위협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한국 해군 대비분야		
	직접위협	간접위협	안보전략 해양전략	전력발전 해군력 운용	해양 및 해군 협력
남중국해 분쟁	해상교통로, 에너지수급, 지역패권	국가안보	○	○	○
동중국해 분쟁			○	○	○
독도 영유권	국가안보	해양자원	○	○	○
이어도 관할권	국가안보	해상교통로, 해양자원	○	○	○
대륙붕 및 EEZ	국가안보	해상교통로, 해양자원, 에너지수급	○	○	○
초국가적 위협 (해적, 해상테러, 재해재난, 불법어로, 해양오염)	해상교통로, 에너지수급, 해양자원	국가안보	○	○	○
주변국/ 북한의 해양전략 및 해군력	중국	국가안보	해상교통로, 해양자원, 에너지수급, 지역패권	○	○
	일본	국가안보		○	○
	미국	-	-	○	○
	북한	국가안보		○	○

217) 동아시아의 해양안보 위협이 한국에 미치는 직접·간접적 영향과 대비분야 도출은 2장~4장의 연구결과에 따른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임.

제2절 해양안보 전략발전 방안

1. 해양안보 보장을 위한 종합적 국가안보 전략 수립

제2장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해양안보는 지리적, 군사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다. 따라서 해양안보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그 중요성을 국가전략²¹⁸⁾ 차원에서 인식하고, 적극적이며 포괄적인 국가안보 전략²¹⁹⁾ 마련이 필요하다. 해양 강대국들은 해양안보가 자신의 국가생존과 발전에 핵심적인 도전과 위협임을 인식하고 국가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중국의 팽창적 해양정책, 일본의 새로운 방위개념은 이를 잘 말해준다. 미국의 경우에는 국가안보 전략뿐만 아니라 국가해양 전략을 설정하여 해양문제를 국가전략으로 다루고 있다.²²⁰⁾

우리나라는 2013년 부활된 해양수산부에서 세계 5대 해양강국을 목표로 업무

218) 현 정부의 국가전략으로 명시된 자료는 확인이 불가하므로 통일연구원에서 발행한 자료를 참고하면, 국가전략(대전략)은 정치·경제·외교·군사·정보·문화 등 국정전반을 망라하면서 상위의 정책에 접근하는 큰 틀의 포괄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신뢰외교(Trustpolitik)는 박근혜 정부의 신뢰에 기반을 둔 국정철학이 국방·통일·외교 분야에서 구현된 국가 대전략이자 정책적 기본 틀이다. 신뢰와 평화의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고 통일시대를 열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인 것이다. Trustpolitik의 골간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와 추진전략 및 국정과제에 잘 담겨있다. 2013년 5월 28일 확정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계획은 국정기조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맞춰 세 가지 추진전략(튼튼한 안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신뢰외교)을 제시하고, 모두 17개의 추진과제를 이행하도록 했다. 이들 17개 과제 중에 상대적으로 Trustpolitik와 연관성이 깊고 동시에 보다 직접적으로 국방정책 분야에 속하는 과제로는 “국민이 신뢰 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대세 확립”,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한·미 군사 동맹 지속적 발전 및 주변국 국방협력 강화” 등이 해당된다. 박형중·전성훈 등, 『Trustpolitik :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서울 : 통일연구원, 2013), pp.1~11 요약.

219) 현재까지 공개된 국가안보 전략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에서 발간한 『정예화된 선진강군』 책자에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즉 정부는 국가안보 목표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국민 안전보장 및 국가변영 기반 구축, 국제적 역량 및 위상 제고’로 설정하고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안보 전략기조로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실용적 외교와 능동적 개방추진, 세계로 나가는 선진 안보추진’의 3가지를 설정하였다. 국방부, 『정예화된 선진강군』, (서울 : 국방부, 2013), p.28.

220) 박창권, “해양안보 위협확산에 따른 한국해군의 역할 확대 방안”, 『STRATEGY 21』, 통권 31호,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p.240.

를 추진하고 있다. 즉 해양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 관리를 위해 8개 과제(수산업의 미래산업화, 지속 가능한 수산업 실현, 어항 기능 고도화, 수산 식품산업 육성, 안정적 수산물식량 수급체계 구축, 해양신산업 육성, 경제영토 개척, 해양관리)와 해양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5개 과제(특별관리 해역관리 강화, 해양정화 및 보호, 무인도서 관리, 기후변화 및 연안침식 관리대응, 연안보호강화) 등 총 13개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정부차원의 일종의 전략과제로서 주로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는 분야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들의 성공적인 실현을 보장해줄 수 있는 해양안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동안 해양안보를 미국의 강력한 해군력에 의존해 온 것도 해양안보 보장을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토대로 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의 수립에 미흡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해양이 자원 확보와 해상교통로 측면에서 그리고 패권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과 한국의 높은 해양 의존성을 고려하여 국가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해양이 한반도의 지리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하는 수단임과 미래 국가발전의 유일한 전략적 생존공간임을 인식하여 국가안보 전략의 중심을 해양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²²¹⁾ 따라서 해양안보 보장을 위해 국방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국민안전처 등 유관기관들이 협업하여 국가안보 전략을 발전시키고 이를 기획 문서화해야 한다. 해양안보 보장을 위한 국가안보 전략에는 해양수산부 국정과제나 해양정책외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²²²⁾

첫째, 미국과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시켜 나가고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²²³⁾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입장에서 동맹국인 미국의

221) 박성용, “변화하는 동북아 해양안보환경과 한국안보의 방향”, 『동북아 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문제』, (광주 : 전남대학교 세계 한상문화연구원, 2010). p.116.

222) 해양안보 관련된 정부유관 기관들의 협업을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종합해양정책본부나 영국의 해양안보수행위원회와 같은 범정부적인 기구의 창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23) 한·중 간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경제·인적 교류가 세계 1위국이며, 지리적·역사적·문화적으로 아주 중요한 파트너 ② 북한의 급변 사태발생 시 군사적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평시에도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 ③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미 동맹은 미국의 대중 봉쇄

동아시아 정책에 호응하는 것은 한반도 안보와 동아시아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중국과도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외교·군사 분야에서 신뢰를 더욱 강하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무조건 배타적이기 보다는 상호 의존적인 면도 있으므로 과거 미국과 구소련이 각축했던 냉전시대 상황과는 다르다. 실제로 현재 미·중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기는 하지만, 파국적인 충돌로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은 상호 의존하면서 타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동맹외교와 전략외교를 하면, 조화를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²²⁴⁾ 어정쩡한 균형외교와 같은 소극적 자세로는 우리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질 것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양국을 끌어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독도 및 이어도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위협을 복한 위협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²²⁵⁾ 독도 영유권 및 이어도 관할권은

땅의 핵심 고리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 ④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적극적으로 기획할 필요 등이 있다. 강희각, 앞의 글, p.38.

224) 조선일보, “美·中 세력충돌, 위협 속 기회…동맹·전략외교로 한국 몸값 올려야”, 2012년 9월 26일

225) 우리나라는 독도에 대한 영토권원의 주장근거로 시원적 권원 또는 역사적 권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일제 식민지기간 동안의 실효적 주권행사의 단절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련의 조치들에 의해 회복되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울릉도와 지리적 인접성을 근거로 인접성의 원칙 또는 울릉도와와의 지리적 일체성을 영토권원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할 때,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주장은 국제법상 영토권원으로서의 역사적 권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관한 연구의 방향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영유권 분쟁에 대한 최신판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판례의 태도를 관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실효적 지배의 근거로 제시된 증거의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개별 증거별로 재판부가 어떠한 기준에서 증거력 부여를 결정하였는지를 도출하는 연구가 충분히 수행되어야 한다.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증거측면에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단편적 증거수집 방식을 탈피하고, 고대부터 현재까지의 실효적 지배 증거를 망라하여 수집·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후 개별 증거별로 국제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용희, “국제판례상 실효적 지배의 개념과 독도에 관한 고찰”, 『Ocean and Polar Research』, vol.35 no.4, (안산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3), pp.319~321.

국제법에 따른 사법절차에 의해 해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조용한 외교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냉철한 사고와 해양분쟁과 관련해 정확한 국제정세 판단이 필요하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국가의 사활을 걸고 수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어도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주장하는 중간선 원칙에 근거한 경계획정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셋째, 동아시아의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에서 해상교통로 보호를 사활적 안보 이익으로 설정해야 한다. 남·동 중국해 해양분쟁에서 중국은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해 공세적인 전략을 추구하고 주요 해상교통로를 장악하여 미국의 해양주도권을 위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해적 및 해상테러와 대규모 재해재난에 따른 빈곤과 질병은 해상에서의 국제적 범죄를 양산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해상교통로의 위협으로 작용하고 한국 경제에 치명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지속적인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해양자원 및 해양영토 보호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동아시아 해역을 비롯하여 전 세계 해양에서 각국들은 해양영토를 확보하고 해양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섬 건설, 조업통제 등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나라의 연근해에서 유조선의 유류 누출 등 각종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이나, 중국어선 등의 불법조업에 의한 어족자원의 남획 등으로부터 해양자원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다. 특히 주변 강대국들이 해양자원을 확보하고자 우리나라의 EEZ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해양영토 보호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 균형적 해양 방위전략 개념의 도입

전략에 관한 정의와 마찬가지로 해양전략도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콜벳은 해양전략이란 “해양이 실질적인 요소가 되는 전쟁에서 그 전쟁을 지배하는 원칙으로서 해양전략의 주요 관심사항은 전쟁계획에서 육군과 해군의 상관관계를 결정하는데 있다. 그리고 해군전략은 해양전략의 일부로서 해양전략에서 지상

전략과 관련하여 수행해야 할 함대의 역할을 결정하였을 때, 그에 따라 함대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²²⁶⁾ 이렇게 볼 때 해양전략은 단순한 함대의 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쟁전체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함대와 지상군의 상관관계를 결정하는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오늘날 합동작전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 콜벳의 해양전략 정의에는 전시 해양력의 운용만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킬 교수는 해양전략이란 “국가가 자국의 해양력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고 전·평시를 막론하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력을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방법이다”²²⁷⁾라고 함으로써 해양전략의 적용시기를 평시까지 확대시켰다. 해군 용어사전은 해양전략은 “국가목표를 달성하고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시 및 전시에 국가의 해양력을 운용하고 해양을 사용하는 기술이자 과학”으로 정의된 반면, 해군전략은 “국가전략에 의하여 결정된 목표 또는 해양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군력을 운용하는 기술이자 과학”으로 정의하고 있다.²²⁸⁾

한편,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에서 해양전략을 전담할 부처가 명확하지 않고 해군전략이 해양전략을 전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해군이 국가안보 전략을 도외시키고 독단적으로 해양전략을 발전시킬 수도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 논의하는 한국 해군의 해양전략이란 국가안보 전략을 바다라는 영역의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목표 및 군 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전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군력을 건설하고 운용하는 것은 해군전략의 목적이 아니라 해양전략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해양전략 개념 발전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해양안보 개념의 변화이다. 과거 해양이 국가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간주되어 해양을 통한 국력 시현을 위해 경쟁과 대결의 장으로 대두되었던 시절의 해양전략은 강대국

226) Julian S. Corbett, *Some Principles of Maritime Strategy*(London : Longmans, Green and Co,1981), pp.11-12.

227) Geoffrey Till, *Maritime Strategy and Nuclear Age* (London : The Macmillan Press LTD, 1982), p.14

228) 해군본부, 앞의 책(2013), p.678.

의 국가전략 개념이었다. 그러나 탈냉전기 이후 해양은 전쟁에 대비하거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통적 안보개념에서 비군사적 위협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라는 개념의 사용이 보편적인 추세에 있다. 미국의 마한 제독과 영국의 콜벳 경이 주장한 적극적 해양통제를 근간으로 하는 전통적인 해양전략 개념도 점차 해양에서의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에 따라 국가 해양력을 극대화시키는 포괄적이며 협력적 해양전략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²²⁹⁾ 즉, 국가 해양력 적용 범위가 국가정책 목표와 군사적 목표로까지 확대되면서 해양전략과 해군전략간 구분은 거의 무의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해양전략 개념 선택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반도국가는 대륙국가의 위협에 대해서는 해양거부 의도를 해양통제(sea control)²³⁰⁾의 입장에서 관리해야 하며, 해양국가의 위협에 대해서는 해양통제 의도를 해양거부(sea denial)²³¹⁾의 입장에서 관리할

229) 윤석준, “한국의 해양강국과 포괄적 해양전략 발전”, 『2013-2014 동아시아 해양 안보 정세와 전망』,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4), p.367.

230) 해양통제란 용어는 1970년대 초반 베트남전 이후 미 해참모총장 줌월트(Elmo R. Zumwalt) 제독이 미 해군의 임무를 재 정의하는 과정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한편, 터너(Stansfield Turner) 제독은 1974년 미 해군대학에서 출간되는 『Naval War College Review』에 기고한 글에서 미 해군의 임무를 재 정의하면서 해양통제를 사용한 이후 일반화된 용어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한국군의 권위 있는 교범인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및 해군의 해군 군사용어사전에는 “한 국가가 자국의 국가이익을 보호 및 증진시키고 국가 안전보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만큼 해양사용을 보장하고 적극에 대해서는 그들의 해양 사용을 저지 하는것 ”으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해군 기본교리에는 “아군이 필요로 하는 특정한 시기 및 해역에서 적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해양을 상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적의 해양 사용을 거부하기 위하여 적의 해군력을 효과적으로 제압 또는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결국 해양통제는 두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즉, 그 하나는 특정시기에 특정해역을 사용하려는 적의 의도를 거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국의 그러한 의도를 보장하는 것이다. 해양통제는 지구상 모든 해양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필요한 시간과 필요한 해역에서만 행사되는 선택적 기능인 것이다.

231) 해양거부는 약한 국가가 제해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바다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적으로 하여금 바다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는 있다. 제해권 장악이나 해양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해양거부를 추구하는 것이다. 가령 해전에서 승리를 추구하지는 못하더라도 빈약하나마 해군을 유지하는 것 그 자체는 매우 중요한 거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박창희, “강대국 및 약소국 해양전략 사상과 한국의 해군전략”, 『국가전략』, 통권 제62호, (서울 : 세종연구소, 2012), p.102.

수 있어야 하는 상반된 입장에 처해있다. 실제로 우리가 처한 안보환경도 동일하다. 지상에서는 북한을 포함한 대륙세력의 위협에 직면해 있고 해양에서는 중국 및 일본의 군사적 해양안보 위협과 비군사적 해양안보 위협을 동시에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중적 성격의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한국 해군의 해양전략은 해양통제형 또는 해양거부형 전략을 선택하기는 곤란하다. 더구나 동아시아의 비군사적 해양안보 위협을 감안하면 이분법적 전략 선택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해군의 해양전략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학자들의 해양전략 주장은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 해군에서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할 수 있다. 국방대학교 박창희 교수는 해군의 전략에 대한 개념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로 첫째, 해군작전은 지상작전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인해 자체적인 전략을 구상하는데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둘째, 해군의 특성상 무기체계가 갖는 중요성으로 인해 전략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었다. 해양통제 혹은 해양우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적보다 우수한 첨단무기체계를 구비하여 전력 면에서 상대적 우세를 달성해야 했기 때문에 해양전략 개념을 발전시키기보다는 무기체계 도입 그 자체에 비중을 두어 왔다. 셋째, 해군임무의 다양성으로 인해 전략에 관한 합의 도출이 어렵다. 넷째, 북한위협에 대한 인식의 골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한국 해군의 종합적이고 장기적 발전계획은 아직까지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채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의해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고 주장하였다.²³²⁾

또한 2013년 2월 ‘해양안보 위협과 바람직한 해군력 건설’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한국해양전략연구소와 한국국방안보포럼이 주최한 안보세미나에서는 다수의 토론 참가자들이 한국 해군의 해양전략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²³³⁾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도 북한 위협을 우선 고

232) 박창희, 위의 글, p.93.

233) 2013년 2월 한국해양전략연구소-한국국방안보포럼 안보세미나 토론자로 참석한 신동아 이정훈 기자는 한국해군에는 다양한 전략개념들이 있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볼때 한마디로 표현 가능하고 해군을 대표할 수 있는 해양전략은 찾아보기 힘들다

려하는 등의 이유로 한반도 전구(theater)작전을 주도하지 못하여 해군의 해양 전략에 관한 논의에 소홀히 했다.²³⁴⁾ 이에 연구자는 해양전략 발전 및 선택 개념, 국민적 공감대,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양안보의 양분화적 질서를 고려하여 한국 해군은 ‘균형적 해양 방위전략(Balanced Defense Strategy)’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균형적(均衡的, Balanced)이라는 단어는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른 것’을 의미한다. 방위(防衛, Defense)란 ‘적의 공격이나 침략을 막아서 지킴’을 의미²³⁵⁾하는데, 대한민국 헌법 제5조 3항(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에 근거한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군사적·비군사적 해양안보 위협에 균형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바다로 오는 적은 바다에서 저지 및 격퇴하며 타국을 먼저 침략하지 않겠다고 대외에 표방하는 개념인 것이다.²³⁶⁾

이와 같은 ‘균형적 해양 방위전략’은 로즈노우(James N. Rosenau)가 탈냉전기 국제정치 질서는 국가중심적 세계(State-Centric World)와 다중심적 세계(Multi-Centric World)로 양분화 되어 있고 이 두 세계는 서로 독립적이지만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형성되어 있다.²³⁷⁾라고 평가한 이론을 반영하였다.

고 언급하였다. 국민일보 최현수 기자는 ‘한국적 해양전략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해군의 전력 증강 과정을 보면 우리 해군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 과정을 보면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명확하게 보인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보다 분명한 해군의 해양전략 제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안병준, “공세적 현실주의의 군사적 재해석을 통한 한국형 기동함대 적기 전력화에 관한 연구”, (대전 : 한남대학교, 2015), p.104.

234) 한·미 연합방위체제 하에서 우리의 독자적 군사전략 및 합동작전 개념 개발은 제한을 받아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기본적으로 연합사령관이 연합작전계획 수립 및 연합·합동교리발전 권한을 보유한 가운데 한반도 전구에 대한 작전계획을 주도해 왔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우리 합참의 작전기획 기능이 점차 강화되고는 있으나, 향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작전계획 발전을 우리가 주도하기 위해서는 합참의 전략기획 및 작전기획 능력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국방부, 『창조국방, 국방발전의 새로운 길』, (서울 : 국방부, 2015), p.1.

235) 네이버 어학사전

236) 균형적 해양 방어전략으로도 표현을 고려할 수 있으나 방어(防禦, Defense)는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적의 공격을 방해, 저지, 격퇴 및 격멸을 의미하며 실전 또는 실전을 예상한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므로 용어 선택에서 제외하였다.

즉, 동아시아 해양안보의 국가중심적 성격은 도서 영유권분쟁, 해양경계획정 분쟁, 주변 강대국들의 해양 군사적 위협 그리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그 위협의 수위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북한의 현실적인 심각한 도발 등이다. 또한 다중심적 성격은 해상교통로에 대한 테러의 위협, 해적행위, 자연재해, 환경오염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균형적 해양 방위 전략은 이 두 성격의 해양안보 위협을 동시에 균형적으로 방위하는 포괄적인 해양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균형적 해양 방위전략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보면 첫째, 국가중심적 성격으로 우선, 북한의 군사적 해양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 해군 독자적으로 대응 가능한 전력으로 해양통제 전략을 수행한다. 즉 평시에는 북한의 해양 군사적 도발을 보복적 및 거부적으로 억제한다.²³⁸⁾ 북한이 침략시에는 이를 조기에 격퇴하고 지상 및 공중전력과 합동작전으로 작전구역에 대한 해양통제를 장악하며 한국 해군과 해병대 전력은 북한 지역으로 전력을 투사하여 합동군사전역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개념이다.

다음으로, 주변국과 해양분쟁으로 사활적 국가이익과 관련된 해양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해양통제가 불가하므로 한국과 같은 중견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인 해양전제(Sea Containment) 전략을 수행한다. 즉 주변국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기동함대 등의 전력으로 해양분쟁을 사전에 억제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분쟁으로 인해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 해군은 신속히 현장으로 이동하여 적극 대응하여 해양에서의 원상복귀를 달성함으로써 국익을 보장하고 해양주권을 수호한다는 개념이다.

237) 이승렬·배진수, 앞의 글, p.154.

238) 억제(deterrence)의 사전적 정의는 ‘감정이나 욕망, 충동적 행동 따위를 내리 눌러서 그치게 하는 것, 정도나 한도를 넘어서 나아가려는 것’ (표준국어대사전) 이다. 억제의 유형을 분류하면 먼저, 수단에 따른 분류로는 군사적 수단(핵 억제, 재래식 억제)과 비군사적 수단(외교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심리적 등)이 있다. 다음으로, 억제효과가 나타나는 행동력에 따른 분류로는 보복적 억제(보복당할 파괴력의 위협에 의해 억제), 거부적 억제(상대방의 침략행동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힘으로 과시함으로써 억제), 보상적 억제(상대방이 침략 행동으로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보상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적 억제)로 분류하기도 한다. 국방대학교, 앞의 책, p.112.

둘째, 다중심적 성격으로는 동아시아의 비군사적 해양안보 위협에 대해서 해양협력 전략을 수행한다. 해양에서의 비군사적 위협은 현실적으로 어느 한 국가만이 대응하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해적, 해상테러, 자연재해, 불법어로 등 위협 상황에 따라 필요 전력을 차출하여, 국내적으로는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국제적으로는 해양협력 공조체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개념이다.

이와 같이 ‘균형적 해양 방위전략’은 동아시아의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해양통제, 해양견제, 해양협력 전략을 구사하는 맞춤형 전략이다. 그리고 전략 수행을 위해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 해군 독자적으로 대응 가능한 전력, 주변국에 대해서는 기동함대를 확보하자는 개념이다.

강조하면 수상·수중·항공의 입체적인 균형 전력 확보에 우선시 하는 전략은 아니라는 것이다. ‘균형적 해양 방위전략’은 <표 5-2>과 같이 학자 및 전문가들이 현재까지 제시한 한국 해군의 해양전략 중에서 강영오 제독(예)의 균형해군 전략²³⁹⁾과 김기주 박사의 3축 균형전략²⁴⁰⁾, 그리고 김정현 박사가 주장하는 지역해 방어 및 평화유지 전략²⁴¹⁾과 맥을 같이 한다.

239) 강영오 제독(예)은 해양국은 대양해군 전략을, 대륙국은 대륙해군 전략을 수용하고 발전시켜 왔는데 한국은 반도국으로서 이러한 두축의 중간적 위치에 있으므로 이 두 전략의 조화로운 연결을 통해 한국에 부합한 균형해군 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는 “균형해군 전략사상의 기본개념은 북한 해군에 대해서는 해양통제에, 주변국 해군에 대해서는 해양견제(현존함대)에 중점을 두는 전략이며 이를 고려하여 해군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해양견제란 한국 해군이 중국 및 일본 해군에 대해서는 먼 바다에서 해양통제가 아니라 해양견제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한국 해군의 전력이 만만치 않은 수준은 되어야 적의 공격을 견제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견제는 단순히 해전을 피하는데 관심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만일 적이 한국 해군을 공격하면 적도 적지 않은 피해를 당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강영오, “균형해군 발전론”, 『STRATEGY 21』, Vol. 14, No. 1,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1), p.237.

240) 김기주 박사는 한국 해군은 ①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북한이 해양에서 군사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해양통제를 해야 하고, ②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는 해양에서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③국제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해양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3축 균형전략이란 해양통제, 해양균형, 해양협력의 세 가지 전략의 동시적 통합적 수행을 의미하고 있다. 김기주, 앞의 글, p.156.

241) 김정현 박사는 해군전략은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우리 군 내부의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명시적인 모토(Motto)여야 하고, 해군의 임무달성에 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개념들이 포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역

<표 5-2> 한국 해군의 해양전략 개념 제시

구 분	해양(해군)전략	주요 개념
강영오	균형해군 전략	함대결전(대북한), 현존함대(주변국)
김기주	3축 균형전략	해양통제, 해양균형, 해양협력의 동시 통합적 수행
김정현	지역해 방어 및 평화유지 전략	200해리 지역해 방어 및 국제 평화유지 활동 참여
반길주	해양접근전략 균형적 해양투사전략	연해지배, 해양통제(한반도), 저강도 해양통제 혹은 해양견제(동북아), 해양질서(관심원해) 4가지 분야 투사능력의 균형화
박창권	하드웨어+소프트 웨어 전략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 요소의 종합적체계적 강화
박창희	제한적 근해우세	연안통제 능력과 원해작전 능력 동시 확보
윤석준	실용적 해양전략	원해 해상작전 능력+연안에서의 다양한 위협 대응

* 출처: 전창빈, “대한민국 해양전략과 해군력 선진화 방향”, (서울 :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2012), p.258. 및 상기 학자들의 논문, 저서를 참고하여 편집.

제3절 한국 해군의 전력 발전방안

1. 전력 발전개념²⁴²⁾

앞에서 제시한 균형적 해양방위 전략으로 동아시아의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에

해 방어 및 평화유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전략의 개념은 “한국의 EEZ를 운용영역으로 하고 해상을 통해 오는 위협은 해상에서 저지 및 격퇴를 하며, 지역해의 방어를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유엔의 구호아래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여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 라고 주장하였다. 김정현, “한국해군이 지향할 해양전략”, 『전투발전연구』, 제16호, (대전 : 해군본부, 2009), p.38.

242) 한국 해군의 전력발전과 관련하여 2013년 국정감사에서 해군은 서북도서와 NLL에 대한 확고한 해상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핵심표적 제원 최신화와 타격훈련에 매진하고 있으며, 원거리 탐지용센서와 전술비행선, 이동 해상감시레이더 등 탐지 및 감시체계를 보강하고,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이지스함 추가 건조사업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속 추진하며 북한의 군사도발 억제, 해양주권 수호 및 국제평화 활동 등을 위해 2023년까지 5,900톤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을 확보하고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는 2020년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일보, “이지스함 추가 건조·F-X 사업 조기 추진 필요”, 2013년 10월 24일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해군은 연안이든, 대양에서든, 생존, 승리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규모와 전투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한국을 방위할 수 있는 충분성에 근거한다. 방위충분성(防衛充分性) 전력²⁴³⁾ 확보의 근거는 역사적 사실에서도 찾을 수 있다.

1992년 형성된 워싱턴 체제에서 일본은 미국 대비 70%의 해군력 보유를 희망하였으나 결정된 미국과 일본의 해군력 비율은 5:3 이었다.²⁴⁴⁾ 또한 학술적인 측면에서 전략기초 이론을 정립한 일본의 기꾸찌 히로시는 총 82회의 해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아군이 상대전력의 70%를 유지할 경우 상대가 이길 확률이 50%이며, 아군이 상대전력의 60%일 경우에는 상대가 이길 확률이 61% 이라고 설명²⁴⁵⁾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들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전력비교 차원에서 한국 해군이 주변국의 침략을 거부할 수 있는 억제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변국 대비 최소 60~70% 전력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 해군의 전력 발전과 관련한 2011년 방사청 연구결과²⁴⁶⁾에 의하면, 주변국과 해양분쟁 시 주변국의 해군전력 30%만 전개된다는 가정하에 이를 억제하려면 3~4개의 기동전단이 필요하고, 기동함대 건설 소요제원은 2020년까지 약 6조 5,000억원으로 추정되며 기동함대가 창설되면 부산 해군작전기지와 제주 해군기지를 활용하게 된다고 하였다.²⁴⁷⁾

현재 한·중·일 3국을 무형전력이나 기술력을 배제하고 단순한 전력수준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표 5-3>에서 보듯이 2030년대까지 한국 해군의 전력은 중국의 19%, 일본의 49%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해군전력

243) 방위충분성 전력이란 적국의 일방적인 국익 강요를 저지할 수 있으면서도 적이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을 만한 정도의 방위적 군사력을 말한다.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 군사용어 사전』, (서울 : 합동참모본부, 2010), p.141.

244) 김민석, “워싱턴 체제의 성립과정과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 : 고려대학교, 2002), P.346.

245) 국방대학교 역, 기꾸찌 히로시 저, 『전략기초이론』, (서울 : 국방대학교, 1993), p.169.

246) 방위사업청의 해군전력 강화방안 용역보고서에 작성에 참가했던 박영준 국방대 교수는 중국이 해군에 투입하는 예산은 250~300억 달러이며, 일본은 180억~200억 달러에 달한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40~50억 달러에 불과해 중국이 우리보다 최대 7.5배, 일본은 5배나 더 많다고 하였다. 세계일보, “대북 방어작전 위주 벗어나 동북아 해양갈등 대비해야”, 2012년 11월 7일.

247) 동아일보, “독도-이어도 수호 전략함대 10년 내 만든다”, 2012년 8월 31일

의 합은 중국의 약 60% (16+48%)으로 예측된다.

<표 5-3> 한·중·일 해상전력(1,000톤 이상)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일본	톤수비
현재	37척 (10.6만톤)	218척 (64.3만톤)	70척 (31.6만톤)	·對中:약 16% ·對日:약 33%
2020년	55척 (18만톤)	240척 (80.9만톤)	74척 (36.8만톤)	·對中:약 22% ·對日:약 49%
2030년	55척 (19.1만톤)	260척 (121.3만톤)	78척 (39.7만톤)	·對中:약 16% ·對日:약 48%

* 출처 : 안병준, 앞의 글, p.108.

이러한 한국 해군의 전력건설로는 주변국과 해양분쟁 발발 시 해양주권을 수호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최소한 방위충분성 수준의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 해군의 전력건설은 역사적 사실과 방위충분성의 이론 및 국회의 결정에 근거하되, 우리의 경제여건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추진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대북 전력은 독자적인 억제전력을 구축하고, 대주변국 전력은 일본 해상자위대에 대응할 수 있는 방위충분성 수준인 70%를 목표로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2030년경에는 한·일 해군력을 합쳐도 중국 해군에 대비 억제수준(60~7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국 해군 대비 70% 수준의 목표는 어렵다. 하지만,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곤란하므로 국회의 결정에 따라 기동함대 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한 다음, 이후에 일본과 중국의 해군력을 고려하여 전력건설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한국 해군의 전력건설은 북한, 주변국, 비군사적 등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에 동시 대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잠재적 위협에 치중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한국 해군이 추진해 온

대양해군 건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있었다. 하지만 대양해군이란 큰 바다를 지키는 해군이 아닌, 큰 바다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해군이라는 뜻이기에 해군력 건설의 실체를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해군력의 경우 북한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으로는 주변국에 대비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으나, 주변국에 대비 가능한 전력을 확보하면, 북한 위협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2. 북한의 군사적 해양안보 위협에 독자적 대응 가능한 전력 구축

앞 절의 균형적 해양 방위전략과 연계하여 북한의 군사적 해양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군전력은 평시에는 억제력을 구비해야 한다. 만일 북한이 침략시에는 이를 조기에 격퇴하고 작전구역에 대한 해양통제를 장악하며 북한 지역으로 전력을 투사하여 합동군사 전역의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전략개념에 따라 전력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상 통합감시능력을 획기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음향데이터 및 자성데이터, 전자데이터 등과 같이 해양에서 획득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특수전 부대를 포함한 북한 해상전력의 이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도발 원점 타격 및 탄도 미사일 요격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서해 5개 도서의 방어를 위한 K-9 자주포와 이스라엘제 스파이크(spike) 유도 대전차미사일 등의 전력 증강은 도서 내에 수용공간의 부족으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함대지미사일에 의한 적 도발 지점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나아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입체적인 대응능력 구축을 위해서는 이지스함에서 제한적인 수준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도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이미 한국 해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이지스함의 탐지능력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발전시켜 미사일 방어체계의 중심축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는 지상배치 미사일 방어체계와 함께 운용됨으로 보다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잠수함 전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2015년에 창설된 잠수함사령부가 창설되었지만 잠수함 전력은 확충 되지 않았다. 잠수함은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수상함 전력을 만회하고 분쟁을 억제함과 동시에 유사시 적의 심장부를 보복타격 할 수 있는 히든카드가 되기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잠수함 전력 보유를 희망한다. 하지만 잠수함은 운용이 어렵고 고가여서 모든 국가가 잠수함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세계에서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불과 42개국 뿐이다. 우리나라도 척수로는 세계 7위에 해당하지만 <표 5-4>에서 보느냐와 같이 우리의 주변국들이 세계 1위~5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해군은 상대적으로 열세하다.

<표 5-4> 한국과 주변국의 잠수함 전력비교

구분	잠수함 전력	증강계획
한국	12척(디젤추진 방식) 1,200t급 9척, 1,800t급 3척	2020년까지 3,500t급 중형 잠수함 3척 건조
중국	65척(핵추진잠수함 5척, 전략핵미사일 탑재 잠수함 3척 포함) 최소 2,300t, 최대 1만 2,000t급 구성	2020년까지 8,000t급 핵추진 잠수함 5척 건조, 러시아에서 킬로그램 잠수함 12척 도입
일본	16척(디젤추진 방식) 최소 2,750t, 최대 2,400t급 구성, 첨단 성능 갖춘 최신에 한정	2015년까지 22척으로 증강
러시아	80여척(전략핵미사일 탑재 잠수함 15척 포함) 최소 2,350t급, 최대 2만 5,000t급 구성	다탄두 핵미사일 탑재 전략핵 잠수함 8척 2020년까지 건조

* 출처 : 동아일보, “잠수함 증강 다시 수면 위로,” 2012년 1월 9일.

그러므로 2020년을 목표로 진행 중인 3000톤급 잠수함인 한국형잠수함 (KSS-3)사업²⁴⁸⁾은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 해군의 잠수함사령부는 209급

248) 한국해군이 2018년부터 전력화하기로 했던 차기잠수함은 2년을 늦춰 2020년 1번함을 시작으로 2021년과 2022년 2번함과 3번함을 전력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은 척당 1조원에 가까운 차기 잠수함 모두 9척을 국내업체 주관으로 독자 설계하고 건조하여 전력화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2007년 기본설계에 착수했으며

잠수함이 퇴역한 후 궁극적으로 214급 잠수함 9척, 3,000톤급 잠수함 9척, 500톤급 잠수함 6척 체제로 간다면 대북억제를 위한 전략자산으로 크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²⁴⁹⁾

넷째, 사단급 규모의 상륙작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은 전쟁 초기에 측방 해역을 통하여 대규모 기습 상륙을 실시하기 위해 많은 고속 상륙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바다를 전장으로 이용하지 못했던 것을 6·25전쟁 패배의 가장 큰 이유로 인식했다. 따라서 정전 후 최우선적으로 해군력을 구축하였으며 대규모 상륙기습 함정들도 이 계획의 일환이었다.

한국군 역시 이와 유사한 전쟁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군의 경험은 북한과는 달리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작전 성공의 교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기습 상륙작전이 남한의 동·서 해안에 대한 특작부대들의 산발적인 침투라고 한다면, 한국군의 상륙작전은 인천 상륙작전과 같이 대규모로 특정지역에 집중하여 적의 중심을 직접 타격하는 작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해군의 상륙돌격 능력은 시기와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북한의 전력을 해안으로 분산시키고 지속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소모전을 강요할 수 있는 중요한 억제 전력이다.

그러나 한국 해군의 상륙수송 전력은 최근 건조한 LST-II를 제외한 기존의 LST-I 들은 해안에 접안하여 장비를 양륙시키는 재래식으로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해안이동 수단인 LSF, LCU, LCM, AAV²⁵⁰⁾를 보유하고 있으나 탑재할 대

2009년 사업비는 250억원이 반영된 바 있다. 최근에는 추진체계에 원자력을 사용하여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는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SSN)’ 건조 사업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연합뉴스, 2010년 10월 1일

249) 향후 북극항로에서 우리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원자력 추진체계 잠수함이 필요하다. 러시아 쇄빙선단에서 보듯이 영하 50도를 밀도는 극지 환경속에서 원자력 추진체계는 디젤엔진 보다 강하고 지속적으로 출력을 보장한다. 원자력 잠수함은 은밀히 각종 정보를 수집하며 20노트 전후의 속력을 5시간 이상 유지할 수 있다. 백성호, “북극항로 시대 해군의 역할과 해군력 발전에 관한 연구”, 『STRATEGY 21』, 통권 35호,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p.253.

250) LSF(Landing Ship Fast, 고속상륙정), LCU(Landing Craft Utility, 상륙지원정), LCM(Landing Craft Medium, 상륙주정), AAV(Amphibious Assault Vehicle, 상륙장갑차)

형 상륙함과 척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²⁵¹⁾ 따라서 북한지역의 상륙해안으로부터 초수평선 상륙작전²⁵²⁾을 수행하기에는 제약이 많다. 한국군의 전쟁계획을 추정하지 않더라도 한국 해병대는 2개 해병사단을 전략기동군²⁵³⁾으로 유지하고 있어 이들을 현대적 기동군으로 무장시키고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군도 독자적인 사단급 상륙작전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독도함 후속사업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2007년 취역한 대형 상륙함인 독도함은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1층에 불과한 격납고 때문에 헬기와 상륙돌격장갑차를 동시에 많이 탑재할 수 없다. 독도함 후속함은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2층의 격납고를 만들어 1층에는 장갑차나 전차 같은 지상장비를 탑재하고, 2층 격납고에는 헬기와 관련시설을 탑재하여 상륙전 능력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아울러 해병대 전력을 탑재하여 적 해안에 고속으로 상륙돌격을 위해서는 위그선(WIG), 고속상륙정(LSF-II), 차기 상륙돌격장갑차(KAAAV), 상륙헬기 등의 원거리 수송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독도함급 대형 상륙함을 2척 운용하면 재해재난 등 초국가적 해양안보 위협에 따른 국제적인 해양협력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항공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

북한 해군 전력의 해상으로 우회침투를 조기 식별하고 주변국과 분쟁가능 해역에 대해 광범위한 탐색 및 해상교통로 보호, 그리고 국외에서 한국 선박의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공초계기 전력이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 해군

251) 조영주, “국가비상사태 대비 해군전력 증강방안”, 『현 안보환경과 평가와 한국 해군력 발전방향』, 제17회 함상토론회, (대전 : 해군본부, 2016), pp.131~132.

252) 초수평선 상륙작전이란 해안선에서의 가시거리 및 레이더 탐지 밖으로부터 발진되는 상륙작전을 말한다. 국방기술품질원, 앞의 책, p.914.

253) 2016년 5월 2일, 국가 전략기동부대로서 ‘제승부대’가 출정했다. 제승부대는 연대급 규모로 국지도발 대응 및 대테러 작전, 적 도발 억제 일환 무력 현시 및 증원, 대규모 재해재난 발생 시 구조 및 복구, 전시 상륙작전, 재외국민 보호 및 철수작전 등을 수행한다. 제승부대는 해병대 2개 사단의 전략기동군 개념과는 달리 해군·해병대 신속기동부대로서 필요시 육군 및 공군의 전력도 포함되는 합동부대 개념이다. 국방일보, 2016년 5월 4일.

은 성능개량형인 P-3CK를 합쳐 총 16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한반도 해역만 고려하더라도 너무나 부족한 전력이다. 예를 들면 2함대사령부 책임해역만 하더라도 남한 육지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역을 담당한다. 일본의 110여대 P-3C에 비해 매우 부족한 전력으로 해양력 비대칭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²⁵⁴ P-3C를 대량 운용하던 미국과 일본은 각각 제트엔진을 탑재한 신형 다목적 대잠항공기로 미국은 P-8A 포세이돈을²⁵⁵, 일본은 Kawasaki P-1을 개발하였다.

한국 해군도 미국 및 일본 해군처럼 다목적 해상초계기를 현 전력의 2배 이상²⁵⁶을 확보하여 향상된 대잠·대함능력과 다양한 정보·감시·정찰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SLAM-ER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도입하여 서해를 초계하는 P-3C에 장착할 필요가 있다.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공군의 F-15K 전투기가 북한이 추후 도발할 경우 도발 원점을 타격하기 위해 SLAM-ER을 장착하고 초계하고 있지만, F-15K는 P-3C에 비해 작전시간이 짧고, 서해 쪽을 상시 초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에 하푼 미사일 운용능력이 있는 P-3C가 하푼의 개조형인 SLAM-ER을 장착하고 서해를 상시초계 한다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커다란 자산이 될 것이며 도발 시에는 강력하면서도 정밀한 대응 타격을 할 수 있다.

3. 한국적 기동함대 건설

앞에서 논의한 균형적 해양 방위전략 개념에 따라 기동함대 건설이 필요하다. 한국 해군에 있어 기동함대는 일정한 해역에 대한 방어임무를 수행하는 현재의 해역함대와는 달리 융통성 있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고 해역함대가 담당하는 해역을 벗어난 확장된 해상에서 상당기간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며 북한 및 주변국 위협에 동시 대응 가능한 전력이다.²⁵⁷

254) 반길주, 『국제 현실정치의 바다전략』,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5), p.516.

255) 미 국방성의 2012년 예산안에 따르면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1대의 가격이 4억 4천만달러로 나와 있다. 따라서 제트엔진의 고정익 대잠초계기의 추가도입이나 독자 개발은 예산상의 제약이 심할 것이다.

256) 반길주, 앞의 책, p.517.

257) 『해군비전 2030(Navy vision 2030), 2012』에 ‘기동함대(Task Fleet)’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해역함대에 대비되는 대양해군의 실체로서 최소한 소형함

한국 해군의 기동함대가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당위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기동함대는 해역함대의 부족한 능력을 보완하면서 해역함대의 방어해역 밖에서 생존성을 가지고 복합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북한의 군사적 해양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북한 해군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전력이다.

둘째,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는 독도와 이어도, EEZ 경계확정 등 우리나라의 안보 위협은 바다와 연계되어 있다. 기동함대는 이러한 위협이 우리의 영해에 이르기 전 먼 바다에서 전쟁과 침략을 억제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전력이다. 예컨대 중국 또는 일본 해군이 해양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그들의 해군력을 한반도 주변 해상으로 전개 시킨다면 기동함대는 거부적 억제 전력으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한반도에 전쟁 발발 시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모함 전단이 서해와 남해에 접근한다면 우리 공군은 방어제공(DCA)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항공력은 급감하게 되며 육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CAS) 제공과 전략거점 타격 등에 집중 할 수 없어 전쟁은 더욱 길어지게 되고 군과 민간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의 접근을 거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의 최소화한 피해로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 전력은 바로 해군의 기동함대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해군의 운용영역은 한반도 주변해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소말리아 해역이나 국가관할권 외측해역의 해양자원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로부터 멀리 이격

모를 포함한 구축함급 이상 전투함과 적정수의 잠수함, 해상작전 항공기 및 기동군수 지원함 등으로 구성되어, 상당기간 동안 원해에서 독립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함대를 일컬으며, 적의 군사행동 가능성을 감소시켜 도발을 억제하고, 국지도발 시 유연하게 대응하여 확산 방지 및 유리한 조건하 분쟁의 조기 종결을 추구하여 전·평시 해군의 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함대' 라는 것이다. 또한 해군용어사전에는 기동함대란 '특정한 주요 임무 또는 계속적인 임무수행을 담당하는 함정이나 항공기로 편성된 기동지휘 조직'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 한국의 기동함대는 3개의 기동전단으로 구성되며 1개 기동전단은 이지스함 3~4척, 구축함 3~4척, 대형 상륙함 1척, 잠수함 등이 필요하다. 동아일보, "독-이어도 수호 전략함대 10년 내 만든다", 2012년 8월 31일.

된 해역에서 작전할 경우 외부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독립적으로 상당 기간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다.

넷째, 함정은 그 국가의 국력을 상징한다. 2008년 대한민국해군 국제관함식과 2009년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중국해군 창설 60주년 국제관함식, 그리고 많은 다국적 훈련에 참가하는 함정들은 그 국가의 국력을 상징한다. 한편 주변국에서 기동함대를 운영·유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다양한 위협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탈냉전 이후 책임작전 해역 등과 같은 지리적 개념보다 국가이익이 적용되는 전 세계 해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 국지전, 자연재해 등과 같은 위기상황에 맞춤형 신속대응군으로서 역할을 구현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된 것이다.

② 해상교통로 보호²⁵⁸⁾를 통한 사활적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즉 해양자원의 개발과 보호, 자국의 해상교통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동함대를 건설해 오고 있으며 이는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가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③ 연합전력 형성을 위한 상호 작전운용성(Interoperability) 증대를 위해서이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선진 해군들은 타 국가보다 먼저 기동함대 전력을 건설하여 세계 주요 관심해역에 해군력을 파견할 수 있었다. 강대국의 관심해역 내 위치하거나 인접한 국가들은 이들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고 연합전력을 형성하여 자국과 강대국의 공동 위협으로부터 대처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위해 국가 간 상호 작전운용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인접 국가가 자국의 안보를 동맹국의 해군 전력에 동참하기 위해서 상호운용성이 가능한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④ 국력과 국력의 상징을 위해서이다. 기동함대는 그것을 건설하고 운용·유지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기동함대는 그 국가의 국력의 상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중·소국가들은 경제

258) 해양영유권을 둘러싼 군사적 대립이 악화될 경우 해상양교통로가 차단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① 상대방국에 의한 기뢰 사용 및 사용위협 ② 상대방국 선박에 대한 물리적 항해 방해 및 차단 ③ 강대국의 군사적 개입 등이 예상된다.

적 부담으로 자국의 해양 안보위협 및 핵심이익의 상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대응 수단으로 기동함대를 건설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²⁵⁹⁾ 기동함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국가의 국격을 알 수 있다. 기동함대를 보유한다는 것은 세계 어느 곳이든지 파견할 자국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기동함대 전력의 일부를 특정해역에 파견하여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동함대를 확보해야 하는 당위성에 비해, 현재 한국 해군은 한국형 구축함을 전력화하면서 독립적인 원해 작전능력을 보유한 함정들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나 현재 한국 해군의 제7기동전단은 3척의 DDH-III 이지스 구축함과 6척의 DDH-II 구축함 등 총 9척 뿐이다. 하지만 여기서 청해부대 소요로 2척이 상시 빠지게 되고 해군사관학교 순항훈련이나 립콕훈련 등에 참가하면 실제 가용함정은 3~4척에 불과할 것이고, 이지스함이 호위함 없이 작전해야 할 상황도 생길 수 있다.

기동함대는 <표 5-5>와 같이 일반적인 주변국들의 기동함대의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기동함대 구성은 각 국가별로 다소 상이하며 국가별 운용 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동함대는 3개의 기동전단으로 구성된다. 하나의 기동전단은 이지스함 1척을 기함으로 하고, 구축함 2척씩, 그리고 한국형 위상배열레이더가 탑재되어 準이지스급의 성능을 보유하는 KDDX 구축함²⁶⁰⁾ 3척 등 총 6척의 구축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적 기동함대는 해역이 넓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신속하게 집결 할 수 있기 때문에 총 전력은 부족하더라도 18척 정도의 구축함으로 만든 기동함대라면 충분한 억제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18척의 구축함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259) 전창빈, 앞의 글, p.149.

260) 전자식 위상배열레이더를 탑재하여 이지스함 정도의 교전 능력을 보유하고, 저주파 소나를 장착하여 대잠 탐지능력을 극대화 하고, 최소 64cell의 한국형 VLS를 탑재하여 32발 정도의 SM-2급 대공미사일, 8발 정도의 홍상어, 24발 정도의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장착하고 8~16발의 해성 함대함미사일을 탑재하여 대공·대잠·대지·대수상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함정이어야 한다.

<표 5-5> 일반적인 기동함대 구성 예시

구 분	구 성 합 정
미 국 (항모강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IMITZ급 원자력 항모(CVN) : 1척 • Ticonderoga급 순양함(CG) : 1척 • ArleighBurke급 구축함(DDG) : 2척 • LosAngeles급 공격원잠(SSN) : 1척 • Supply급 보급함(T-AOE) : 1척
중 국 (항모전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모(바라크) : 1척 • 투하이급 구축함 : 2척 • 란저우급 구축함 : 2척 • 군수지원함 : 1척 • 광저우급 구축함 : 2척 • 054급 호위함 : 2척 • 원자력 추진 공격원잠 : 2척
일 본 (기동함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기탑재 호위함 : 1척 • DD : 5척 • 이지스함(DDG) : 2척 • DDH : 1척

* 출처 : 안병준, 앞의 글, p.123.

4. 적정수준의 해군병력 확보

한국군은 향후 상비병력 규모를 감축하되 중장기 복무 간부를 확충하는 등 간부의 구성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병력 수는 줄지만, 전투력은 강화된 병력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해군병력은 전혀 변함이 없다. 『2014 국방백서』에 의하면 우리 군의 상비 병력은 63만 3,000명 규모다. 이 중 육군은 국방개혁에 따라 49만 8,000명에서 38만 7,000명으로 줄고 해·공군, 해병대 병력은 현재 규모를 유지할 예정이다.

해군의 병력은 현재 4만 1,000여명인데 필요 인원의 70% 정도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군은 육군이나 공군처럼 주둔지 개념이 아닌 24시간 계속 함정을 타고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장교와 부사관, 병사 모두 실제 함정을 타고 해상 전투를 수행하는 전투원이다. 함정 근무 장병이 모자라 해군 자체적으로 최대한 병력을 짜내 자구책을 강구, 병력 3,500여명을 자체 충원한 것으로 알려졌다.²⁶¹⁾

261) 아시아투데이, “해군 병력 4000여명 충원 시급하다”, 2014년 3월 26일

국방개혁 계획에 따르면 한국해군은 2023~2027년 7400t급의 이지스 구축함 3척을 추가로 건조하고 3000t급 잠수함도 전력화 예정이다. 이 계획대로 진행 된다면 해군병력은 더 부족해진다. 2030년 기준으로 해군전력을 보강하게 되면 육상부대 260여명, 부대창설에 따른 병력 2,200여명, 특수작전부대(UDT, SSU) 570여명 등 3,100여명의 병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²⁶²⁾ 또한 앞에서 언급한 2011년 말 방사청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동함대 창설과 병행하여 해군 병력 6,100여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해군은 턱없이 부족한 해군병력으로 제대로 된 휴식 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병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함정 건조를 늦추고 육상부대 병력을 줄여서 재배치하고 있고 이마저도 한계에 이르러 부대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²⁶³⁾

따라서 점증하는 해양안보 위협에 대비하고 해군의 역할 및 운용영역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부족한 해군 병력을 조속히 충원해야 한다. 국방개혁에 병력 감축이 포함되어 있지만 해군 병력의 경우 전투력 유지를 위해 증강이 필수적이다.

제4절 해군의 역할 확대 및 운용영역 확장 방안

앞에서 기술한 ‘균형적 해양 방위전략’과 연계하여 한국 해군의 역할 확대 및 운용영역 확장 방안을 제시한다.

1. 해군의 역할 확대

해군은 탁월한 기동성, 전술적 유연성, 범세계적 접근성으로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유용한 국가의 정책수단이다. 한국 해군은 연안방어 위주의 작전에서 1990년대 이후 해군력 현대화를 통해 연근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군으로 성장해 왔으며 국제적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다국적군 작전에도 참여하고 있다.

262) 아시아경제, 해군함정 ‘늘지만’ 해군병력은 ‘그대로’, 2014년 3월 7일

263) 국방일보, “해군창설 70주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2015년 11월 10일

해군 기본교리에 따르면 한국 해군의 역할은 평시에는 전쟁억제, 국가주권 및 해양권익보호, 국가정책 지원 및 국위선양이며 전시에는 해양통제, 전력투사, 해상교통로 보호이다.²⁶⁴⁾ 하지만 이는 주로 북한 해군에 대응하고 국제적인 해군협력 위한 위주의 역할이고, 동아시아의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동아시아의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이 상존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 해군의 역할은 좀 더 확대해야 한다. 즉 전·평시 구분 없이 해양에서 우리의 주권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을 상황에서는 군사적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고, 비군사적 해양안보 위협에서는 해양관련 국가조직이 통합된 상태에서 비군사적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해군이 추가적으로 수행할 역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평화통일 핵심군의 역할 수행이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 결정적인 관건이므로 해군은 평화통일을 논의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을 보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즉 한반도의 화약고인 NLL에서 북한의 군사적 해양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은 해군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북한이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갈등과 위협의 수준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고자 할 경우, 이를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합의와 조치는 해상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상에서의 신뢰구축 부터, 군비통제로 까지 평화통일 논의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해군의 역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의 급변사태 통제의 핵심 역할 수행이다.

북한 정권의 붕괴 등 정치적 불안정성이 극대화될 경우에 이러한 불안정성이 북한 외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해군은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 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북한이 보유한 다량의 WMD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되거나 해상 등을 통해 해외로 유출되어 극단적인 성향을 지닌 테러집단에게 유입되는 상황이다.²⁶⁵⁾ 또한 다수의

264) 해군본부, 『해군기본교리』, (대전 : 해군본부, 2007), p.2~14.

북한 주민이 해상을 통해 제3국으로 이동하거나 해상 난민이 되는 경우, 북한 지도부가 해상을 통해 제3국으로 도피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면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한반도 전 해역에 걸친 안정적인 해양통제권 확보는 우리의 국가안보에 사활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해군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동아시아의 초국가적 해양안보 위협 대응의 주도적 역할 수행이다.

해적사건 발생 시 현재는 외교부 예하에 비상대책 위원회가 가동되고 해적과 관련된 정부부처 등이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적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들이 분산되어 있다. 그리고 해상테러의 경우 현재의 대응체계에서는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장)가 해상테러대책본부장이 되어 업무를 수행한다. 이는 한국의 연·근해에서 발생하는 해상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으로 한정되어 있어 동아시아의 해상교통로상에서 해상테러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응과정에서 많은 혼선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말라카 해협 등 중요한 해상교통로상의 해양안보 위협 상황에서는 정부 주무부처의 지침에 따라 한국 해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동아시아 해역에서 발생하는 대형 재해재난은 국방부의 지침에 따라 지원하고, 해양오염²⁶⁶⁾은 해양수산부와 국방부의 협의에 따라 적극 지원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다만 국내 연안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 사고 발생시는 자치단체 또는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의 지침에 따라 해군이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²⁶⁷⁾

넷째, 대륙붕 및 국가관할권 외측해역에서의 해양자원 개발활동 보호 역할 수행이다.

일반적으로 해양자원이란 해양으로부터 이용·개발이 가능한 자원으로 해양생

265) The U.S. Joint Chiefs of Staff, *The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5*, (June 2015), pp.11-12.

266) 해양오염의 예를 들면 서해는 남북한과 중국의 연안개발계획, 강이나 하천의 오염, 쓰레기 해양투기, 그리고 유류유출 등에 의해 오염도가 심각하다.

267) 해양오염과 관련된 국내법은 해양수산부 소관의 「해양환경관리법」(2007.1.19. 제정, 법률 제 8260호)이 있다. 이에 따라 해군의 국외 해양오염 지원은 해양수산부와 국방부의 협의에 따라 수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안방제 책임기관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 및 방제장비, 전문성 등 미흡으로 유류 오염 시 실질적인 대응이 곤란하다. 목진용, “우리나라 해양방제체계 개편방안”, 해양환경안전학회 추계학술발표회 자료, (목포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9), p.25.

물자원, 해양광물자원, 해양에너지자원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다만, 협의의 의미에서 해양자원은 석유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과 광물자원, 생물자원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해양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동북아에서 이들 자원 확보를 둘러싼 갈등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해양자원에 대한 각국의 접근이 관할권 내측에서는 ‘해양영토’, 관할권 외측에서는 ‘해양경제영토’의 개념을 적용하여 강한 갈등요소를 내포하고 있다.²⁶⁸⁾

우리나라의 대륙붕 제 7광구는 경제적 가치 587조원에 이르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원유는 미국 전체 매장량의 4.5배인 1,000억 배럴에 달하며, 천연가스는 약 175조~210조 입방 피트로 추정된다.²⁶⁹⁾

국가관할권 외측해역에서의 해양자원에는 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망간각 외에 석유와 가스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동태평양 클라리온-클리퍼톤 균열대 지역에 남한의 3/4에 해당하는 75,000km² 단독광구를 확보하고 약 4만km²의 경제성 있는 우선 채광지역 선정을 완료하였다. 망간단괴 개발을 통해 연간 약 300만톤 생산 시 100년간 연 15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²⁷⁰⁾ 2008년에는 남태평양 통가왕국에서 해저열수광상²⁷¹⁾ 탐사광구 약 2만 4,000km²를 확보한바 있으며, 2011년에는 남태평양 피지의 EEZ 내 약 3,000km²의 해저열수광상 탐사광구를 확보하였다.

현재, 대륙붕은 일본과의 공동개발 조항으로 인해 개발을 못하고 있고, 국가관할권 외측 해역의 심해저 자원도 채굴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이익의 실감을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상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 등으로 점차 바다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대륙붕 및 국가관할권 외측해역에서의 심해저는 자원의 빈국인 우리나라에게는 새로운 자원 공급원 창출을 위한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국가이익 보장을 위해 해군은 해양자원 보호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268) 양희철, 앞의 글, p.25.

269) 머니워크, “원유·천연가스 문헌 대륙붕 7광구.. 13년후에는 일본땅 될 가능성”, 2016년 5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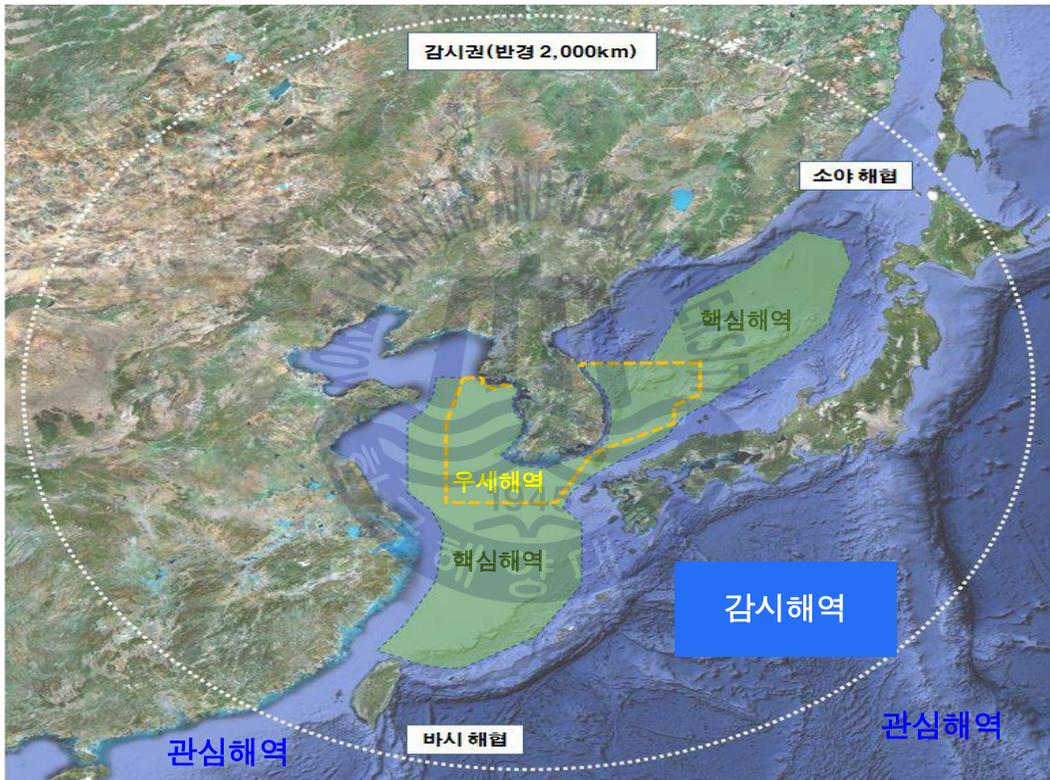
270) 양희철, 앞의 글, p.26.

271) 열수(熱水)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광상, 마그마가 식을 때 생기는 열수가 지하 암석의 틈을 타고 상승하는 동안 열수에 녹아있던 금, 은, 구리 등의 유용광물이 침전하여 만들어 진다. 뉴턴코리아, 과학용어사전(2010)

2. 해군의 운용영역 확장

해군의 역할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한국 해군의 운용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이에 연구자는 <그림 5-1>과 같이 한국 해군의 운용영역을 우세해역, 핵심해역, 감시해역, 관심해역으로 설정하고 각 해역에 대한 해군력 운용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²⁷²⁾

<그림 5-1> 해군력 운용영역



먼저 우세해역은 현재 작전구역과 같은 크기이며 2013년 12월 선포된 제주도 남방의 이어도까지 확대된 새로운 KADIZ를 포함한다. 우세해역에서는 평시 북

272) 국방연구원의 심경욱 박사는 21세기 안보의 화두인 에너지, 자원, 수송안보의 비중 증대를 강조하며 한국 해군의 활동해역과 관련하여 관심권, 감시권, 거부권 대상지역에 대한 재설정 필요를 언급한 바 있다. 심경욱, “국가안보 차원에서 본 기후 변화와 한국 해군의 대응”, (해군 작전사 발표자료, 2013년 4월).

한의 군사적 해양 도발을 억제한다. 북한이 침략시에는 이를 조기에 격퇴하고 지상 및 공중전력과 합동작전으로 작전구역에 대한 해양통제를 장악하며 북한 지역으로 전력을 투사하여 합동군사 전역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아울러 주변국의 해군력을 감시한다. 만약, 분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변국 해군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 해군은 신속히 현장으로 이동하여 적극 대응하고 우세 해역에서 영해내로 진입하기 전에 격퇴한다.

핵심해역은 국제적으로 한국의 배타적 권리를 향유하고 해양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해역으로 중국과 일본 간 분쟁지역인 센카쿠 열도와 동중국해 가스전이 포함된 해역이다. 이 해역에서 한국 해군은 주변국의 군사적 해양안보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제주 해군기지에 배치된 제7기동전단을 집중 운용한다. 이를 통해 주변국의 위협 및 분쟁 도발 징후를 감시·정찰하고, 도발 징후 포착 시 즉각 경고하여 분쟁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보장한다. 또한 이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적, 해상테러, 대규모 자연재해 등 비군사적 해양안보 위협 상황에 따라 필요 전력을 차출하여, 국제적 해양협력 공조체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을 수행한다.

감시해역은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2,000km내의 해역으로 중국의 제1도련선과 일본의 1,000해리 해상방위권과 중첩되며 북으로는 쑤야 해협으로부터 남으로는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바시 해협을 포함하는 해역이다. 이 해역은 분쟁해역인 남·동 중국해가 포함되고 한국의 주요 해상교통로가 위치한 해역이므로 한국 해군은 필요시 우리나라의 선박 보호 활동을 수행한다. 아울러 핵심해역과 마찬가지로 비군사적 해양안보 위협 상황에 따라 필요 전력을 차출하여, 국제적 해양협력을 수행한다.

관심해역은 쑤야 해협이 시작되는 일본 북부부터 말라카 해협이 끝나는 인도양 초입까지의 동아시아 전 지역을 포함하는 해역으로 기동함대 건설이 완비되는 2030년대까지 한국 해군의 역할과 능력이 더욱 확장되어야 할 해역이다. 일본의 남서제도 중심의 2,000해리 해상교통로와 중국의 2도련선을 포함하며 한국 국가생존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서남항로대가 위치한 해역으로 미래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의 주요 해양개발 구역권 뿐만 아니라

남극 및 북극해²⁷³⁾를 포함해 한국의 미래 국가이익이 존재하는 전 해양이 관심 해역에 속한다. 관심해역에서 한국 해군은 주요 항로대 선박호송과 원양어업 보호, 해양자원 개발 보장과 항로 개척 지원 등 국가 해양경제활동 보호 등을 수행해야 한다.

상술한 한국 해군의 역할 확대 및 운용영역 확장방안을 현 해군 군사기본교리 상 해군의 역할과 종합하면 <표 5-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5-6> 한국 해군의 역할 및 운용영역

구 분	해군의 역할	운용영역
군사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평화통일 핵심군 ○ 북한 급변사태 통제 및 북한·주변국 도발억제 ○ 전시 북한 지역으로 전력투사 및 해상교통로 보호로 전쟁지속 능력 보장 ○ 우세해역 해양통제 ○ 해상교통로 상 해양안보 위협 대응 주도 ○ 국가 해양경제활동 지원 ○ 비군사적 해양안보 위협 발생 시 적극지원 	우세해역 (핵심해역)
비군사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민 지원 및 국내·외 재난 대응 ○ 해군외교 및 평화작전 수행 등으로 국위선양 ○ 해군에 부여되는 국가정책 지원 ○ 대륙붕 및 국가관할권 외측해역에서의 해양자원 보호 	감시해역 (관심해역)

273)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1906~2006년 사이 불과 69척에 이르던 북극해 운항 선박의 수가 2011년에만 24척이 통과했으며 부분적으로 북극해를 이용하는 선박은 약 6,000척에 이른다. 2012년 북극항로를 통과한 선박은 46척이었으며 2014년에는 100여척을 넘어서는 등 그 수는 증가일로에 있으며 현재 가장 많이 수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은 석유이다. 2012년 북극항로를 이용한 선박 중 한국을 출발한 선박은 10척으로 가스 및 철광석을 운송하였고 러시아 무르만스크에서 인천항과 대산항으로 7척의 선박이 가스 및 제트유를 운송하였다. 정태권, “북극해 항로개발의 현황과 과제”, 제7회 세계해양포럼, 2013년 9월 11일

제5절 해양안보 협력 강화방안

1. 해군·해경 간 협력체계 강화

해양법의 발전은 해양질서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히 발전된 법적인 지침들을 제공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상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한 신축적이고,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어려움은 재판권만큼이나 이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이다.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관할해역이 늘어나고, 각종 국내법과 국제법이 제정될 때 마다 해양에서 이를 집행해야 할 해군과 해경의 업무도 증가한다. 이에 따라 해양질서의 유지에 책임이 있는 해군과 해경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지금 당장 높은 수준의 협력을 추진하기에는 제약이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바다의 영유권 및 관할권과 관련한 경계획정 분쟁, 긴급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안전역량,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 외교적인 문제까지를 고려한 효과적인 단속, 해상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²⁷⁴⁾ 등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해군과 해경간의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부(해군) 및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의 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해군은 국군조직법, 해경은 정부조직법을 따르고 있어 동일한 법률의 반영이 제한되므로 해군과 해경이 공통적으로 따르고 있는 통합방위법과 수난구호법을 일부 개정하여 공통성과 상호 운용성 증진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아가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함으로써 통합방위지침(대통령 훈령 28호) 등 세부 시행지침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²⁷⁵⁾

274) 이서향, “해군·해경간 상호 운용성 증진 세미나 개회사”, 『해군·해경간 상호 운용성 증진 세미나 발표논문집』, (대전 : 해군본부, 2015), p.2-2.

275) 조영주, 앞의 글, p.143.

둘째, 해군 및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실질적인 협동시스템 완비가 시급하다. 현재 해군과 해양경비안전본부간에는 지휘통제체계가 제한되고 합동 통신망외 암호 통신망도 없으며, 음성 통신망은 도달 거리에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위성을 이용한 실시간 문자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작전보안을 유지하며, 통신 가능거리 제한을 극복할 수 있어서 해군과 해경간의 효율적인 정보공유와 지휘통제가 가능하다. 또한 해군과 해경 지휘소 및 지휘함에 화상회의 체계를 구축하여 실시간 상황을 공유해야 한다.

셋째, 국방부(해군)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해양과 관련된 유관기관들과 함께 가칭 해양작전센터(MOC : Maritime Operation Center)²⁷⁶⁾를 설립하여 한국의 선박과 함정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해양에서 주권이 침해 받거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시는 유관기관에 의한 통합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해상에서 선의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의 연안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역의 해상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해양안전종합정보망(GICOMS : General Information Center on Maritime Safety and Security)을 해군의 전술지휘통제체계(KNTDS : Korea Naval Tactical Data System) 및 국가정보망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면 필요한 정보를 동시적·통합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²⁷⁷⁾

넷째, 상호 협력적 조직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해경과 해군은 해양에서 국익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조직이다. 국가조직을 구분하여 설치하는 목적은 국가 업무 수행 효율성의 극대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업무의 중복은 최대한 지향하고 업무 공백영역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해양에서는 이해관계를 불문하고 위기에 처한 선박에 도움을 제공하는 상호 협력은 오랜 전통이고 상식이며

276) 미국의 해양작전센터(maritime operation center, 이하 MOC)는 국방부, 국무부, 국토부, 국가정보부처 등 미 정부조직간 관련부서 및 해양안보에 중요한 민간부문에서 협조와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MOC는 수상전력을 지휘 통제하는 역할이 아닌 해양안보, 전력투사 시 중요하고 다양한 정보작전을 지원한다.

277) 신강석, 앞의 글, p.119.

문화로 정착되어 왔다. 따라서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은 필수적이므로 상호 존중하고 조직문화의 이해를 바탕으로 윈-윈 하는 협력조직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해군과 해군의 합동 교육 및 군수지원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현재 해경에서 함정을 건조할 때 전시 임무 수행을 고려하지 않아서 무장, 탐지체계와 군수장비 탑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군수물자 표준화도 미흡한 상황으로 양기관간 합동 교리 및 교범이 없고 합동훈련 기회도 부족한 실정이다.²⁷⁸⁾ 해양재난 현장에서 협력은 대부분 엄중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며, 순간의 판단 실수나 잘못된 행동은 막대한 재해를 초래한다.

따라서 원활한 합동작전을 위해서는 사전에 필요한 전술·전기·절차를 공유하고 합동 교리와 교범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해야 하며, 함정 수리 등 군수지원 체계의 협업도 강화해야 한다. 간단히 정리하면 미 해군의 국가함대 개념²⁷⁹⁾을 벤치마킹 하여 해군-해경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역내 국가간 국제적 해양안보 협력 증진

동아시아 해양은 역내 국가들과 지역에게 풍부한 자원과 경제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해양분쟁, 해양오염, 해양교통로 확보, 해군력 증강과 현대화를 둘러싼 문제로 협력과 갈등이 동전의 양면처럼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 위협을 극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다차원적인 해양안보의 중요성의 인식이 역내 국가들 사이에 공유되어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외교와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여 관련 국가간 해양분쟁의 리스크를 줄이고 동아시아 해양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각국들과 해양 및 해군협력은 이러한 정책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동아시아 해양의 비중이 크고 지역의 정치적·

278) 문화일보, “미국의 국가함대 개념, 한 해군-해경 협력 시사점 될 것”, 2015년 9월 19일

279) 폴 주쿠프트 미국 해양경비사령관은 2015년 9월15일, 한국 해군-해경 세미나에서 ‘미국은 1998년 국가함대(National Fleet) 개념을 도입, 해양에서 최고도의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해군과 해양경비대(한국의 해양경찰에 해당)가 마약퇴치, 기름 유출 사고, 대형선박사고와 해안경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치화·동시화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며 상호 운용성과 공통성을 추구하고 있다’ 고 말했다.

경제적·군사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해양협력과 해군협력은 더욱 유기적으로 발전되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아직은 해군력을 대립과 대결의 기구로 인식하는 냉전식의 사고가 남아 있지만, 해양 및 해군협력의 활성화는 해양안보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해양협력 증진 방안을 제시한다.

가. 위기상황 공동대응 공감대 형성

동아시아 해양안보 문제는 본질적으로 유동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해양협력은 우선적으로 충돌을 방지하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해양에서 한국 해군과 주변국 해군 간 상호 우발사태 및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만약 해상 우발상황이 발생하면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상호 다양한 대화와 협의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해군은 중국, 일본, 러시아 해군과 긴밀한 핫라인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아울러 민감한 해역에 대해 우발사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서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해양안보 관련 한국 해군과 중국 해군 간 공동연구 수행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해상작전 차원에서의 위기관리와 신뢰구축 조치²⁸⁰⁾를 위한 핫라인과 같은 대화와 협의채널을 구축시키는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 중국이 전략적 가치를 들어 민감해 하는 서해에서의 한·중 양자 간 해양협력 체계 정립도 시급하다. 이를 위한 양국 간 “해양전문가 협의체” 실무회의 구성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각 국가 간에도 상호 오해를 줄이고 해양위기 관리 및 신뢰구축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 국가들은 유엔해양법협약 아래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무

280) 신뢰구축 조치란 구조적 및 운용적 군비통제의 방식으로 그 개념은 1970년대부터 발전 되어왔다. 1973~75년에 개최된 헬싱키-제네바 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신뢰구축 조치는 일반적으로 군축의 전조과정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외교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성숙시키는 사전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갈등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강화시킴으로써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주로 안보 및 군사 분야와 연계되어 논의되고 있지만 경제 및 문화 같은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는 보다 포괄적인 수단으로도 발전되어 왔다. 박성용, “동북아시아 해양안보환경과 해양신뢰구축에서 한국의 역할”, 『한국 동북아논총』, 76호, (서울 : 한국동북아 학회, 2015), pp.8~9.

엇인지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즉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우발적 사태의 방지 및 회피에 주 목적을 둔 ‘해양위기 관리체계’의 구축과 긴장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오해 및 오판 가능성을 줄이고 평화 및 안보 강화에 목적을 둔 ‘해양 신뢰구축조치’ 실행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이다.²⁸¹⁾

특히 한·중·일 3국간에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동북아 지역의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공동이해 관계가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 역내 국가들과 함께 민간수준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3국간의 군사적 갈등 예방을 위한 군사교류 협력증대의 일환으로 한·중·일 외교장관 및 국방장관회담(3+3)의 정례화 등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또한 중·일간의 충돌이 한국에 전이 되지 않도록 다각적 분야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된다.

나. 역내 국가들과 해양안보 협력 강화

동아시아는 유럽지역에 비해 다자안보의 프레임워크가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자·양자간 해양안보의 중요성의 인식이 역내 국가들 사이에 공유되어 협력이 활성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즉 <표 5-7>과 같이 90년대 이후 몇 가지 다자간 안보협의체가 창설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안보협력 및 해양협력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1993년 창설된 아세안지역포럼(ARF)은 역내 국가의 안보정책 결정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지역내 안보이슈들을 논의하는 다자간 안보대화의 장으로 기능해 왔다.

281) 해양위기관리체계 구축에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은 ① 관련국 해군사령부 간 ‘핫라인’ 또는 직접통신체계 구축 ② 해양안보 문제 논의 전략 대화 시행 ③ 충돌방지를 위한 표준 함정 운용 절차 규정 채택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해양신뢰구축 조치’로는 ① 함정 상호방문 ② 해적, 재난구조 등 초국경적 의제에 대한 실제적 협력 ③ 공해상 순시 및 정보공유 ④ 다자간 해군 회의 및 훈련 참가 등을 들 수 있다. 이서항, “동아시아 해양분쟁과 지역 평화 구축의 길”, 『옥포지』, 105호, (서울 :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 2016). p.36.

<표 5-7> 아시아 지역 다국적 안보 협의체

구 분	창립배경	참가국
아세아 역내 안보 포럼 (AR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4년 아태지역 신뢰구축 목적달성으로 창설, 외교부 및 국방부 장관급 참가 • 국방대학총장 회의 국방 관련 워크숍 별도 개최 	인니, 말련 등 ASEAN 10개국 한, 중, 일 등 대화상대 10개국 EU 기타 3개 등 23개국 참가(북한은 '00년 가입)
아태안보 협력회의 (CSC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4년 ARF의 Think-tank로 설립 • 학자, 전문가, 전직관료 등 민간 차원의 대표적 안보 협의체 	남북한, 미, 일, 러, 호주 등 20개국
아시아 안보회의 (Shanri-La Dialog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영국 IISS 주관, 아태 지역 국방장관회의를 목표로 창설 • 고위 국방인사, 국회의원, 방산업체 인사 참석 	한, 미, 일, 영, 프, 인도, 인니, 말련 등 20개국
동아시아포럼 (EAF, East Asia For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한국에서 창설 • 관·산·학이 참여하는 협력체 • 전직 정상, 현직 외교 고위관료, 기업인 참여 	한, 중, 일, ASEAN 10개국 등 13개국
제주평화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 한국에서 창설 • 전직고위관료, 학자 초청 	한, 미, 중, 일, 러 등 동북아 지역 망라

* 출처 : 김덕기, “한국해군의 해상교통로 보호방안” , 제1회 해양전략 심포지움, 2004년 5월, p.38.

이밖에 역내 국가들의 국방부 장관이나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정례적인 회의 체로서는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주최하고 일본 아사히 신문사가 후원하여 싱가포르에서 매년 개최되는 아시아안보회의, ARF 회의의 일환으로 열리는 아시아 국방장관 회의나 일본 방위성이 주최하여 매년 개최되는 동경 디펜스포

럼 등이 개최되고 있다.²⁸²⁾ 역내 다자간 해양안보 협력의 증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우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각국 해군대표들로 개최되는 각종 심포지움에도 적극 참가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해양안보 및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움(WPNS)은 1988년부터 2년 주기로 각국 해군이 순번제로 개최중이며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참가하고 있다.²⁸³⁾ 특히 한국 해군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한국해로연구회가 공동 개최하는 국제해양력 심포지움²⁸⁴⁾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만큼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양자간 협력메커니즘으로 발전시킨 사례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사이에는 2006년부터 협력을 위한 대화가 실시되고 있다. 민간차원의 대화라는 한계를 안고 있지만 2007년 동경에서 열린 제2차 일본·인도네시아의 대화에는 해상치안기관 및 정부기관의 담당자가 함께 참가하여 상호 이해와 문제해결을 향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²⁸⁵⁾ 이러한 양국 간 대화가 진척되어 보다 폭넓은 정부차원에서의 대화로 진행되고 한국, 중국, 미국까지 그 대화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국제적 해군 협력 및 외교활동 강화

지난 수년간 역내 국가들이 해군력 증강을 추진해 온 추세를 감안할 때, 해양안보 증진을 위한 신뢰구축 조치로서 해군협력(naval cooperation)이 중요함

282) 박영준, “역내 해양협력 및 신뢰증진을 위한 한국 해군의 기여방안”, 『STRATEGY 21』, 통권 30호,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2), p.169.

283)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움은 서태평양 지역 해양안보 및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로 해양 환경, 해적, 해상테러, 해상교통로 보호 등을 협의한다. 해군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종합.

284) 2015년 국제해양력 심포지움에서 한국 해군 참모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대형 재난 등 비군사적이고 초국가적인 위협이 증가하여 동아시아 해양안보의 불안정성과 위협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번 심포지움이 동아시아 바다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하였다. 아시아투데이, “해군, 제12회 국제해양력 심포지움 부산서 개최”, 2015년 10월 19일.

285) 해양정책 연구재단의 보고서, 『일본과 인도네시아와의 해양 안전보장 대화』, 2007년 1월 참조.

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해군은 그 성격상 다른 지역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등 활동영역이 국제적이며 다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국가간 대화와 협력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²⁸⁶⁾ 해양안보 증진을 위해 특별히 해군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대체로 첫째, 역내 해군간 신뢰구축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둘째, 해군협력을 통한 협력적 구조의 유지는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대화·통신채널을 제공할 수 있고, 셋째, 이른바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군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군 병력 구조(naval force structure) 및 지휘기구(command organization), 함정훈련의 일정표(fleet schedule), 함정건조 계획표(shipbuilding programs) 등에 관한 정보자료 교환과 해군인사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국가간 신뢰구축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기단계 조치이며 이를 바탕으로 더 높은 단계의 신뢰구축 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자료 교환은 상호 의심 및 오해를 제거하여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해군력 군비경쟁을 방지하는데 공헌할 수 있다.²⁸⁷⁾

현재 한국 해군은 일본 및 중국 해군과 긴밀한 실질적인 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한·일, 한·중 해군 참모총장(중국 사령원, 일본 해막장) 간 상호 방문을 실시하는 등 고위급 인적교류를 적극화하고 있다.

해군은 작전부대 간 교류로서 일본과는 1함대와 마이즈루 지방대, 3함대와 사세보 지방대, 그리고 중국과는 2함대-북해함대, 3함대-동해함대의 교류를 실시하고 있고 함정 방문도 빈번히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2000년 한국 해군 작전사령부와 일본 해상막료감부, 2007년 한국 해군

286) 해군협력의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해군은 2011년 7월, 미국 필렌 합참의장과 중국 천빙더 인민해방군 총참모장간 회담을 통해 2011년도 소말리아 해역에서 양국 해군이 공동으로 해적 대처훈련 실시를 합의하였고, 2012년에는 재해구난 등의 인도적 목적하에 연합훈련 실시와 우발적 해상충돌에 대비한 양국간 핫라인 구축을 합의하였다. 일본과 중국해군은 2009년 11월 양국 국방장관은 함정 상호방문의 계속 실시, 해상수색구난 공동훈련 실시 등을 합의 하였다. 박영준, “동아시아 해양안보의 현황과 다자간 해양협력방안”, 『JPI 정책포럼』 (제주 : 제주평화연구원, 2012), p.18.

287) 이서항, “아·태지역 해양문제와 지역안보”, 『정책연구시리즈』, (서울 : 외교안보연구원, 1999), p.35.

2함대와 중국 북해 함대 간 직통전화를 설치하여 상호 연락체제를 유지하고 있다.²⁸⁸⁾ 또한 연합훈련을 통해 해군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일 해군 간 수색 및 구조훈련은 2009년부터 격년제로 시행중이고, 한·중 해군 간 서해상 수색 및 구조훈련은 비 정례적으로 시행중이나 이를 한·중·일 3국이 모두 참가하는 훈련으로 확대 발전시켜 3국 해군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과 중국의 해군은 2006년 9월 최초로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연합 수색 및 구조 훈련을 실시하였다.²⁸⁹⁾

중국 봉쇄론과 미국 견제론을 주장했던 미·중의 해군 연합훈련은 해군협력을 통해서 국가 교류와 신뢰를 증진시키고, 동아시아 해양안보 협력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역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역사적 경험 때문에 군사적 관계에는 극히 신중했던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연합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은 해군협력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큰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양국 및 다국간 해군협력 메커니즘의 현실성을 고조시키기 위해서는 협력에 대한 작전범위를 폭넓게 할 필요가 있다. 즉 연안국의 해군과 이용국의 해군에 의한 협력 작전은 그 목적을 해적대책만으로 한정시키고 있어 보다 폭넓은 분야까지 망라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국가 간 군사외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는 대표적으로 방산협력과 군 인사교류, 다자간 연합훈련 등을 통한 협력활동을 강화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중 동아시아의 다자간 연합훈련은 림팩훈련과 코브라 훈련이 있다.

림팩훈련은 구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미 해군을 중심으로 서방국가들 해군의 상호 운영성을 높이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다. 냉전 이후에는 연습의 성격도 변화해서 군사적인 것에서 해적의 소탕 등 비군사적 활동과 인도주의적 활동(수색, 구난, 비전투원피난작전, 재해원조, 난민원조 등)이 주제가 되고 있고 한국 해군도 적극 참가하고 있다. 코브라 훈련은 1982년 미국과 태국의 연합군사 훈련으로 시작됐으며 한국·미국·태국·일본·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

288) 박창권, “한·중·일 안보협력의 여건과 향후 발전방향”, 『국방정책연구』, 제31권 제2호, 통권 제108호,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15), p.22.

289) 해군본부, 정책실 자료(2014)

아가 직접 참가하고 몽고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3개국이 옵서버로 참가하고 있다. 이 훈련은 이전의 군사훈련 중심을 벗어나 해적, 반군 및 테러, 해상난민,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 안보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구호활동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동아시아 해군간 상호 방문 역시 해군 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국제정치 현실에서 잠재적인 적국으로서 이전부터 대립 관계에 있었던 미국과 러시아, 러시아와 일본의 함정이 상호 방문을 한다는 것은 커다란 변화를 의미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현재 우리와 군사외교 활동이 가장 활발한 국가는 미국과 일본이며 중국과도 지속적인 군 인사교류 등을 통해 군사외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 안보구도 변화의 실질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해군외교 활동을 유연성 있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들은 방산외교를 더욱 강화하여 해군간 우호유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상술한바와 같이 해양 및 해군협력을 종합하면 해군협력보다 넓은 관념인 해양협력은 반드시 해군력을 둘러싼 적용과 의도 문제에 직접 대응하는 것은 아니며 상호 배타적이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제6절 소결론

해양안보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그 중요성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인식하고, 적극적이며 포괄적인 국가안보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즉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해양안보 위협과 도전요소를 재평가하고 위협의 우선순위를 평가해야 한다. 해양이 한반도의 지리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하는 수단임과 미래 국가발전의 유일한 전략적 생존공간임을 인식하여 국가안보 전략의 중심을 해양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해양안보 전략이 절실한 가운데 한국 해군도 동아시아의 해양안보 위협의 영향으로 국가중심적인 임무에 부가하여 다중심적

인 임무를 함께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해양전략 발전이 시급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해군의 해양전략으로 '균형적 해양 방위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전략은 동아시아의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해양통제, 해양전제, 해양협력 전략을 구사하는 맞춤형 전략이다. '균형적 해양 방위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해군 전력은 역사적 사실과 방위충분성의 이론 및 국회의 결정에 근거하되, 우리의 경제여건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대북 전력은 독자적인 억제전력을 구축하고 대주변국 전력은 일본 해상자위대 대비 70% 수준으로 확보를 목표로 기동함대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균형적 해양 방위전략'과 연계하여 한국 해군의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 전·평시 구분 없이 해양에서 우리의 주권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을 상황에서는 군사적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초국가적 해양안보 위협 상황에서는 해군, 국민안전처 등 해양관련 국가조직이 통합된 상태에서 비군사적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한 함정 및 항공기의 정상적 운용을 위해 부족한 해군 병력도 조속히 충원해야 한다.

더불어 해군과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양 기관의 합동 교육 및 군수지원 체계를 정립하는 등 미국의 '국가함대' 처럼 긴밀한 협조체제로 발전시키고 정부차원의 해양작전 및 정보운용을 위한 통합적 기구 창설 등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국가간 해양분쟁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동아시아 각국들과 해양안보 위기상황에 대한 공동대응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적인 해양협력도 강화해야 할 것이며, 한국 해군의 외교활동도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

제 6 장 결 론

해양은 인류에게 남은 마지막 자원의 보고로서 국가간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각축장이 되고 있으며 동아시아 해양도 예외가 아니다. 즉, 남중국해에서는 남사군도와 서사군도를 둘러싼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간의 도서영유권 분쟁, 동중국해에서는 센카쿠 열도 및 자원개발 문제로 일본과 중국 간의 심각한 분쟁 등이 있다. 아울러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문제와 한·중 간에는 이어도 주변해역의 관할권 이권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동아시아의 해양분쟁은 분쟁 당사국의 굴절된 과거사로 인해 민족주의적 국민감정까지 포함되어 있어 우발적인 무력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해역에서는 해적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해상테러의 가능성이 높게 예견되고 있으며 자연재해, 해양오염, 불법어로 등도 발생하고 있어 동아시아의 해양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취약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해양분쟁과 비군사적 해양안보 위협은 연성적 성격의 이슈이지만, 국가 간 역사문제와 국민적 감성, 정치·군사·경제적 민감성 때문에 쉽게 경성적 이슈로 변질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국익 우선 정책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증대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군력을 경쟁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이중 우리나라의 해양안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국은 A2/AD 전략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항하여 동아시아의 해양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첨단 해군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중국해군은 235,000명의 병력에 3개의 지역함대를 기반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함정은 총 850여척이며, 항공모함 1척, 전략 핵잠수함 4척, 잠수함 66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 전투함정은 303척으로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해군의 전투함정을 모두 합한 302척보다 많은 수치이다. 이와 같은 전력을 볼 때 현재 중국 해군의 해양작전 능력은 제1도련권 이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2020년경에는 2~3개 항모전투단

확보와 함께 제2도련권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과거 1,000해리 전수방위라는 수세적 개념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 범위와 강도를 역동적으로 전진시키는 동적 방위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신안보법을 제정하여 미·일 동맹 강화와 국제공헌이라는 명분으로 해상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해외로 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현재 해상자위대는 아·태 지역에서 미 7함대에 버금가는 규모로서 최첨단 해군력을 과시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약 45,500명의 병력으로 함정은 14대의 SH-60 헬리콥터 탑재가 가능한 輕 항공모함급인 24,000톤급 이즈모함을 비롯하여 구축함 36척, 잠수함 18척, 호위함 11척 등 200여척이다. 향후에도 상륙작전 및 대잠 작전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 공세적 세력투사 능력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역외 패권국인 미국은 아·태 지역 중시 정책기조에 따라 재균형 전략을 추진하면서 미 해군력의 60%를 동아시아에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같은 고강도 수준의 도발에서부터 일시적인 NLL 침범에 이르기까지 위협의 수위를 조절하며 끊임없이 해상도발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 비대칭 전력을 확보하고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등의 과급력이 큰 도발을 기습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북한은 한반도 안보정세를 고려하여 언제든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해상에서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의 해양안보 위협은 군사적·비군사적 요소가 직간접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복합적 위협이고 이들 위협이 상호 연계되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면하고 있는 북한의 해양 위협뿐만 아니라 도서영유권 및 해양관할권 분쟁을 처리하여야 하는 한국은 동아시아 해양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더욱이 국가의 사활적 이익이 연관된 동아시아 해양에서의 안전한 수송로 확보와 초국가적 해양안보 위협에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함은 국가이익과 국가의 위상을 고려 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안보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현존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보다 근원적인 국가 전략적 이익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 이는 한국이 지형적으로 반도 국가이지만 지정학적으로는 육상진출이 거의 불가능하여 해양국가나 다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해양에서 발생하는 안보위협이 국가 존립과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동아시아의 해양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전략과 한국 해군이 추구해야 할 해양전략, 그리고 해군의 역할과 전력발전, 해양안보 협력 등 종합적인 대비방안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 해양안보는 국가안보의 하위개념이 아니라, 거의 대등한 수준이므로 우리의 국가안보 전략과 해양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즉, 해양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역량을 보다 집중시키고 종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 전략은 안보위협과 도전요소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해양안보 위협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해양에서 국가의 사활적 이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국가차원의 안보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연구자는 한국 해군의 해양전략으로 국가중심적 성격의 위협과 다중심적 성격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균형적 해양 방위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전략은 먼저 국가중심적 성격인 북한의 군사적 해양안보 위협을 억제하며, 북한의 침략 시에는 작전구역에 대한 해양통제를 장악하고 한국 해군과 해병대 전력은 북한 전역으로의 전력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변국과 해양분쟁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한국 해군은 신속히 현장으로 이동하여 국가이익과 해양주권을 수호한다는 개념이다. 또한 다중심적 성격으로는 한국의 선박들이 해상교통로에서 해적 등 초국가적 해양안보 위협에 직면했을 때는 제한적인 해양질서 관리를 수행하며, 대규모 재해재난, 환경오염 등 해양안보 현안에 따라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고 협력을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의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에 동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국 해군의 소요 전력은 요구 능력을 기반으로 시급히 확보되어야 한다. 주변 강대국들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발전 그리고 독도 및 이어도 문제로 인한 위기발생 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와 동시에 현실적인 북한의 군사적 해양안보 위협에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서는 기동함대를 비롯한 적정수준의 해군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주변국의 해양도 발도 억제할 수 있는 첨단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 해군의 전력발전은 해군력의 역사적 교훈과 방위충분성 이론 및 국회의 결정에 근거하되 우리의 경제여건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대북 전력은 독자적인 억제전력을 구축하고 대주변국 전력은 일본 해상자위대를 기준으로 70%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 해군력 건설에는 현재의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의 예상되는 위협도 고려해야 한다. 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수 없는 해군력은 단기간에 건설할 수 없다는 해군력 건설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가안보상 매우 치명적인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동아시아 해양의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을 감안하여 한국 해군의 역할과 운용영역을 확대시켜야 한다. 한국 해군은 한반도 통일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국민의 국제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국제해양 안보질서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해군의 운용영역은 강대국의 해군처럼 오대양에까지 확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독도와 이어도 해역의 방호, 국가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해양에서의 안전보장, 그리고 경제 성장에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여 국가의 번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운용영역도 재정립되어야 한다.

넷째, 한국 해군의 인력구조를 현실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현재 해군은 필요인원의 약 70% 수준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휴식도 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첨단 장비와 무기체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체계의 발전을 필요로 한다. 소프트파워적인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하드웨어적인 능력 발전만을 중시할 경우 해군에게 요구되는 제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해군 병력을 조속히 충원해야 한다.

다섯째,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해양안보 협력 및 국제적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정부차원의 해양

작전 및 정보운용을 위한 통합적 기구를 창설하고 해군과 국민안전처(해양경비 안전본부)는 미국의 ‘국가함대’ 개념처럼 긴밀한 협조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국가 간 해양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해양안보 위기상황에 대한 공동대응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자간 국제적인 해양협력도 강화해야 할 것이며, 한국 해군의 외교활동도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연구자가 제시한 한국 해군의 대비방안의 추진 로드맵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완성되고 중국의 4개 항모전투단을 갖추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 일본과 남부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분쟁이 예상되는 2025년, 미국과 중국의 경제력이 역전될 2028년 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한편, 본 논문은 동아시아의 해양안보 위협에 대한 최신 자료 분석을 위해 관련된 다수의 언론기사와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언론과 인터넷 자료는 사실의 수집과 정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심층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행위주체가 국가인 해양분쟁은 현재까지 정립된 비군사적 위협의 개념 정의와 유형 분류에 군사 또는 비군사적 위협으로 분류가 되어있지 않고, 분쟁의 성격도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군사적 위협으로 분류한 것은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해양분쟁의 실체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해군 전력발전 및 병력 확보 분야도 여론조사 등의 방법을 통한 국민들의 보편타당한 여론을 반영할 수 없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국방기술품질원, 2011.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서울 : 국방기술품질원)
- 국방대학교, 2005. 『안보관계용어집』, (서울 : 국방대학교)
- 역, 기꾸지 히로시 저, 1993. 『전략기초이론』, (서울 : 국방대학교)
- 국방부, 2013. 『정예화된 선진강군』, (서울 : 국방부)
- , 2014. 『국방백서』, (서울 : 국방부)
- , 2015. 『창조국방, 국방발전의 새로운 길』, (서울 : 국방부)
- 권오엽, 2005. 『독도논문 번역선 2』, (서울 : 다다미디어)
- 김영구, 1999.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서울 : 효성출판사)
- , 2008. 『이어도 문제의 해양법적 해결방법』, (서울 : 동북아역사재단)
- 김정건, 1990. 『국제법』, (서울 : 박영사)
- 김종두, 1997. 『동아시아 해양분쟁』, (서울 : 문영사)
- 김종하·김재엽, 2012. 『국가안보전략 어떻게 수립해야 하나?』, (대전 : 한남대학교)
- 김태호, 2015. 『동아시아 주요 해양분쟁과 중국의 군사력』,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동북아 역사재단, 2006. 『대일 강화조약 자료집』, (서울 : 동북아 역사재단)
- 박경일, 2009. 『세계안보의 관점과 전략』, (서울 : 창조문화)
- 박남태 등, 2015. 『21세기 동북아 해양전략』, (서울 : 북코리아)
- 박문각, 2014. 『시사상식사전』, (서울 : 박문각 출판사)
- 박인태, 1997. 『해양자원과 활용』, (서울 : 학문사)
- 박형중·전성훈 등, 2013. 『Trustpolitik :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서울 : 통일연구원)

- 반길주, 2015. 『국제 현실정치의 바다전략』,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배형수 역, 제프리 킬 저, 2011. 「21세기 해양력」,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송영심, 2005. 『일본의 역사왜곡 21가지』, (서울 : 산호와 진주)
- 신용하, 2002. 『한·일간 독도 영유권 논쟁의 역사와 그 쟁점』, 2002년(사) 4월회.
독도학회 공동심포지엄 발제문
- 유병화 · 박노형 등, 2000. 『국제법 II』, (서울 : 법문사)
- 유철중, 2007.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영토분쟁』, (서울 : 삼우사)
- 육군 군사연구소, 2012. 『세계의 지역분쟁 사례집 III』, (대전 : 육군본부)
- 육군사관학교, 2001. 『국가안보론』, (서울 : 박영사)
- 이경호 · 정승진, 2001. 『바다와 국가의 정책』, (서울 : 학현사)
- 이광보 · 남기봉 등, 2010. 『국가안보론』, (인천 : 진영사)
- 이정훈 · 박정수, 2010. 『동아시아인식지평과 실천공간』, (서울 : 아연출판부)
- 임인수 역, 고르시코프 저, 1999. 『국가의 해양력(The Sea Power of the State)』,
(서울 : 책세상)
- 전경만 · 조기형, 2009. 『비군사적 위협과 한국군 변환』, (서울 : 국방연구원)
- 정갑용, 2006. 『중·일간 동중국해 대륙붕 분쟁과 우리의 정책방향』, (부산 :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 최종호 · 임경한 역, 2013. 제프리 킬 저, 『아시아의 해군력 팽창 군비경쟁의 서막
인가?』,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4/2015/2016. 『2013~14년/2014~15년/2015~16년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합동참모본부, 2010. 『합동·연합 군사용어사전』, (서울 : 합동참모본부)
- , 2014. 『합동군사기본교리』, (서울 : 합동참모본부)
- 해군본부, 2007. 『해군기본교리』, (대전 : 해군본부)
- , 2012. 『해군비전 2030(Navy vision 2030)』, (대전 : 해군본부)

- , 2013. 『해군군사용어사전』, (대전 : 해군본부)
- , 2014. 『대한민국 해군의 걸어온 길, 함께 갈 길』, (대전 : 해군본부)
- , 2015. 『21세기 해양력을 위한 협력전략』, (대전 : 해군본부)

2. 논문

- 강량·임수환, 2008. “중국의 해양세력화와 한국의 해양안보”, 『세계지역연구논총』, 26집 3호, (서울 : 한국세계지역학회)
- 강영오, 2011. “균형해군 발전론”, 『STRATEGY 21』, Vol. 14, No. 1,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1)
- 강희각, 2013. “한·중·일 해양분쟁 심화요인과 그 함의에 관한 연구”, (대전 : 한남대학교)
- 고경민, 2014. “이어도 분쟁의 가능성과 대응방안 : 중국의 민족주의적 접근을 중심으로”, 『국제문제연구』, Vol.14 No. 2, (서울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
- 고명석, 2011. “해상테러 및 해상강도”, 『해양의 국제법과 정치』, 한국해로연구회(편), (서울 : 도서출판 오름)
- 고봉준, 2013. “독도·이어도 해양영토 분쟁과 한국의 복합대응”, 『한국정치연구』, 제22집 제1호, (서울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곽진오, 2010. “일본의 독도 인식을 중심으로”, 『독도와 한·일 관계』, (서울 : 지식산업사)
- 구민교, 2013. “미·중간 신해양 경쟁과 우리나라의 해양안보정책”, 『주요 국제문제 분석』, No. 2013-30, (서울 : 외교안보연구소)
- 김강녕, 2001. “동북아의 해양분쟁과 한국의 안보”, 『군사논단』, 제29호, (서울 : 한국군사학회)
- , 2015. “이어도 해양영토 분쟁과 한국의 대응”, 『전투발전연구』, 제22호, (대전 : 해군본부)

- 김교덕, 2006. “동아시아 해양분쟁과 안보협력에 관한 연구”, (서울 : 단국대학교)
- 김기주, 2014. “일본의 해양전략 평가와 전망”, 『2013~2014 동아시아 해양안보정세와 전망』,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김기주·손경호, 2013. “다차원적 해양안보 위협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국제문제연구』, 통권49호, (서울 : 국가안보전략 연구소)
- 김덕기, 2004. “한국해군의 해상교통로 보호방안”, 제1회 해양전략 심포지움,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김만수, 2009. “도서영유권 분쟁과 한국의 독도 대응전략”, (서울 : 고려대학교)
- 김민석, 2002. “워싱턴 체제의 성립과정과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 : 고려대학교)
- 김용환, 2013. “한국 국방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대전 : 한남대학교)
- 김정현, 2004. 대륙국가의 해군력 건설 요인에 관한 연구 : 소련(러시아)-중국 사례비교, (서울 : 연세대학교)
- , 2009. “한국해군이 지향할 해양전략”, 『전투발전연구』, 제16호, (대전 : 해군본부)
- 김정현·박광용, 2013. “중국의 해양영토분쟁이 대한민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해양연구논총』, 제44집, (진해 : 해군사관학교)
- 김주환, 2015. “중국군 30만명 감축의 전략적 함의”, 『국회보 10월호』, (서울 : 국회사무처)
- 김진욱, 2013. “동북아시아 도서영유권 분쟁의 법적 쟁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목포 : 목포대학교출판부)
- 김현수, 1997. “한반도 주변수역의 해양경계선 획정에 관한 연구” 「해양 연구논총」, 제19집, (진해 : 해군사관학교)
- 김호춘, 2013. “서해북방한계선(NLL)의 법적성격에 관한 연구”, 『정보·보안 논문지』, (경기 : 한국융합 보안학회)
- 목진용, 2009. “우리나라 해양방제체계 개편방안”, 해양환경안전학회 추계 학술표회 자료, (목포 : 해양환경안전학회)

- 문근식, 2016. “치명적 위협 북한 SLBM에 대비하라”, 『통일한국』, 통권 제386호, (서울 : 평화문제연구소)
- 박성용, 2010. “변화하는 동북아 해양안보환경과 한국안보의 방향”, 『동북아 국제 정세와 한반도 통일문제』, (광주 :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 , 2011. “북한의 해양 비대칭 전력과 한국의 해양안보”, 『정치정보연구』, 제14권 2호, (서울 : 한국 정치정보학회)
- , 2015. “동북아시아 해양안보환경과 해양신뢰구축에서 한국의 역할”, 『한국 동북아논총』, 76호, (서울 : 한국동북아학회)
- 박영길, 2013. “필리핀의 중국 상대 남중국해 분쟁 중재재판소 회부문제”, 『독도연구저널』, Vol. 21 (부산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박영준, 2012. “21세기 일본의 해양질서 구상과 해양정책,” 『외교안보연구』, 제8권 제1호, (서울 : 외교안보연구소)
- , 2012. “동아시아 해양안보의 현황과 다자간 해양협력방안”, 『JPI 정책포럼』, (제주 : 제주평화연구원)
- , 2012. “역내 해양협력 및 신뢰증진을 위한 한국 해군의 기여방안”, 『STRATEGY 21』, 통권30호,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박창권, 2013. “해양안보 위협확산에 따른 한국해군의 역할 확대 방안”, 『STRATEGY 21』, 통권 31호,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 2014. “동아시아 해양안보 현안과 시사점”, 『2013~2014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 2015. “한·중·일 안보협력의 여건과 향후 발전방향”, 『국방정책연구』, 제31권 제2호, 통권 제108호,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 , 2015. “미국 아시아·태평양 해양안보 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주간국방논단』, 제1594호,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 , 2015. “북한 핵위협 현실화를 고려한 군사전략 발전방향”, 『주간국방논단』, 제1586호,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 박창희, 2012. “강대국 및 약소국 해양전략사상과 한국의 해군전략”, 『국가전략』, 통권 제62호, (서울 : 세종연구소)
- 배진석, 2011. “양분화 이론으로 본 동아시아의 해양안보 질서와 해군력의 역할”, (부산 : 동아대학교)
- 배진수, 2003.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영토 분쟁 : 배경 및 현황”, 『Strategy 21』, 12호,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 2012.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해양영토 분쟁의 배경 및 현황 : 동해, 서해 및 일·러간 해양분쟁”, 『Strategy 21』, Vol 6, No. 2,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백병선, 2010. “한국의 해상교통로에 대한 초국가적 위협의 분석 및 향후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전략』, 제16권 3호, (서울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백성호, 2013. “북극항로 시대 해군의 역할과 해군력 발전에 관한 연구”, 『STRATEGY 21』, 통권 35호,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변창구, 2014.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남중국해 분쟁”, 『한국 동북아논총』, 71호, (서울 : 한국동북아 학회)
- 손기섭, 2006. “일본과 인접국 간의 해양자원 확보 및 영토분쟁”,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송성대, 2010. “한·중 간 이어도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대한지리학회지』, 제45권 제3호, (서울 : 대한지리학회)
- 신강석, 2015. “동아시아의 해양안보 위협요인과 한국의 대비과제”, 『사회과학연구』, 18호, (서울 : 숭실대 사회과학연구소)
- 신인균, 2012. “국가의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한국해군의 전력건설 방향”, 『STRATEGY 21』, 통권 제30호,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심경옥, 2013. “국가안보 차원에서 본 기후변화와 한국 해군의 대응”, (해군작전사 발표자료)
- 심재설, 2007. “해양과학의 보고, 이어도”, 『이어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 국회 정책토론회 발표논문집.

- 안병준, 2015. “공세적 현실주의의 군사적 재해석을 통한 한국형 기동함대 적기 전력화에 관한 연구”, (대전 : 한남대학교)
- 양정승, 2012. “설득이론을 통한 해군력의 정치적 사용에 관한 고찰”, 『Strategy 21』, 통권 30호,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양희철, 2014. “중국 ADIZ의 국제법적 해석과 동북아 안보에서의 함의”, 『국제법학회 논총』, 제59권 4호, (서울 : 대한국제법학회)
- , 2015.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해양을 통한 이행방안,” (사)해양환경 안전학회 추계 학술발표회, (목포 : 목포해양대학교)
- , 2015. “해양자원, 국가성장의 방향을 바꾸다”, (세종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양희철 · 김진욱, 2014. “조어대(센카쿠열도)의 영유권 분쟁과 당사국간 법리에 관한 연구”, 『Ocean and Polar Research』, vol.36 no.3, (안산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엄태암 · 문광건 등, 2002.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대응방향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02 -1829)”,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 윤석준, 2014. “동남아·서남아·오세아니아의 전략적 딜레마와 해군력 현대화”, 『2013~2014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서울 : 한국해양전략 연구소)
- , 2014. “한국의 해양강국과 포괄적 해양전략 발전”, 『2013~2014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서울 : 한국해양전략 연구소)
- 윤종준 · 백병선, 2015. “한국의 안보 변화 위협에 대한 전망”, 『국제문제연구』, 제15권 4호, (서울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이 근, 2012. “해양안보 협력의 국제적 발전추세와 해군의 역할 확대”, 『Strategy 21』, 통권29호,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이근석, 2004. “한반도 안보환경변화와 국방정책의 발전방향”, (경기 : 인하대학교)
- 이남주 · 배기찬, 2009. “동아시아공동체 추진과 민족주의 극복방안”,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의 현황과 전망』, (서울 : 동북아역사재단)

- 이서항, 1999. “아·태지역 해양문제와 지역안보”, 『정책연구시리즈』, (서울 : 외교안보연구원)
- , 2010. “동아시아 해로안보와 해군의 역할”, 『STRATEGY 21』, 통권 25호,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 2015. “해군·해경간 상호 운용성 증진 세미나 개최사”, 『해군·해경간 상호 운용성 증진 세미나 발표논문집』, (대전 : 해군본부)
- , 2016. “동아시아 해양분쟁과 지역 평화 구축의길”, 『옥포지』, 105호, (서울 :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
- 이승렬·배진석, 2011. “양분화된 동아시아의 해양안보 질서와 해군력의 역할, 『21세기 정치학회 회보』, 21권 1호, (서울 : 21세기 정치학회)
- 이용희, 2013. “국제관례상 실효적 지배의 개념과 독도에 관한 고찰”, 『Ocean and Polar Research』, vol.35 no.4, (안산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이장훈, 2010. “남중국해의 파고가 거칠어지고 있다, 『국방저널』, 통권 제436호, (서울 : 국방홍보원)
- 이정태, 2002. “남사군도 영토분쟁과 중국의 대응“, 『선주논총』, 제5집, (구미 : 금오공대 선주문화연구소)
- 이지용, 2014, “중국의 국가정체성 진화와 동아시아 해양안보환경 변화”, 『국제관계연구』, 제19권 통권 36호, (서울 :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이춘근, 1998. “미국의 동아시아 해군력 변동현황 분석” 『동아시아의 해양분쟁과 해군력 증강현황』,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이흥표, 2005. “조어도 영유권 분쟁과 중·일관계 : 에너지 안보와 민족주의 측면”, 『STRATEGY 21』, 제15호,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임경한, 2011. “공격적 현실주의 시각에서 바라본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해양안보 경쟁전 망과 함의”, 『해양전략』, 제149호, (대전 : 합동군사대학)

- ,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에 따른 동아시아 해양안보환경 전망, 『동북아연구』, 제28권 2호, (광주 : 조선대학)
- 임인수, 2014. “북한의 군사위협 평가와 전망”, 『2013~2014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서울 : 한국해양전략 연구소)
- 전창빈, 2012. “대한민국 해양전략과 해군력 선진화 방향”, (서울 :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 정갑용, 2014.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9단선’ 의 합법성 검토”, 『독도연구』, 제16호, (대구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정삼만, 2009. “해상교통로의 국가 경제적 영향에 관한 계량적 분석”, 『해양연구논총』, 41집, (진해 : 해군사관학교)
- 정상만 · 이상진, 2011, “국제 해양안보 협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해양연구논총』, 42집, (진해 : 해군사관학교)
- 정임재, 2014. “동북아 세력경쟁질서와 해양변수 연구”, (경기 : 경기대학교)
- 정철호, 2012.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해양전략과 한국의 해양안보’ 『세종정책연구』, 2012-B, (서울 : 세종연구소)
- , 2014. “중 CADIZ 설정과 한국의 KADIZ 확대에 따른 과제”, 『정세와 정책통권』, 215호, (서울 : 세종연구소)
- 정태권, 2013. “북극해 항로개발의 현황과 과제”, 제7회 세계해양포럼
- 제성호, 2004. “북방한계선(NLL)의 법적성격과 유효성”, 『제9회 충성대 학술세미나』, (영천 : 육군 3사관학교)
- , 2013. “정전협정 60년 NLL과 서북도서”, 『STRATEGY 21』, 통권 31호,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조영주, 2016. “국가비상사태 대비 해군전력 증강방안”, 『현 안보환경과 평가와 한국 해군력 발전방향』, 제17회 함상토론회, (대전 : 해군본부)
- 조한길, 2004. “동북아 해양안보환경의 변화와 한국해군의 대응전략”, 『해군대학 연구논문』, (대전 : 합동군사대학)

- 차도희, 2012. “동아시아 미·중 해양패권 분석”, (대전 : 한남대학교)
- 최병학, 2010. “해양영토 분쟁과 독도 영유권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 14권 제2호, (서울 : 한국지방정부학회)
- , 2012. “동북아시아 해양영토분쟁과 한국의 해양안보”, 『해양전략』, 제 154호, (대전 : 합동군사대학)
- 허성필, 2003. “공존기/통일기 주변국 해군력 발전전망 및 평가(정책연구보고서 03-1975),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 , 2014. “최근 일본의 방위력 증강 동향과 안보적 시사점 : 해상자위대 전력 을 중심으로”, 『주간국방논단』, 제1497호,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3. 신문·보고서·공문

- 경북매일, 2006년 5월 3일
- 경향신문, 2010년 2월 18일
- , 일본 외교청서에서 또 “독도는 일본 땅“ 주장, 2016년 4월 15일
- 국민일보, “북한 SLBM, 2020년쯤 실질적 위협”, 2016년 4월 26일
- 국방일보, “이지스함 추가 건조·F-X 사업 조기 추진 필요”, 2013년 10월 24일
- , “해군창설 70주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2015년 11월 10일.
- , 2016년, 5월 4일
- 네이버뉴스, ‘국회입법조사처, 일본 신안보법 쟁점정리’, 2015년 10월 16일
- 뉴데일리, 국정원, “2012년 광명성 3호보다 성능 다소 개선“, 2015년 2월 7일
- 뉴스타운, “중국, 남중국해 파라셀 제도에 미사일 8기 배치” 2016년 2월 17일
- 동아닷컴, “일본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 2015년 7월 21일
- 동아일보, 한-중, 이어도 놓고 ‘EEZ 신경전’, 2011년 7월 28일
- , “잠수함 증강 다시 수면 위로,” 2012년 1월 9일
- , “독-이어도 수호 전략함대 10년 내 만든다”, 2012년 8월 31일
- , “美, 남중국해 인근에 中 견제용 공군기지”, 2016년 3월 22일

머니위크, “원유·천연가스 문헌 대륙붕 7광구.. 13년후에는 일본땅 될 가능성”,
2016년 5월 25일.

매일경제, “중, 남중국해 전투기 16대 배치”, 2016년 4월 4일

문화일보, “미국의 국가함대 개념, 한 해군-해경 협력 시사점 될 것”, 2015년 9월 19일
서울신문, 中,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준비”, 2016년 6월 2일

세계일보, “대북 방어작전 위주 벗어나 동북아 해양갈등 대비해야”, 2012년 11월 7일

아시아경제, 해군함정 '늘지만' 해군병력은 '그대로', 2014년 3월 7일

아시아투데이, “해군 병력 4000여명 충원 시급하다”, 2014년 3월 26일

-----, “해군, 제12회 국제해양력 심포지움 부산서 개최”, 2015년 10월 19일

-----, 일본 또다시 ‘독도는 일본땅’..영문사이트도 개설 “, 2016년 4월 15일

연합뉴스, 2010년 10월 1일

-----, 2012년 4월 13일

-----, 2012년 7월 5일

-----, 2012년 12월 26일

-----, “NLL과 북 주장 해상경계선”, 2013년 6월 24일

-----, “일본, 탄도·대함미사일 동시 요격하도록 이지스함 개량”, 2015년 6월 14일

-----, “미·일-중, ARF서 '남중국해 인공섬' 놓고 연일 격돌”, 2015년 8월 7일

-----, “미군, B-52 폭격기 인공섬 주변 상공 비행...中 경고에도 비행지속”,
2015년 11월 13일

-----, 2016년 3월 7일

-----, “일본 교과서 검정 논란 일지”, 2016년 3월 18일

-----, 연합뉴스, “中 남중국해 영유권 패소...미·중, 新냉전 패권다툼 격랑속
으로”, 2016년 7월 12일

인민일보, “시진핑, 남중국해 제도는 예로부터 중국의 고유땅” 2015년 10월 19일

조선닷컴, 시진핑 ‘진주 목걸이’ 外交전략, 아베의 ‘안보다이아몬드’ 와 충돌”,
2014년 9월 17일

조선일보, 2012년 5월 2일

-----, 2012년 5월 11일

-----, 2012년 9월 21일

-----, “美·中 세력충돌, 위험 속 기회동맹·전략외교..”, 2012년 9월 26일

-----, 일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 11년째 도발”, 2015년, 7월 22일

중앙일보, “중국 군함 첫 센카쿠 진입...”, 2016년 6월 9일

코나스넷, “북한 해군력 증강과 위협”, 2015년 2월 14일.

포커스 뉴스, “군·경·유엔사, 한강하구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합동 단속”, 2016
년 6월 10일

한국일보, “북한 SLBM 시험발사 계속 이어질 것”, 2016년 7월 11일.

헤럴드경제, “이어도 넘보는 중국...정찰기 출현 6년 새 5배 증가”, 2015년 9월 15일

-----, ‘韓경제…대외의존도 13분기 연속 100% 초과’, 2014년 7월 5일

환경 TV 뉴스, 동아시아 지역 신규 원전건설 세계 1위…원전 폐쇄는 풀찌, 2015년
3월 12일

CNB 뉴스, 2015년 12월 18일

KBS TV, 2016년, 2월 7일

4. 외국문헌

- Amy Chang and John Dotson, 2012. *Indigenous Weapons Development in China's Military Modernization* (Washington D.C. :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 A. Wolfers, 1952. “National Security an Ambitious Symbol”,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23, No.1

- Bernard D. Cole, 2001. *The Great Wall at Sea* (Annapolis, MD : Naval Institute Press)
- Bruce Stokes, 2010. "China's New Red Line at Sea", *National Journal*, 3 July
- Chris Rahman, 2009. *Concept of Maritime Security : A Strategic perspective on alternative vision for good order and security at sea, with policy implication for New Zealand* (Center for Strategic :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 C. R. Mitchell, 1981.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Conflict* (London : Macmillan)
- David Baldwin, 1997. "The Concept of Security", in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3
- Department of the Navy, 1994. *Forward From the Sea*, (Washington, D. C.: USGPO), Sujit Dutta
- Department of Defence, 2015. *Asia-Pacific Maritime Security Strategy* (Washington D. C. : Department of Defence)
- , 2012.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January
- Eric Grove, 1994. *The Future of Sea Power* (London : Routledge, Manchester :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Geoffrey Till, 1982. *Maritime Strategy and Nuclear Age* (London : The Macmillan Press LTD)
- James E. Dougherty and Robert L. Pfaltzgraff, 1990. *Contend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 Harper & Row)
- James Kraska and Raul Pedrozo, 2013.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Law*, (Leiden · Boston : Martinus NIJHOFF)
- Jane's Fighting Ships, *2005-2006,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 Julian S. Corbett, 1981. *Some Principles of Maritime Strategy*, (London : Longmans, Green and Co)

- Keerstin Vignard, *Editor's note*, UNDIR disarmament forum : maritime security, (two · 2010)
- Ken Booth, 1975. *Navies and Foreign Policy* (New York : Homles & Meire Publish)
- , 1991. *New Thinking about Strategy and International Security* (London : Harper Collins Academic,1991)
- Michael Pugh, 1994. "Sea Power, Security and Peacekeeping after the Cold War", *Maritime Security and Peacekeeping*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M. Taylor Fravel, 2012. "Maritime Security 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Competition over Maritime Right" in Patrick M. Cronin, *Cooperation from Strength, The United States, China and the South China Sea*, (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 January)
- Peter Dutton, Robert Ross and Oystein Tunsjo (eds), 2015. *Twenty-First Century Seapower, Cooperation and Conflict at Sea* (London : Routledge)
- Robyn Lim, 2005. *The Geopolitics of East Asia* (Abingdon : Routledge)
- The U.S. Joint Chiefs of Staff, 2015, *The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5*, June
- Toshi Yoshihara and James Holems, 2005. "Command of the Sea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Orbis*, vol. 49, no.4, Fall.
- You Ji, 2001. "The Evolution of China's Maritime Combat Doctrines and Models" : 1949-2001, *Institute of Defense and Strategic Studies*, May.
- , 2006. You Ji, "China's Naval Strategy and Transformation" Lawrence W. Prabhakar, Joshua H. Ho and Sam Bateman(eds.), *The Evolving Maritime Balance of Power in the Asia-Pacific* (2006)

5.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dokdo.mofa.go.kr>.(외교부 독도)

<http://www.navy.mil.kr>.(해군본부)

<http://www.mof.go.kr>.(해양수산부)

<http://www.kita.net/bluecap/search/search.jsp>.(한국무역협회)

<http://www.defense.gov>.(미국 국방부)

<http://www.c7f.navy.mil>.(미국 해군 7함대)

[http://www.eia.gov/countries/analysis_briefs/South China Sea/south_china_sea.pdf](http://www.eia.gov/countries/analysis_briefs/South_China_Sea/south_china_sea.pdf).(미국 에너지 정보청)

<http://www.fmprc.gov.cn>.(중국 외교부)

<http://www.kr.people.com.cn>.(중국 인민일보 한국어 인민망)

<http://www.clearing.mod.go.jp>.(일본 방위성)

<http://www.mod.go.jp/msdf/formal/english>.(일본 해상자위대)

<http://www.recaap.org>.(아시아 해적 퇴치 협정)

<http://ko.wikipedia.org/wiki/Spratly>.(위키백과)

